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4년 제2호




2014. 12

세 법 연 구 센 터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4년 제2호

2014. 12

세 법 연구 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I. OECD 회원국의 주요 세목별 세율 변화 추이	3
1. 개인소득세	3
2. 부가가치세	6
3. 법인세	8
II. OECD 국가별 주요 세목 세율 변화 추이	12
1. 호주	12
2. 오스트리아	14
3. 벨기에	15
4. 캐나다	17
5. 칠레	18
6. 체코	20
7. 덴마크	22
8. 에스토니아	23
9. 핀란드	24
10. 프랑스	27
11. 독일	30
12. 그리스	33
13. 헝가리	36
14. 아이슬란드	38
15. 아일랜드	41

16. 이스라엘	44
17. 이탈리아	46
18. 일본	48
19. 대한민국	50
20. 룩셈부르크	51
21. 멕시코	54
22. 네덜란드	56
23. 뉴질랜드	58
24. 노르웨이	59
25. 폴란드	61
26. 포르투갈	62
27. 슬로바키아공화국	65
28. 슬로베니아	66
29. 스웨덴	68
30. 스페인	71
31. 스위스	74
32. 터키	76
33. 영국	77
34. 미국	79

제 2 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캐나다	85
1. 미국	85
가. 미국 - 해외자산자진신고제(OVDP) 등에 대한 지침 개정	85
나 증세 방지법(Tax Increase Prevention Act)	89
2. 캐나다 재무부의 가계 세제지원안 발표	95

가. 개요	95
나. 제안 내용	95
II. 유럽	97
1. 네덜란드 - 상증세에 대한 국제 분야 관련 시행령 발표	97
2. 독일 -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방식 개정	98
3. 러시아 - 비거주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이자비용 처리방법 확정 ..	100
4. 벨기에 - 신정부의 향후 조세정책방향 발표	101
가. Transparency Tax	101
나. 법인세	103
다. 소득세	104
라.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105
5. 슬로바키아 - 부가가치세율 1%포인트 인상안의 의회 가결	105
6. 스페인 - 2015년 세법 개정 초안 발표	106
가. 법인세	106
나. 개인소득세	107
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개정	109
7. 스페인 -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뉴스 기사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료를 지급하도록 제정	110
8. 아일랜드 - 과세소득 산입시기 불일치로 공제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지침 발표	111
가.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하의 문제점	111
나. 외국 자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공제제도 도입	112
9. 영국 - 도박산업에 대한 일부 과세규정 개정안 공포	113
10. 이탈리아 -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조세 법령 개정 공포	115
11. 체코 - 하원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동의함	115
12. 터키 - 미납세금 납부에 대한 분납법안을 도입	116
13. 프랑스 -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정안 발표	117



14. EU - 집행위원회의 조세제도 개혁 관련 보고서 발표	118
15. EU - 금융거래세 관련 진행상황 보고서 발표	119
16. EU - 부유세 관련 검토 보고서 발표	120
17. OECD - 자동적 정보 교환에 대한 글로벌 기준 완성본 발표	122
가. 금융정보 보고 기준(CRS)의 주요 내용	123
나. 국가 간 합의 모델(CAA)의 주요 내용	124
18. OECD - BEPS Action Plan에 대한 2014년 보고서 Package 발표	125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128

1. 뉴질랜드 - 2014/15 세무상 증점사항 공개	128
가. 과세관청이 주목하는 주요 사항	128
나. 다국적 기업의 납세협력 주요 사항 중 적신호 사례	130
2. 베트남 - 외국계약자에 대한 과세 지침, 기업 지원에 대한 결의 및 세무행정의 개선과 단순화를 위한 지침 공개	131
가. 외국공급자에 대한 과세 지침 공개	132
나. 기업 지원을 위한 결의 공개	133
다. 세무행정의 개선과 단순화를 위한 지침 공개	134
3. 인도 - 2014/15 예산 공개	135
가. 직접세	135
나. 간접세	137
4. 인도 - 세무조사 표본선정에 대한 지침 공개	139
5. 인도 - 소비세 헌법개정안 제출	139
6. 일본 - 법인세 개혁 및 국경(역외)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소비세제도 개선방안 공개	141
가. 법인세 개혁을 위한 제안	141
나. 국경(역외)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소비세 제도 개선방안	144
7. 일본 - 소비세 추가인상 연기	145
8. 중국 - 조세지원 대상 서부지역 산업 공개	146

9. 중국 - 역외 지급수수료에 대한 조사지시 및 조세지원 대상 서부지역 산업 공개	148
10. 중국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채권매매에 대한 과세지침	149
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무조사 지침 전달	149
나. 채권매매에 대한 과세지침 공개	149
11. 중국 - 소기업에 대한 가속상각지침 및 주식교차거래를 위한 조세혜택지침 공개	150
가. 소기업에 대한 가속상각지침 공개	150
나. 상해·홍콩 상장주식의 교차거래를 위한 조세혜택지침 공개	151
12. 중국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운영지침 등의 지침과 2015년 관세계획 공개	153
가.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에 대한 운영지침 공개	153
나. 중대세무사건 심리방법 지침 공개	155
다. 2015년도 관세계획 공개	156
라. 소비세 적용에 관한 지침 공개	157
13. 호주 - 과소자본세제 및 국외배당소득면제세제 변경 법안 의회 제출	157
14. 호주 - 압호화 화폐에 대한 과세지침 공개	159
15. 홍콩 - 대체채권체계에 대한 지침 제50호 공개	161

표목차 ▶▶

제 1 부

<표 I-1> OECD 회원국별 소득세 최고과세표준구간 및 적용세율	4
<표 I-2> OECD 회원국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7
<표 I-3> OECD 회원국별 법인세 최고과세표준구간 및 적용세율	9
<표 II-1> 호주의 소득세율	13
<표 II-2> 오스트리아의 소득세율	14
<표 II-3> 벨기에의 소득세율	15
<표 II-4> 캐나다의 소득세율	17
<표 II-5> 캐나다의 법인세율	18
<표 II-6> 칠레의 소득세율	19
<표 II-7> 칠레의 법인세율	20
<표 II-8> 체코의 부가가치세율	21
<표 II-9> 체코의 법인세율	21
<표 II-10> 덴마크의 소득세율	22
<표 II-11> 덴마크의 법인세율	23
<표 II-12> 에스토니아의 부가가치세율	24
<표 II-13> 핀란드의 소득세 중 국세율	25
<표 II-14> 핀란드의 소득세 중 지방세율과 교회세율	26
<표 II-15> 핀란드의 부가가치세율	26
<표 II-16> 핀란드의 법인세율	27
<표 II-17> 프랑스의 소득세율	28
<표 II-18>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율	29

<표 II-19> 프랑스의 법인세율	30
<표 II-20> 독일의 소득세율	31
<표 II-21> 독일의 연대부가세율과 교회세율	31
<표 II-22> 독일의 부가가치세율	32
<표 II-23> 독일의 법인세율	32
<표 II-24> 그리스의 소득세율	33
<표 II-25> 그리스의 연대부가세율	34
<표 II-26> 그리스의 부가가치세율	35
<표 II-27> 그리스의 법인세율	35
<표 II-28> 헝가리의 소득세율	36
<표 II-29> 헝가리의 연대부가세율	37
<표 II-30> 헝가리의 부가가치세율	37
<표 II-31> 헝가리의 법인세율	38
<표 II-32> 아이슬란드의 소득세율	39
<표 II-33> 아이슬란드의 부가가치세율	40
<표 II-34> 아이슬란드의 법인세율	40
<표 II-35> 아일랜드의 소득세율	41
<표 II-36> 아일랜드의 사회세율	42
<표 II-37> 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율	43
<표 II-38>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43
<표 II-39> 이스라엘의 소득세율	44
<표 II-40> 이스라엘의 부가가치세율	45
<표 II-41> 이스라엘의 법인세율	45
<표 II-42> 이탈리아의 소득세율	46
<표 II-43>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율	47
<표 II-44> 일본의 소득세율	48
<표 II-45> 일본의 소비세율 체계	49
<표 II-46> 일본의 법인세율	49

<표 II-47> 대한민국의 소득세율	50
<표 II-48> 대한민국의 법인세율	51
<표 II-49> 룩셈부르크의 소득세율(부가세 포함)	52
<표 II-50> 룩셈부르크의 법인세율	53
<표 II-51> 멕시코의 소득세율	54
<표 II-52> 멕시코의 부가가치세율	55
<표 II-53> 멕시코의 법인세율	55
<표 II-54> 네덜란드의 소득세율	56
<표 II-55> 네덜란드의 부가가치세율	57
<표 II-56> 네덜란드의 법인세율	57
<표 II-57> 뉴질랜드의 소득세율	58
<표 II-58> 뉴질랜드의 소비세율	59
<표 II-59> 뉴질랜드의 법인세율	59
<표 II-60> 노르웨이의 소득세율	60
<표 II-61> 노르웨이의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	60
<표 II-62> 노르웨이의 법인세율	61
<표 II-63> 폴란드의 소득세율	61
<표 II-64> 폴란드의 부가가치세율	62
<표 II-65> 포르투갈의 소득세율	63
<표 II-66>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율	64
<표 II-67> 포르투갈의 법인세율	64
<표 II-68> 2014년 이후 포르투갈의 법인세율(예정)	65
<표 II-69>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소득세율	65
<표 II-70>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부가가치세율	66
<표 II-71>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법인세율	66
<표 II-72> 슬로베니아의 소득세율	67
<표 II-73> 슬로베니아의 부가가치세율	68
<표 II-74> 슬로베니아의 법인세율	68

<표 II-75> 스웨덴의 소득세율	69
<표 II-76> 스웨덴의 부가가치세율	70
<표 II-77> 스웨덴의 법인세율	70
<표 II-78> 스페인의 소득세율	71
<표 II-79> 스페인의 소득세 부가세율	72
<표 II-80> 스페인의 부가가치세율	73
<표 II-81> 스페인의 법인세율	73
<표 II-82> 스위스의 연방정부소득세율	74
<표 II-83>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율	75
<표 II-84> 스위스의 법인세율	75
<표 II-85> 터키의 소득세율	76
<표 II-86> 터키의 부가가치세율	77
<표 II-87> 터키의 법인세율	77
<표 II-88> 영국의 소득세율	78
<표 II-89> 영국의 부가가치세율	79
<표 II-90> 영국의 법인세율	79
<표 II-91> 미국의 소득세율	80
<표 II-92> 미국의 법인세율	81

제 2 부

<표 I-1>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미준수 시 민사상 벌금	86
<표 I-2> 감면연장법 관련 주요 내용 정리	92
<표 II-1> 독일의 개정전 개인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방식의 문제점	99
<표 II-2> General Betting Duty(GBD) 과세 개요	114
<표 II-3> Pool Betting Duty(PBD) 과세 개요	114

<표 II-4> Remote Gaming Duty(RGD) 과세 개요	114
<표 III-1> 배당배분세(DDT) 과세 비교	137
<표 III-2> 주요 품목의 관세율	138
<표 III-3> GST로 통합되는 간접세	140
<표 III-4> 각 지역별 성장촉진산업	147
<표 III-5> 과세규정 요약	153
<표 III-6> 이슬람 금융의 분류	162

그림목차 ▶▶

제 2 부

[그림 III-1] 이슬람 금융의 구조화	162
------------------------------	-----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I. OECD 회원국의 주요 세목별 세율 변화 추이

- 본 장에서는 총 34개 OECD 회원국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이하 “조사기간”)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세율 변화 추이를 살펴봄¹⁾
- 조사기간 중 OECD 회원국의 산술평균기준 최고소득세율은 인상,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인상, 최고법인세율은 인하 추세를 나타냄

1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OECD 회원국의 산술평균기준 최고소득세율(이하 “평균최고소득세율”)은 전체적으로 소폭 인상되는 추세를 보임
 - OECD 회원국의 평균최고소득세율은 2009년 37.19%에서 2014년 38.31%로 1.12%p 인상됨
 - 평균최고소득세율은 2011년에 37.45%로 2010년 37.71% 대비 0.26%p 인하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조사기간 중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2014년 최고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56%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스위스로 13.2%임
- 2009년 대비 2014년 최고소득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15개국, 인하한 국가가 5개국, 유지한 국가가 14개국으로 인상 또는 유지한 국가가 대다수임
- 최고소득세율을 인상한 15개국은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영국, 미국임

1)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세에 해당하는 정부세(또는 연방세) 중 기본세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모든 납세자에 적용되는 지방세(또는 주세) 또는 부가세 등의 세율이 확인되면서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역의 지방세 또는 평균세율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별 국가에서 부담하는 세율 수준 고려 시에는 별도의 지방세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함

- 최고소득세율을 인상한 국가들은 조사기간 중 산술평균기준 4.77%p 인상함
- 최고소득세율을 가장 크게 인상한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9.04%p 인상함
- 최고소득세율을 인하한 5개국은 덴마크, 헝가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임
 - 최고소득세율을 인하한 국가들은 조사기간 중 산술평균기준 6.73%p 인하함
 - 최고소득세율을 가장 크게 인하한 국가는 헝가리로 20%p 인하함
- 우리나라의 최고소득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
 - 2014년 우리나라의 최고소득세율은 38%로 OECD 회원국 평균 38.31%에 비해 0.31%p 낮은 수준임

〈표 1-1〉 OECD 회원국별 소득세 최고과세표준구간 및 적용세율

(단위: 각국의 자국통화,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변동 결과
호주	180,001	180,001	180,001	180,001	180,001	180,001	유지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오스트리아	60,001	60,001	60,001	60,001	60,001	60,001	유지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벨기에	34,361	34,331	35,061	36,301	37,331	37,751	유지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캐나다	126,265	127,022	128,801	132,407	135,055	136,271	유지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칠레	66,353,401	67,689,001	70,237,801	72,370,801	72,370,801	72,370,801	유지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체코공화국	단일세율						유지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덴마크	347,201	389,901	389,901	389,901	389,901	488,101	인하
	59.00	51.50	51.50	51.50	51.70	56.00	
에스토니아	단일세율						유지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핀란드	64,500	66,400	68,200	70,300	100,000	100,000	인상
	30.50	30.00	30.00	29.75	31.75	31.75	

〈표 1-1〉의 계속

(단위: 각국의 자국통화,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변동 결과
프랑스	69,784	70,831	1,000,001	1,000,001	1,000,001	1,000,001	인상
	40.00	41.00	45.00	45.00	45.00	45.00	
독일	250,401	250,731	250,731	250,731	250,731	250,731	유지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그리스	75,001	100,001	100,001	100,001	42,001	42,001	인상
	40.00	45.00	45.00	45.00	42.00	42.00	
헝가리	1,700,001	5,000,001	단일세율				인하
	36.00	32.00	16.00	16.00	16.00	16.00	
아이슬란드	단일세율	7,800,001	8,166,601	8,452,405	8,874,109	9,415,429	인상
	37.20	46.12	46.21	46.24	46.24	46.24	
아일랜드	36,401	36,401	32,801	32,801	32,801	32,801	인상
	46.00	47.00	48.00	48.00	48.00	48.00	
이스라엘	454,681	472,081	482,761	501,961	811,561	811,561	인상
	46.00	45.00	45.00	48.00	50.00	50.00	
이탈리아	75,001	75,001	300,001	300,001	300,001	300,001	인상
	43.00	43.00	46.00	46.00	46.00	46.00	
일본	18,000,001	18,000,001	18,000,001	18,000,001	18,000,001	18,000,001	유지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대한민국	88,000,001	88,000,001	88,000,001	300,000,001	300,000,001	300,000,001	인상
	35.00	35.00	35.00	38.00	38.00	38.00	
룩셈부르크	39,886	39,886	150,001	150,001	150,001	150,001	인상
	38.95	38.95	41.34	41.34	43.60	43.60	
멕시코	392,843	392,843	392,843	392,843	392,843	3,000,001	인상
	28.00	30.00	30.00	30.00	30.00	35.00	
네덜란드	54,777	54,368	55,695	56,492	55,992	56,532	유지
	52.00	52.00	52.00	52.00	52.00	52.00	
뉴질랜드	70,001	70,001	70,001	70,001	70,001	70,001	인하
	39.00	38.00	35.50	33.00	33.00	33.00	
노르웨이	단일세율						인하
	28.00	28.00	28.00	28.00	28.00	27.00	
폴란드	85,529	85,529	85,529	85,529	85,529	85,529	유지
	32.00	32.00	32.00	32.00	32.00	32.00	
포르투갈	64,111	150,001	153,301	153,301	80,001	80,001	인상
	42.00	45.88	46.50	46.50	48.00	48.00	

〈표 1-1〉의 계속

(단위: 각국의 자국통화,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변동 결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단일세율				34,401	35,022	인상
	19.00	19.00	19.00	19.00	25.00	25.00	
슬로베니아	14,822	15,059	15,270	15,682	70,908	70,908	인상
	41.00	41.00	41.00	41.00	50.00	50.00	
스웨덴	526,201	532,701	548,301	574,301	591,601	602,601	유지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스페인	53,408	53,408	175,001	300,001	300,001	175,001	인하
	48.63	48.63	47.00	52.00	52.00	45.00	
스위스	712,401	712,401	751,201	755,201	755,201	755,201	유지
	13.20	13.20	13.20	13.20	13.20	13.20	
터키	50,001	76,201	80,001	88,001	94,001	97,001	유지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영국	37,401	150,001	150,001	150,001	150,001	150,001	인상
	40.00	50.00	50.00	50.00	45.00	45.00	
미국	372,951	373,651	379,151	388,351	400,001	400,001	인상
	35.00	35.00	35.00	35.00	39.60	39.60	
평균	37.19	37.71	37.45	37.69	38.27	38.31	

2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OECD 회원국의 산술평균 표준부가가치세율(이하 “평균표준부가가치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추세를 보임
 - OECD 회원국의 평균표준부가가치세율은 2009년 17.96%에서 2014년 19.17%로 1.21%p인상됨
 - 평균표준부가가치세율은 조사기간 중 인하 없이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됨
 - 2014년 표준부가가치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로 27%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캐나다로 5%임

- 2009년 대비 2014년 표준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20개국, 인하한 국가는 없으며, 유지한 국가가 13개국으로 모든 국가가 인상 또는 유지하고 있음
 - 연방제로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미국은 제외함
- 표준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20개국은 체코,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임
 - 표준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국가들은 조사기간 중 산술평균기준 1.99%p 인상함
 - 표준부가가치세율을 가장 크게 인상한 국가는 스페인으로 5.0%p 인상함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2014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회원국 평균 19.17%에 비해 9.17%p 낮은 수준임

〈표 1-2〉 OECD 회원국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변동 결과
호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지
오스트리아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유지
벨기에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유지
캐나다	5.00	5.00	5.00	5.00	5.00	5.00	유지
칠레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유지
체코 공화국	19.00	20.00	20.00	20.00	21.00	21.00	인상
덴마크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유지
에스토니아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유지
핀란드	22.00	23.00	23.00	23.00	24.00	24.00	인상
프랑스	19.60	19.60	19.60	19.60	19.60	20.00	인상
독일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유지
그리스	19.00	23.00	23.00	23.00	23.00	23.00	인상
헝가리	25.00	25.00	25.00	27.00	27.00	27.00	인상
아이슬란드	24.50	25.50	25.50	25.50	25.50	25.50	인상

〈표 1-2〉의 계속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변동 결과
아일랜드	21.50	21.00	21.00	23.00	23.00	23.00	인상
이스라엘	15.50	16.00	16.00	17.00	18.00	18.00	인상
이탈리아	20.00	20.00	21.00	21.00	22.00	22.00	인상
일본	5.00	5.00	5.00	5.00	5.00	8.00	인상
대한민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지
룩셈부르크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유지
멕시코	15.00	16.00	16.00	16.00	16.00	16.00	인상
네덜란드	19.00	19.00	19.00	21.00	21.00	21.00	인상
뉴질랜드	12.50	15.00	15.00	15.00	15.00	15.00	인상
노르웨이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유지
폴란드	22.00	22.00	23.00	23.00	23.00	23.00	인상
포르투갈	21.00	21.00	23.00	23.00	23.00	23.00	인상
슬로바키아 공화국	19.00	19.00	20.00	20.00	20.00	20.00	인상
슬로베니아	20.00	20.00	20.00	20.00	22.00	22.00	인상
스웨덴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유지
스페인	16.00	16.00	18.00	18.00	21.00	21.00	인상
스위스	7.60	7.60	8.00	8.00	8.00	8.00	인상
터키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유지
영국	17.50	17.50	20.00	20.00	20.00	20.00	인상
미국	n/a	n/a	n/a	n/a	n/a	n/a	n/a
평균	17.96	18.28	18.58	18.79	19.00	19.17	

3 법인세

□ 조사기간 중 OECD 회원국의 산술평균 최고법인세율(이하 “평균최고법인세율”)은 전체적으로 소폭 인하되는 추세를 보임

○ OECD 회원국의 평균최고법인세율은 2009년 24.49%에서 2014년 23.90%로 0.59%p 인하됨

- 평균최고법인세율은 2010년과 2013년 소폭 인상되었으나 그 외의 연도에 인하는 영향이 더 커서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2014년 최고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38%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로 12.5%임
- 2009년 대비 2014년 최고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7개국, 인하한 국가가 12개국, 유지한 국가가 15개국으로 인하 또는 유지한 국가가 대다수임
- 최고법인세율을 인상한 7개국은 칠레,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슬로바키아 공화국임
 - 최고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들은 조사기간 중 산술평균기준 2.5%p 인상함
 - 최고법인세율을 가장 크게 인상한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5%p 인상함
- 최고법인세율을 인하한 12개국은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임
 - 최고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들은 조사기간 중 산술평균기준 3.12%p 인하함
 - 최고법인세율을 가장 크게 인하한 국가는 영국으로 7%p 인하함
- 우리나라의 최고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2014년 우리나라의 최고법인세율은 22%로 OECD 회원국 평균 23.9%에 비해 1.9% 낮은 수준임

〈표 1-3〉 OECD 회원국별 법인세 최고과세표준구간 및 적용세율

(단위: 각국의 자국통화,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변동 결과
호주	단일세율						유지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오스트리아	단일세율						유지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표 1-3〉의 계속

(단위: 각국의 자국통화,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변동 결과
벨기에	단일세율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낮은 세율 적용						유지
	33.99	33.99	33.99	33.99	33.99	33.99	
캐나다	단일세율						인하
	30.9	29.4	27.7	26.3	26.3	26.3	
칠레	단일세율						인상
	17.00	17.00	20.00	20.00	20.00	20.00	
체코공화국	단일세율						인하
	20.00	19.00	19.00	19.00	19.00	19.00	
덴마크	단일세율						인하
	25.00	25.00	25.00	25.00	25.00	24.50	
에스토니아	단일세율						유지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핀란드	단일세율						인하
	26.00	26.00	26.00	24.50	24.50	20.00	
프랑스	단일세율						유지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독일	단일세율						유지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그리스	단일세율						인상
	25.00	24.00	20.00	20.00	26.00	26.00	
헝가리	50,000,001	250,000,001	500,000,001	500,000,001	500,000,001	500,000,001	인상
	16.00	19.00	19.00	19.00	19.00	19.00	
아이슬란드	단일세율						인상
	15.00	18.00	20.00	20.00	20.00	20.00	
아일랜드	단일세율						유지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이스라엘	단일세율						인상
	26.00	25.00	24.00	25.00	25.00	26.5	
이탈리아	단일세율						유지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일본	단일세율						인하
	30.00	30.00	30.00	25.50	25.50	25.50	
대한민국	200M	200M	200M	20,000M	20,000M	20,000M	유지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표 1-3〉의 계속

(단위: 각국의 자국통화,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변동 결과
룩셈부르크	15,001	15,001	15,001	15,001	15,001	15,001	유지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멕시코	단일세율						인상
	28.00	30.00	30.00	30.00	30.00	30.00	
네덜란드	200,001	200,001	200,001	200,001	200,001	200,001	인하
	25.50	25.50	25.50	25.00	25.00	25.00	
뉴질랜드	단일세율						인하
	30.00	30.00	30.00	28.00	28.00	28.00	
노르웨이	단일세율						인하
	28.00	28.00	28.00	28.00	28.00	27.00	
폴란드	단일세율						유지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포르투갈	단일세율						인하
	25.00	25.00	25.00	25.00	25.00	23.00	
슬로바키아 공화국	단일세율						인상
	19.00	19.00	20.00	20.00	23.00	22.00	
슬로베니아	단일세율						인하
	21.00	20.00	19.00	18.00	17.00	17.00	
스웨덴	단일세율						인하
	26.30	26.30	26.30	26.30	22.00	22.00	
스페인	단일세율						유지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스위스	단일세율						유지
	21.70	21.70	21.70	21.70	21.70	21.70	
터키	단일세율						유지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영국	단일세율						인하
	28.00	28.00	26.00	24.00	23.00	21.00	
미국	15,000,001	15,000,001	15,000,001	15,000,001	15,000,001	15,000,001	유지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평균	24.49	24.56	24.45	24.10	24.18	23.90	

II. OECD 국가별 주요 세목 세율 변화 추이

- 본 장에서는 조사기간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율 변동의 추이를 각 국가별로 살펴봄
- 각 국가별 내용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해 각 세목별 이해를 돕기 위한 간략한 설명과 조사기간 중 세율변동의 분석으로 구성됨

1 호주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5단계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소득세의 중간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이 일부 조정됨
 - 2010년 상위 두 번째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40%에서 38%로 인하되고 2011년 다시 38%에서 37%로 인하
 - 2013년 하위 두 번째 구간의 소득세율을 15%에서 19%로, 중간구간의 소득세율을 30%에서 32.5%로 인상됨
- 조사기간 중 일부 과세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됨
 - 2010년과 2011년 두 번의 상향조정을 통해 하위 두 번째 구간이 각각 34천호주달러에서 37천호주달러로 상향조정됨
 - 2013년 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최저점이 6천호주달러에서 182백호주달러로 상향조정됨

〈표 II-1〉 호주의 소득세율

(단위: 호주달러, %)

2009		2010		2011~2012		2013~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6,000	0	0~6,000	0	0~6,000	0	0~18,200	0
6,001~34,000	15	6,001~35,000	15	6,001~37,000	15	18,201~37,000	19
34,001~80,000	30	35,001~80,000	30	37,001~80,000	30	37,001~80,000	32.5
80,001~180,000	40	80,001~180,000	38	80,001~180,000	37	80,001~180,000	37
180,001~	45	180,001~	45	180,001~	45	180,001~	45

자료: 1.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제2호, 2011, 12.

2. OECD Statistics.

3. 호주 국세청, <http://www.ato.gov.au/Rates/Individual-income-tax-rates/>4.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14-2015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부가가치세율은 10%임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법인세율은 30%임
-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법인세율의 인하를 계획하고 있음
 - 현재 30%의 세율을 28.5%로 인하할 계획임
 - 세율인하와 더불어 과세표준이 5백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분에 대해 1.5%의 육아수당부과금(Paid Parental Leave Levy)을 부과할 예정임

2 오스트리아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4단계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표 11-2〉 오스트리아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2009~	
과세표준구간	세율
0~11,000	0.00
11,001~25,000	36.50
25,001~60,000	43.21
60,001~	50.00

자료: OECD Statistics,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2단계 경감세율의 총 3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표준세율은 경감세율 또는 면세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나 용역에 적용됨
 - 특정 지역(Jungholz과 Mittelberg)에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19%의 표준세율이 적용됨
-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은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일부 와인 거래에 한해 적용됨
- 경감세율 중 낮은 세율은 대부분의 식품, 도서, 호텔숙박 및 식당, 승객운송, 주거형 아파트 임대, 개인병원이나 자선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예술가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의약품 공급에 적용됨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의 변동은 없음

- 표준세율은 20%, 경감세율은 각각 12%와 10%로 변동없음

- 1973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당시 표준세율은 18%였으며 1988년 18%에서 20%로 인상됨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법인세율은 25%임

3 벨기에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5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지방정부는 소득세의 9%까지 부가세(surcharges)를 부가하는데 평균 7.0~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변경됨

〈표 11-3〉 벨기에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세율	과세표준구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5%	0~7,900	0~7,900	0~8,070	0~8,350	0~8,590	0~8,680
30%	7,901~11,250	7,901~11,240	8,071~11,480	8,351~11,890	8,591~12,220	8,681~12,360
40%	11,251~18,740	11,241~18,730	11,481~19,130	11,891~19,810	12,221~20,370	12,361~20,600
45%	18,741~34,360	18,731~34,330	19,131~35,060	19,811~36,300	20,371~37,330	20,601~37,750
50%	34,361~	34,331~	35,061~	36,301~	37,331~	37,751

자료: 1. OECD Statistics,

2.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14-2015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2단계 경감세율의 총 3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은 공공주택 및 음료를 제외한 식당용역에 적용됨
 - 경감세율 중 낮은 세율은 일부 생활필수품과 사회서비스, 도서 및 잡지, 특정 식음료(우유, 생선, 육류, 유지류), 의약품, 물, 숙박, 5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보수, 미술품의 공급에 적용됨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의 변동은 없음
 - 표준세율은 21%, 경감세율은 각각 12%와 6%로 변동 없음
 - 2014년 현재의 표준세율은 1996년 개정된 이후 유지됨
 - 부가가치세는 1971년에 도입되었는데 당시 표준세율은 18%였으나 이후 여러 세율변경을 거쳐 1996년부터 2014년 현재의 세율인 21%로 변경됨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법인세율은 33.990%²⁾임

- 일정요건³⁾을 만족하고 과세표준이 322,500유로 미만인 기업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24.980%, 31.930% 그리고 35.535%의 세율로 과세됨
 - 과세표준이 0~25,000유로인 경우 24.980%의 세율이 적용됨
 - 과세표준이 25,001~90,000유로인 경우 31.930%의 세율이 적용됨

2) 3%의 부가세(surtax)가 포함된 세율임

3) 연간 적어도 36,000유로 이상의 보수를 받은 이사가 1명 이상, 회사가 지주회사, 다른 회사가 회사의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의 납입자본의 13%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과세표준이 90,001~322,500유로인 경우 35.535%의 세율이 적용됨

4 캐나다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4단계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변경됨

〈표 11-4〉 캐나다의 소득세율

(단위: 캐나다달러)

세율	과세표준구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	0~40,726	0~40,970	0~41,544	0~42,707	0~43,561	0~43,953
22%	40,727~81,452	40,971~81,941	41,545~83,088	42,708~85,414	43,562~87,123	43,954~87,907
26%	81,453~126,264	81,942~127,021	83,089~128,800	85,415~132,406	87,124~135,054	87,908~136,270
29%	126,265~	127,022~	128,801~	132,407~	135,055~	136,271~

자료: 1. OECD Statistics

2.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13 & 2014.

나.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GST(Goods and Service Tax)와 주정부의 PST(Provincial Sales Tax)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7월 1일 이후 일부 주에서 GST와 PST를 통합한 HST(Harmonized Sales Tax)가 도입됨
 - 2010년 7월 1일부터 연방세와 주세의 통합세 체계인 HST 체계의 도입에 찬성한 참여지역과 GST와 PST의 별도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참여지역으로 구분됨
 - HST세율은 주마다 다른데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Ontario 등은 13%, Nova Scotia는 14%(2015년 중 13%로 인하 예정)임

- 조사기간 중 연방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경은 없음
 - 연방부가가치세율은 5%임
 - 1991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7%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2차례 인하를 통해 2008년부터 2014년 현재의 세율인 5%로 변경됨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은 계속적으로 인하됨
 - 세율이 2010년에 1%p,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5%p를 인하되어 2009년 19%에서 2014년 현재의 15%로 변경됨

〈표 II-5〉 캐나다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1.1~
연방세율	19.0	18.0	16.5	15.0
주세합산세율	30.9	29.4	27.7	26.3

주: 15%의 연방법인세율에 주세(province tax)나 지역세(territory tax)를 추가 부담하는 데 세율은 주나 지역에 따라 10~16%로 다양함

자료: OECD Statistics.

- 한편, 중소기업에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조사기간 중 세율의 변동은 없음
 -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11%임

5 칠레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8단계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소득세율은 중간 과세표준구간에 대해 한 차례 인하됨
 - 2013년 하위 첫 번째와 상위 첫 번째 구간을 제외한 중간구간 소득세율이 1~2%p 내외에서 인하됨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변경됨

〈표 II-6〉 칠레의 소득세율

(단위: 페소, %)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2009	2010	2011	2012		2013~2014
0.0	0~ 5,971,806	0~ 6,092,010	0~ 6,321,402	0~ 6,513,372	0.0	0~ 6,513,372
5.0	5,971,807~ 13,270,680	6,092,011~ 13,537,800	6,321,403~ 14,047,560	6,513,373~ 14,474,160	4.0	6,513,373~ 14,474,160
10.0	13,270,681~ 22,117,800	13,537,801~ 22,563,000	14,047,561~ 23,412,600	14,474,161~ 24,123,600	8.0	14,474,161~ 24,123,600
15.0	22,117,801~ 30,964,920	22,563,001~ 31,588,200	23,412,601~ 32,777,640	24,123,601~ 33,773,040	13.5	24,123,601~ 33,773,040
25.0	30,964,921~ 39,812,040	31,588,201~ 40,613,400	32,777,641~ 42,412,680	33,773,041~ 43,422,480	23.0	33,773,041~ 43,422,480
32.0	39,812,041~ 53,082,720	40,613,401~ 54,151,200	42,412,681~ 56,190,240	43,422,481~ 57,896,640	30.4	43,422,481~ 57,896,640
37.0	53,082,721~ 66,353,400	54,151,201~ 67,689,000	56,190,241~ 70,237,800	57,896,641~ 72,370,800	35.5	57,896,641~ 72,370,800
40.0	66,353,401~	67,689,001~	70,237,801~	72,370,801~	40.0	72,370,801~

자료: 1. OECD Statistics

2.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3.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부가가치세율은 19%임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이 한 차례 인상됨

- 2011년 17%에서 20%로 3%p 인상됨
- 2011년 지진과 해일의 피해복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2011년과 2012년의 법인세율을 각각 20.0%와 18.5%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다시 세법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20.0%의 세율이 계속하여 적용되고 있음

〈표 II-7〉 칠레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0	2011~
세율	17.0	20.0

자료: OECD Statistics.

6 체코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소득세율은 15%임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경감세율의 2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경감세율은 식품, 의료기구의 수리용역, 청량음료, 배수 및 하수처리, 대중교통, 해상 및 항공운송, 피트니스센터 이용, 특정 의료장비, 유아용 카시트, 도서 및 잡지,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장례서비스 등의 공급에 적용됨
- 2015년에 도서, 의약품 등에 대한 경감세율 중 10%의 낮은 세율을 신설할 예정임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됨
 - 표준세율은 2009년 19%에서 2010년과 2013년 각각 1%p 인상되어 21%로 변경됨
 - 경감세율은 2010년 9%에서 2010년 1%p, 2012년 4%p, 2013년 1%p 15%로 변경됨
- 정부는 2015년부터 경감세율 중 낮은 세율 구간을 신설할 예정임
 - 2015년에 도서, 의약품 등에 대해 경감세율 중 낮은 세율이 신설되어 10%가 적용됨

〈표 II-8〉 체코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	2010~2011	2012	2013~
표준세율	19	20	20	21
경감세율	9	10	14	15

자료: 1. OECD Statistics

2.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09~2014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이 한 차례 인하됨
 - 2010년 20%에서 19%로 1%p 인하됨

〈표 II-9〉 체코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	2010~
세율	20	19

자료: OECD Statistics.

7 덴마크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3단계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소득세율과 과세표준구간은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음
 - 2010년 중간구간 세율을 37.5%에서 36.0%로 1.5%p 인하하고 과세표준구간을 확대하였으며 최상위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59.0%에서 51.5%로 7.5%p 인하됨
 - 2014년의 세율 인상은 주정부세율에 의한 효과로 인한 것이며 연방정부세율을 전년과 동일함

〈표 II-10〉 덴마크의 소득세율

(단위: 크로네, %)

2009		2010~2012		2013		2014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0	0~42,900	0	0~42,900	0	0~42,000	0	0~49,900
37.5	42,901~347,200	36.0	42,901~389,900	36.0	42,001~389,900	40	49,901~488,100
59.0	347,201~	51.5	389,901~	51.7	389,901~	56	488,101~

주: 위 세율은 평균주정부세율을 고려하여 산정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9~2014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부가가치세율은 25%임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이 한 차례 인하됨

- 2014년에 25%에서 24.5%로 0.5%p 인하됨

〈표 II-11〉 덴마크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3	2014
세율	25.0	24.5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9~2014

한편, 정부는 법인세율을 계속적으로 인하할 예정임

- 2015년에 1.0%p 인하하여 23.5%로, 2016년에 1.5%p 인하하여 22%가 될 예정임

8 에스토니아

가. 개인소득세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소득세율은 21%임

나. 부가가치세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경감세율의 2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경감세율은 장애인을 위한 의료장비와 물품, 도서, 간행물과 숙박용역의 공급에 적용됨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이 한 차례 인상됨

- 2009년 표준세율이 18%에서 20%로 2%p, 경감세율이 5%에서 9%로 4%p 인상되어 20%로 변경됨

〈표 II-12〉 에스토니아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 6. 30	2009. 7. 1~
표준세율	18	20
경감세율	5	9

자료: 1. OECD Statistics

2.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09~2014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법인세율은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21%임

9 핀란드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 차례 단계가 변경됨
 - 2012년까지 5단계 누진세 체계가 유지되다 2013년에 최상위구간을 신설하여 2014년 현재의 6단계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교회세로 구성됨
 - 지방세는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데 과세표준의 일정률로 부과됨
 - 교회세는 특정 국교회의 신자에게만 과세표준의 일정률로 부과됨
 - 2014년 현재 교회세가 부과되는 교회는 루터교(the Evangelical-Lutheran Church)와 동방정교회(the Orthodox Church)임⁴⁾

4) L. Ambagtsheer-Pakarinen, Finland - Individual Taxation sec. 2., Country Surveys IBFD.

- 조사기간 중 소득세율은 일부구간에서 다소 인하되었으나 최고소득세율 구간이 신설됨
 - 2010년 각각의 중간구간들에 적용되는 세율을 0.5%p 인하함
 - 2012년 최상위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 0.25%p 인하함
 - 2013년부터 고소득자 증세를 위해 논의되던 연대세(solidarity tax)를 10만유로 초과구간에 적용하여 31.75%가 과세됨⁵⁾
- 조사기간 중 2013년을 제외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변경됨

〈표 11-13〉 핀란드의 소득세 중 국세율

(단위: 유로, %)

2009		2010		2011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13,100	0.00	0~15,200	0.00	0~15,600	0.00
13,101~21,700	7.00	15,201~22,600	6.50	15,601~23,200	6.50
21,701~35,300	18.00	22,601~36,800	17.50	23,201~37,800	17.50
35,301~64,500	22.00	36,801~66,400	21.50	37,801~68,200	21.50
64,501~	30.50	66,401~	30.00	68,201~	30.00
2012		2013		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16,100	0.00	0~16,100	0.00	0~16,300	0.00
16,101~23,900	6.50	16,101~23,900	6.50	16,301~24,300	6.50
23,901~39,100	17.50	23,901~39,100	17.50	24,301~39,700	17.50
39,101~70,300	21.50	39,101~70,300	21.50	39,701~71,400	21.50
70,301~	29.75	70,301~100,000	29.75	71,401~100,000	29.75
		100,001~	31.75	100,001~	31.75

주: 두 번째 낮은 구간(2013년의 경우 세율 6.5% 적용구간)부터는 가장 낮은 구간(2013년의 경우 세율 0% 적용구간)에 대해 8유로 세금 부과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9~2014

5) Kaj Grussner, "Finland," *Taxation in Europe 2013: The yearly report on the evolution of European tax systems*, Institute for Research on Economic and Fiscal Issues

조사기간 중 지방세와 교회세는 세율은 소폭의 조정이 존재함

〈표 II-14〉 핀란드의 소득세 중 지방세율과 교회세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세	16.00~21.00	16.50~21.00	16.50~21.50	16.25~21.50	16.25~21.50	16.50~22.50
교회세	1.00~2.25	1.00~2.00	1.00~2.00	1.00~2.15	1.00~2.20	1.00~2.20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9~2014

나. 부가가치세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2단계 경감세율의 총 3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은 두 차례 인상됨

○ 재정안정을 위해 2010년과 2013년에 모든 부가가치세율을 1%p씩 인상시킴

〈표 II-15〉 핀란드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 ³⁾	2010 ³⁾ ~2012	2013~2014
표준세율	22	23	24
경감세율	높은 세율 ¹⁾	12	13
	낮은 세율 ²⁾	8	9

주: 1) 높은 세율의 적용대상은 식품류, 동물사료, 물 등

2) 낮은 세율의 적용대상은 영화, 스포츠서비스, 도서, 의약품, 여객운송, 숙박 등임

3) 연도 말 적용세율임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09~2014

다. 법인세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은 두 차례 인하됨

- 2012년 법인세율이 26.0%에서 24.5%로 인하됨
 - 법인세율의 인하 대신에 개인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28%에서 30%, 32%의 누진세율로 인상됨
-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됨

〈표 II-16〉 핀란드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1	2012~2013	2014
법인세	26.0	24.5	20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9~2014

10 프랑스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소득을 세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가족계수제 (Family coefficient system)가 적용됨
 - 이 체계에서는 세대합산소득을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계수표에 따라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이를 곱하여 세액이 산출됨
 - 계수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수로 산정되나 독신·결혼·이혼·배우자의 사망, 자녀의 나이 및 숫자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음
 - 예를 들어, 3자녀를 둔 독신이나 이혼한 거주자의 계수는 4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3자녀를 둔 거주자의 계수는 5임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누진세 구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 차례 단계가 변경됨
 - 2010년까지 5단계 누진세 과세체계에서 2011년 8단계, 2012년 9단계, 2014년 8단계로 변경됨

- 조사기간 중 소득세율은 최상위구간의 세율이 인상됨
 - 2010년 최상위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40%에서 41%로 1%p 인상됨
 - 2011년부터 25만유로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3~4%의 부가세(Contribution exceptionnelle sur les hauts revenus)가 신설됨⁶⁾

- 조사기간 중 일부 연도에서 과세표준구간이 물가에 연동되어 변동되었으며 2014년에는 하위 과세표준구간이 조정됨
 - 2014년에 과세최저점을 6,011유로에서 9,690유로로 상향조정하고 하위 4번째 구간까지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면서 최저세율 5.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이 폐지됨

〈표 II-17〉 프랑스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2009		2010		2011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5,875	0.0	0~5,963	0.0	0~5,963	0.0
5,876~11,720	5.5	5,964~11,896	5.5	5,964~11,896	5.5
11,721~26,030	14.0	11,897~26,420	14.0	11,897~26,420	14.0
26,031~69,783	30.0	26,421~70,830	30.0	26,421~70,830	30.0
69,784~	40.0	70,831~	41.0	70,831~250,000	41.0
				250,001~500,000	41.0(0,3)
				500,001~1,000,000	41.0(3,4)
				1,000,001~	41.0(4,4)
2012		2013		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5,963	0.0	0~6,011	0.0	0~9,690	0.0
5,964~11,896	5.5	6,012~11,991	5.5	9,691~26,764	14.0
11,897~26,420	14.0	11,992~26,631	14.0	25,765~71,754	30.0
26,421~70,830	30.0	26,632~71,398	30.0	71,755~151,956	41.0
70,831~150,000	41.0	71,399~151,200	41.0	151,957~250,000	45.0
150,001~250,000	45.0	151,201~250,000	45.0	250,001~500,000	45.0(0,3)
250,001~500,000	45.0(0,3)	250,001~500,000	45.0(0,3)	500,001~1,000,000	45.0(3,4)
500,001~1,000,000	45.0(3,4)	500,001~1,000,000	45.0(3,4)	1,000,001~	45.0(4,4)
1,000,001~	45.0(4,4)	1,000,001~	45.0(4,4)		

주: 괄호 안은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세율로 기혼자, 독신자에 대한 추가 세율임
 자료: 2009~2013년 세율은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9~2014
 2014년 세율은 IBFD, News, Finance Bill for 2015(<http://online.ibfd.org>)

6)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제2호, p.2.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3단계 체계에서 4단계 체계로 변경됨
 - 2012년에 부가가치세율은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 구간이 신설되어 표준세율과 3단계 경감세율의 4단계 체계로 변경됨
 - 기존에 5.5%를 적용받던 일부 품목에 대해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로 분류하고 7.0%로 과세됨
 - 코르시카섬 등은 프랑스 본토와 다른 경감세율이 부과됨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이 한 차례 인상됨
 - 2014년 표준세율을 19.6%에서 20%로 0.4%p,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을 7%에서 10%로 3%p 인상함

〈표 II-18〉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2011	2012~2013	2014
표준세율		19.6		20.0
경감세율 ¹⁾	높은 세율 ²⁾	-	7.0	10.0
	중간 세율 ³⁾	5.5		
	낮은 세율 ⁴⁾	2.1		

주: 1) 프랑스 본토에 대한 세율로 코르시카섬은 표준세율은 동일하나 경감세율이 과세거래별로 13.0%, 8.0%, 0.9%로 차이가 있음

2) 높은 세율의 적용대상은 숙박, 음식점 등에서 공급하는 식품 등임

3) 중간 세율의 적용대상은 식품류, 도서, 여객운송 등임

4) 낮은 세율의 적용대상은 의약품, 신문, 정기간행물 등임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09~2014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법인세율은 33.33%임

〈표 II-19〉 프랑스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4
법인세	33.33

주: 중소기업들이 사회보장세 미적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3만 8,120유로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됨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9~2014

-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에 부가되는 부가세 등이 부과됨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정금액(2.5억유로 이상)의 매출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법인세의 5%에 해당하는 추가세가 부과됨
 - 이는 예정보다 2년이 연장되어 2015년까지 적용되며 2014년부터는 법인세의 10.7%가 적용됨
 - 연매출이 763만유로를 초과하면서 개인인 주주가 75% 미만인 경우 76.3만유로를 초과하는 법인세에 대해 사회보장세로 법인세의 3.3%가 부과됨

11 독일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4단계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개인소득과 부부합산소득에 대한 각각의 누진세 체계가 존재하는 데 모두 변경이 없음
- 조사기간 중 2010년에 과세표준 전구간을 상향조정함

〈표 II-20〉 독일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구분	2009	2010~2014	세율
	과세표준구간	과세표준구간	
독신	0~7,834	0~8,004	0
	7,835~52,551	8,005~52,881	14~42
	52,552~250,400	52,882~250,730	42
	250,401~	250,731~	45
부부 합산	0~15,669	0~16,009	0
	15,670~105,103	16,010~105,763	14~42
	150,104~500,800	105,764~501,460	42
	500,801~	501,461~	45

자료: 1. KPMG, "Germany Taxation of International Executives"
 2. Deloitte, "Taxation and Investment in Germany 2013"
 3.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13 & 2014

- 부가적으로 독일 통일비용 부담을 위한 연대부가세(solidarity surcharge) 및 일부 주에서 해당되는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에게 교회세가 부과되는 데 조사기간 중 세율의 변동은 없음

〈표 II-21〉 독일의 연대부가세율과 교회세율

(단위: %)

구분	산출기준	2009~2014
연대부가세	산출세액(income tax liability)	5.5
교회세		8.0 또는 9.0

자료: 1.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9~2014
 2. IBFD, Country Analyses, Germany - Individual Taxation(<http://online.ibfd.org>)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경감세율의 총 2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표준세율은 19%, 경감세율은 7%로 변동 없음

〈표 II-22〉 독일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2014
표준세율	19
경감세율 ¹⁾	7

주: 1)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은 도서, 신문, 문화사업, 식품류, 여객운송, 농산품 등임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09~2014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법인세율은 15%임

□ 법인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연대부가세, 영업세율이 부과됨

○ 연대부가세는 법인세액의 5.5%가 부과됨

○ 영업세는 과세표준의 조정 후 기본 3.5%가 부과됨

- 과세표준의 조정은 과세표준에 장기채무의 이자,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등의 일정 비율을 가산함

- 각 지방자치정부마다 다른 승수(2014년: 베를린 410%, 프랑크푸르트·마인 460%, 함부르크 470%, 뮌헨 490%)로 기본세율에 곱하여 부과됨

〈표 II-23〉 독일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4
법인세(연대부가세)	15(0.825)
영업세율	약 14~17
합산세율	약 23~33

자료: 1.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9~2014

2. A. Perdelwitz, Germany - Corporate Taxation sec. 3., Country Surveys IBFD

12 그리스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세율, 과세표준 및 과세체계의 변경이 이루어짐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차례 단계가 변경됨
 - 과세표준구간이 2009년 4단계에서 2010년 9단계, 2011년 8단계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누어 각각 3단계, 2단계 누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과세표준구간의 변경에 따라 소득세율이 계속적으로 변경됨
 - 2010년 9단계 과세표준구간으로 변경되면서 하위 구간에는 보다 낮은 세율이 높은 구간에는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됨
 - 2011년 8단계 과세표준구간으로 변경되면서 과세최저점을 12,000유로에서 5,000유로 낮추고 새로이 과세되는 구간에 10%의 세율을 적용함
 - 중간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1~3%p 조정함
 - 2013년부터 소득원천별 구분, 구간의 단순화에 따라 신설된 세율이 적용됨

〈표 II-24〉 그리스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2009		2010		2011~2012		2013~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12,000	0	0~12,000	0	0~5,000	0	근로소득	
12,001~30,000	25	12,001~16,000	18	5,001~12,000	10	0~25,000	22
30,001~75,000	35	16,001~22,000	24	12,001~16,000	18	25,001~42,000	32
75,001~	40	22,001~26,000	26	16,001~26,000	25	42,001	42

〈표 II-24〉의 계속

2009		2010		2011~2012		2013~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26,001~32,000	32	26,001~40,000	35	사업소득	
		32,001~40,000	36	40,001~60,000	38	0~50,000	11
		40,001~60,000	38	60,001~100,000	40	50,001~	33
		60,001~100,000	40	100,001~	45		
		100,001~	45				

자료: 1.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9~2014
 2. IBFD, Country Analyses, Greece - Individual Taxation(<http://online.ibfd.org>)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연대부가세(solidarity tax contribution)가 부과됨
 - 연간 순소득이 12,000유로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1~4%가 부과됨
 - 이러한 연대부가세는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세(emergency tax)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표 II-25〉 그리스의 연대부가세율

(단위: 유로, %)

2010~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12,001~20,000	1
20,001~50,000	2
50,001~100,000	3
100,001~	4

자료: 1.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9~2014
 2. C. Kypris, Greece - Individual Taxation sec. 2., Country Surveys IBFD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2단계 경감세율의 총 3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구제금융의 상환 및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부가가치세 세율별 적용 항목의 조정과 동시에 세율의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0년 표준세율,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이 각각 4%p, 2%p, 1%p 인상됨
 - 2011년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이 각각 2%p, 1%p 인상되어 2014년 현재의 세율인 23%, 13%, 6.5%로 변경됨

〈표 II-26〉 그리스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	2010 ³⁾	2011~2014
표준세율	19.0(13.0)	23.0(13.0)	23.0(16.0)
경감세율	높은 세율 ¹⁾	9.0(6.0)	11.0(6.0)
	낮은 세율 ²⁾	4.5(3.0)	5.5(3.0)

주: 1. 괄호 안은 도데카네스, 키클라데스, 스포라데스 제도 및 에게해 섬들에서의 세율

1) 높은 세율의 적용대상은 식품류, 운송, 전력, 수도 등임

2) 낮은 세율의 적용대상은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등임

3) 연도 말 적용세율임

자료: 1.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09~2014

2. 2010년 세율은 IBFD, *Country Analyses, Greece - Corporate Taxation*(<http://online.ibfd.org>)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은 두 차례 인하된 후 한 차례 인상됨
 - 2010년 법인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된데 이어 2011년부터 재정위기상황에서 투자촉진을 위해 다시 24%에서 20%로 인하됨
 - 2013년 IMF, EU 등의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법인세율이 20%에서 26%로 인상됨

〈표 II-27〉 그리스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2014
일반	25	24	20	20	26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9~2014

13 헝가리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에서 단일세율체계로 변경됨
 - 2010년까지 2단계 누진세 체계에서 2011년부터 단일세율체계로 변경됨
- 조사기간 중 소득세율은 세율의 전반적인 인하, 단일세율체계의 변경 등을 통해 인하되고 있음
 - 2010년 과세표준구간을 상향조정하면서 하위구간의 세율이 1%p, 상위구간의 세율을 4%p 인하되어 각각 17%, 32%로 변경됨
 - 2011년부터 조세체계의 단순화, 근로유인의 창출,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인한 저축과 소비 지출의 촉진 등을 위해 16%의 단일세율로 변경됨⁷⁾

〈표 II-28〉 헝가리의 소득세율

(단위: HUF(포린트), %)

2009		2010		2011 ¹⁾ ~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1,700,000	18	0~5,000,000	17	모든 구간	16
1,700,001~	36	5,000,001~	32		

주: 1) 2011년에는 모든 총소득, 2012년에는 HUF 2,424,000 초과 소득에 대해 1.27을 곱하여 (super-gross) 세율을 적용하여 유효세율이 실제로는 16%에서 20.32%였으나 2013년부터 폐지됨
 자료: 1.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9~2014
 2. IBFD, *Country Analyses, Hungary - Individual Taxation*(<http://online.ibfd.org>)

- 연대부가세(solidarity surtax)는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으나 2010년에 폐지됨
 - 2009년까지 과세표준 7,44,000포린트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4%의 세율로 과세됨

7) Ministry for National Economy, "Hungary's flat-rate personal income tax," 16 November 2010, (<http://www.mfa.gov.hu/NR/rdonlyres/68F5E85D-7062-4001-8FD8-7946055579B3/0/Hungaryflatratepersonalincometax.pdf>)

〈표 II-29〉 헝가리의 연대부가세율

(단위: HUF(포린트), %)

구분	2009	2010~
과세표준	7,446,001~	N/A
세율	4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9~2014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 2단계 경감세율의 총 3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이 한 차례 인상됨
 - 세수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25%에서 27%로 2%p 인상됨

〈표 II-30〉 헝가리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 ³⁾ ~2011	2012~2014
표준세율	25	27
경감세율	높은 세율 ¹⁾	18
	낮은 세율 ²⁾	5

주: 1) 높은 세율의 적용대상은 식품류, 호텔서비스 등임

2) 낮은 세율의 적용대상은 의료, 도서 등임

3) 연도 말 적용세율임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09~2014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2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은 한 차례 세율인상과 두 차례의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이 이루어짐

- 2010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구간이 5천만포린트에서 25천만포린트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세율이 16%에서 19%로 3%p 인상됨
 - 2010년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 경제위기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대부가세가 폐지되면서 법인세율이 인상됨
- 2011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구간이 25천만포린트에서 50천만포린트로 상향조정됨

〈표 II-31〉 헝가리의 법인세율

(단위: HUF(포린트), %)

2009 ¹⁾		2010 ³⁾		2011~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50,000,000	10 ²⁾	0~250,000,000	10	0~500,000,000	10
50,000,001~	16	250,000,001~	19	500,000,001~	19

주: 1) 2009년까지는 세전이익에 배당, 보조금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4%의 연대부가세를 부과하였으나 2010년부터 폐지

2) 2009년에는 10%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종업원 급여가 최소임금의 두 배를 넘는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 조건이 없어짐

3) 2010년 7월 1일부터 과세표준구간이 다시 개정되어 2010년으로 표시된 구간은 2010년 상반기에 적용되고 2010년 하반기는 2011년으로 표시된 과세표준구간이 적용됨

자료: 1.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9~2014

2. Deloitte, "Hungary Tax Alert," 22 July 2010

14 아이슬란드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단일세율체계에서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2009년까지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0년부터 3단계 누진세 체계가 적용됨

□ 조사기간 중 소득세율은 누진세 체계를 갖추면서 인상되었으나 이후 다시 한 차례 인하됨

- 2010년 3단계 누진세 체계를 갖추면서 기존세율인 24.1% 이외에 27%, 33%의 구간이 신설됨
- 2011년 각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24.1%, 27%, 33%에서 22.9%, 25.8%, 31.8%로 인하되어 2014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표 II-32〉 아이슬란드의 소득세율

(단위: ISK(크로나), %)

2009		2010		2011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모든 구간	24.10(13.10)	0~2,400,000	24.10(13.12)	0~2,512,800	22.90(14.41)
		2,400,001~7,800,000	27.00(13.12)	2,512,801~8,166,600	25.80(14.41)
		7,800,001~	33.00(13.12)	8,166,601~	31.80(14.41)
2012		2013		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2,760,000	22.90(14.44)	0~2,897,700	22.90(14.42)	0~3,480,000	22.86(14.44)
2,760,001~8,452,404	25.80(14.44)	2,897,701~8,874,108	25.80(14.42)	3,480,001~9,415,428	25.80(14.44)
8,452,405~	31.80(14.44)	8,874,109~	31.80(14.42)	9,415,429~	31.80(14.44)

주: 괄호 밖 세율은 국세, 괄호 안 세율은 평균지방세율로 실제 세율은 2010: 11.24~14.61%, 2011~2013: 12.44~14.48%, 2014: 12.44~14.52%

자료: 1.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9~2014

2. IBFD, *Country Analyses, Iceland - Individual Taxation*

3. KPMG, *Tax rate online - Individual income tax rates table*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경감세율의 2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이 한 차례 인상됨
 - 2010년 표준세율의 24.5%에서 25.5%로 1.0%p 인상됨

〈표 II-33〉 아이슬란드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	2010~2014
표준세율	24.5	25.5
경감세율 ¹⁾	7.0	7.0

주: 1)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은 국내여행객운송, 라디오면허, 신문, 정기발간물, 온천, 난방용 전력 및 석유, 식품류 등임

자료: 1.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09~2014

2. KPMG, Tax rate online - Indirect tax rate table

3. International Sales Tax Refund(<http://www.insatax.com/pages/importantvatnews.php>)

다. 법인세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은 두 차례 인상됨

- 2009년 일반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15%에서 18%로 3%p, 파트너십에 적용되는 세율이 26%에서 32.7%로 6.7%p 인상됨
- 2011년 일반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18%에서 20%로 2%p, 파트너십에 적용되는 세율이 32.7%에서 36%로 3.3%p 인상됨
-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체계이나 일반법인과 파트너십 등에 적용되는 세율이 구분됨

〈표 II-34〉 아이슬란드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2014
일반법인	15.0	18.0	20.0
파트너십 등	26.0	32.7	36.0

자료: 1.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9~2014

2. KPMG, Tax rate online - Corporate tax rates table

(<http://www.kpmg.com/Global/en/services/Tax/tax-tools-and-resources/Pages/corporate-tax-rates-table.aspx>)

15 아일랜드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2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소득세율의 변경은 없으나 과세표준구간이 한 차례 변경됨
 - 2011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독신의 경우 36,401유로에서 32,801유로로, 부부의 경우 45,401유로에서 41,801유로로 하향 조정됨

〈표 II-35〉 아일랜드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구분	2009~2010		2011~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독신 ¹⁾	0~36,400	20	0~32,800	20
	36,401~	41	32,801~	41
부부 합산 ²⁾	0~45,400	20	0~41,800	20
	45,401~	41	41,801~	41

주: 1) 자녀가 없는 경우의 독신

2)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종속되는 배우자의 소득의 일정금액(2008: 26,800유로, 2009·2010: 27,400유로, 2011~2014: 23,800유로)까지 낮은 세율을 추가적으로 적용

자료: 1. Deloitte, "Taxation and Investment in Ireland 2013"

2.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9~2014

- 조사기간 중 2011년 기존의 소득부과금(income levy) 등이 폐지되고 사회세(universal social charge)로 대체되면서 세율인상이 이루어짐
 - 2011년 사회세로 변경되면서 최상위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6%에서 10%로 4%p 인상됨

〈표 II-36〉 아일랜드의 사회세율

(단위: 유로, %)

2009			2010		2011~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세율 ¹⁾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75,036	1.67	2.00	0~75,036	2.00	0~10,036	2.00 ²⁾
75,037~100,100	3.00	4.00	75,037~174,980	4.00	10,307~16,016	4.00
100,101~174,980	3.33		174,981~	6.00	16,017~100,000	7.00
174,981~250,120	4.67	6.00			100,001~	10.00 ³⁾
250,121~	5.00					

주: 1) 근로소득에 적용

2) 일정규모(2011: 4,004유로, 2012: 10,036유로) 이하인 경우 0.00% 적용

3) 근로소득인 경우 7.00% 적용

1. 2011년 이전은 소득부과금임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9~2014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경감세율의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에서 4단계 과세 체계로 변경됨
 - 2011년에 경감세율 중 중간세율이 신설됨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은 한 차례 인하와 두 차례 인상이 이루어짐
 - 2010년 표준세율이 21.5%에서 21%로 0.5%p 인하됨
 - 2012년에 IMF/EU와의 구제금융에 따른 약정에 의해 표준세율이 21%에서 23%로 2%p 인상됨
 - 2014년 경감세율 중 낮은 세율이 4.8%에서 5%로 0.2%p 인상됨

〈표 II-37〉 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 ⁴⁾	2010	2011 ⁵⁾	2012~2013	2014
표준세율	21.5	21.0	21.0	23.0	23.0
경감세율	높은 세율 ¹⁾	13.5	13.5	13.5	13.5
	중간 세율 ²⁾	-	-	9.0	9.0
	낮은 세율 ³⁾	4.8	4.8	4.8	4.8

주: 1) 높은 세율의 적용대상은 신문, 정기간행물, 휴가용 숙박시설, 전기, 수선서비스, 부동산개발 등임

2) 2011년 7월부터 높은 세율 적용대상이었던 신문, 정기간행물, 휴가용 숙박시설 등이 중간 세율 적용대상으로 변경

3) 낮은 세율의 적용대상은 가축, 그레이하운드 등임

4) 세율 변경은 2008년 12월에 이루어짐

5) 연도 말 적용세율임

자료: 1.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09~2014

2. Irish Tax and Custom (<http://www.revenue.ie/en/tax/vat/rates/current-historic-rates-vat.html>)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법인세율은 소득별 단일세율체제로 표준세율은 12.5%임

○ 다만 2010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1년부터 12.5%의 표준세율로 대체됨

〈표 II-38〉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0	2011~2014
표준세율	12.5	12.5
국내 제조판매소득 등 ¹⁾	10.0	
불로소득 등 ²⁾ (passive income)	25.0	25.0

주: 1)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의 거래소득과 소프트웨어 개발·데이터처리 등의 일부 서비스활동 소득 등

2) 물품거래가 없는 임대·투자 소득, 국내거래가 연계되지 않은 국외소득, 천연자원·토지개발 소득 등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9~2014

16 이스라엘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단계가 한 차례 증가함
 - 2012년까지 6단계의 누진세 체계였으나 2013년에 최고상위구간을 신설하여 7 단계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누진세 체계에서 60세 이상의 거주자는 최저 과세표준구간에서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

- 조사기간 중 소득세율이 한 차례 인하 후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
 - 2010년 최상위와 최상위 두 번째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을 1%p씩 인하함
 - 2012년 최상위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을 45%에서 48%로 3%p 인상함
 - 2013년 최상위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면서 5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하위 과세표준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1%p씩 인상됨

〈표 II-39〉 이스라엘의 소득세율

(단위: NIS(셰켈), %)

		2010		2011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55,080	30(10)	0~57,240	30(10)	0~60,840	30(10)
55,081~ 97,920	30(15)	57,241~101,640	30(14)	60,841~103,920	30(14)
97,921~147,000	30(23)	101,641~152,640	30(23)	103,921~168,840	30(23)
147,001~211,200	32(30)	152,641~219,000	33(30)	168,841~254,880	30
211,201~454,680	34	219,001~472,080	33	254,881~482,760	33
454,681~	46	472,081~	45	482,761~	45
2012		2013~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62,400	30(10)	0~63,360		31(10)	
62,401~106,560	30(14)	63,361~108,120		31(14)	
106,561~173,160	30(21)	108,121~168,000		31(21)	
173,161~261,360	30	168,001~240,000		31	
261,361~501,960	33	240,001~501,960		34	
501,961~	48	501,961~811,560		48	
		811,561~		50	

주: 괄호 안 세율은 60세 이상에 대한 세율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9~2014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이 계속적으로 인상됨
 - 2010년 0.5%p, 2012년 1%p, 2013년 1%p 등 조사기간 중 2009년 15.5%에서 2014년 18%로 총 2.5%p 인상됨

〈표 II-40〉 이스라엘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	2010~2011	2012	2013~2014
세율	15.5	16	17	18

자료: KPMG, Tax rate online - Indirect tax rate table

(<http://www.kpmg.com/Global/en/services/Tax/tax-tools-and-resources/Pages/indirect-tax-rates-table.aspx>)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이 2011년까지 인하되었으나 이후 기간에 다시 인상됨
 - 2010년과 2011년 각각 1%p 인하됨
 - 법인세율을 2010년부터 매년 1%p 이상 인하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2012년 세율이 1%p 인상됨
 - 이후 2014년 법인세율이 25%에서 26.5%로 1.5%p 다시 인상됨

〈표 II-41〉 이스라엘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2013	2014
표준세율	26.0	25.0	24.0	25.0	26.5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9~2014

17 이탈리아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5단계의 누진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소득세율의 변경은 없으나 부가세 징수가 2011년 신설됨
 - 의회는 재정적자의 감축을 위하여 2011년 9월 14일에 30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세(surtax)의 추가징수 등을 포함한 긴축패키지(law decree 138)를 승인하였음
 -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3%의 추가 부가세 징수가 시행됨

〈표 II-42〉 이탈리아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과세표준구간	세율	
	2009~2010	2011~2014
0~15,000	23	23
15,001~28,000	27	27
28,001~55,000	38	38
55,001~75,000	41	41
75,001~300,000	43	43
300,001~	43	46 (부가세 포함)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2단계 경감세율의 총 3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은 가축, 농축수산물 등에 적용됨
 - 경감세율 중 낮은 세율은 우유 등의 특정 농축산물, 신문 등에 적용됨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이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인상됨
 - 2011년 및 2013년 표준세율이 각각 1%p 인상되어 2009년 20%에서 2014년 22%로 인상됨

〈표 II-43〉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1997. 10. 1~ 2011. 9. 16	2011. 9. 17~ 2013. 6. 30	2013. 7. 1~
표준세율		20	21	22
경감세율	높은 세율	10	10	10
	낮은 세율	4	4	4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법인세율은 27.5%임
- 2011년 이후부터 석유·가스·전기에너지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되던 로빈세(Robin tax)의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상됨
 - 유가급등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징수되는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됨
 - 인상된 세율(6.5%에서 10.5%로 인상)은 2011년, 2012년 및 2013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14년부터는 적용되지 않음
 - 즉, 로빈세 부담 대상이 되는 법인은 2008~2010년까지는 34%, 2011~2013년까지는 38%의 총법인세를 부담함

18 일본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6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정부는 소득세 최상위 구간의 신설을 예정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5~40%의 6단계 누진세 체계에서 2015년부터는 4,000만엔 초과 과세표준에 대하여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됨

〈표 II-44〉 일본의 소득세율

(단위: 만엔, %)

과세표준구간	2009~2014 세율
~1,950,000	5
1,950,001~3,300,000	10
3,300,001~6,950,000	20
6,950,001~9,000,000	23
9,000,001~18,000,000	33
18,000,001~	40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소비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2012년 세제개혁조치로 2014년에 소득세율이 인상됨
 - 국세와는 별도로 소비세액의 25%가 지방소비세로 부과됨
 - 2014년 4월 1일부터 5%에서 8%(국세소비세 6.3%, 지방소비세 1.7%)로 3%p 인상됨
 - 2015년 10월 1일부터 10%(국세소비세 7.8%, 지방소비세 2.2%)로 2%p 추가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보류된 상태임

〈표 II-45〉 일본의 소비세율 체계

(단위: %)

구분	2014. 3. 31 이전	2014. 4. 1 이후
소비세율	5	8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일반법인의 경우 단일세율체계, 중소기업의 경우 2단계 누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11년 11월에 수정세법개혁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인세율이 인하됨
 - 2012년 일반법인의 세율은 30.0%에서 25.5%로 인하됨
 -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과세표준 800만엔 초과 부분의 경우 일반법인과 동일하나, 800만엔 이하 부분의 경우 법정세율은 22%에서 19%로 인하됨
 - 중소기업이란, '해당 법인의 자본규모가 1억엔 이하이고 그 소유주중 자본 규모 5억엔 초과인 법인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함
- 과세표준 800만엔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이며 한시적으로 특례세율이 적용됨
 -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는 18%,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는 15%가 적용됨

〈표 II-46〉 일본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1999.4.1 ~ 2012.3.31	2012.4.1 ~
일반법인	30.0	25.5
중소법인	800만엔 초과	25.5
	800만엔 이하	19.0 (15.0)

19 대한민국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세구간이 증가함
 - 2012년 4단계에서 5단계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조사기간 중 하위 과세표준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하되고 상위 과세표준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인상됨
 - 2012년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38%의 세율을 신설함
 - 2014년에는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조정됨
 - 조사기간 중 소득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지방세는 세율이 결정세액의 10%로 2014년 현재까지 변화 없음

〈표 II-47〉 대한민국의 소득세율

(단위: %)

과세표준구간	세율			
	2009	2010~2011	2012~2013	2014
0~1,200만원	6	6	6	6
1,201만원~4,600만원	16	15	15	15
4,601만원~8,800만원	25	24	24	24
8,801만원~1.5억원	35	35	35	35
1.5억원 초과~3억원			38	
3억원 초과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부가가치세율은 10%임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2단계 누진세 체계에서 2013년부터 3단계 누진세 체계가 적용됨
-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은 2010년 낮은 세율을 한 차례 인하 후 2012년 중간구간이 신설됨
 - 2010년 낮은 세율이 11%에서 10%로 1%p 인하됨
 - 2012년 중간구간이 신설되어 20%의 세율이 적용됨
 - 법인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지방세는 그 세율이 결정세액의 10%로 변경 없음

〈표 II-48〉 대한민국의 법인세율

(단위: %)

과세표준구간	세율		
	2009	2010~2011	2012~2014
2억원 이하	11	10	10
2억원~200억원	22	22	20
200억원 초과			22

20 룩셈부르크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본세 및 부가세 합계)는 누진세 체계의 단계가 증가함
 - 2010년 20단계에서 2011년 21단계, 2013년 23단계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조사기간 중 소득세율이 인상됨
 - 소득세 본세 외에 소득세액에 일정비율 만큼의 부가세, 즉 ‘고용촉진기금 (employment fund)’이 추가로 부과됨

-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소득세 본세 기준 8~38%의 16단계 누진체제에서 각 구간별로 부가세 2.5%가 부과됨
-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소득세 본세 기준 8~39%의 17단계 누진체제에서 각 구간별로 부가세 4%가 부과됨
 - 과세표준이 15만유로를 초과하면, 6%의 부가세가 부과됨
- 2013년부터는 소득세 본세 기준 8~40%의 18단계 누진체제에서 각 구간별로 부가세 7%가 부과됨
 - 과세표준이 15만유로를 초과하면, 9%의 부가세가 부과됨

〈표 II-49〉 룩셈부르크의 소득세율(부가세 포함)

(단위: 유로, %)

과세표준구간	세율		
	2009~2010	2011~2012	2013~2014
0~11,265	0	0	0
11,266~13,173	8.20	8.32	8.56
13,174~15,081	10.25	10.40	10.70
15,082~16,989	12.30	12.48	12.84
16,990~18,897	14.35	14.56	14.98
18,898~20,805	16.40	16.64	17.12
20,806~22,713	18.45	18.72	19.26
22,714~24,621	20.50	20.80	21.40
24,622~26,529	22.55	22.88	23.54
26,530~28,437	24.60	24.96	25.68
28,438~30,345	26.65	27.04	27.82
30,346~32,253	28.70	29.12	29.96
32,254~34,161	30.75	31.20	32.10
34,162~36,069	32.80	33.28	34.24
36,070~37,977	34.85	35.36	36.38
37,978~39,885	36.90	37.44	38.52
39,886~41,793	38.95	39.52	40.66
41,794~100,000		40.56	41.73
100,001~150,000			42.80
150,001~		41.34	43.60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3단계 경감세율의 4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은 특정 와인, 장작용 목재, 투자관리·운용 서비스, 광고서비스 등의 공급에 적용됨
 - 경감세율 중 중간 세율은 가스·전기, 예술작품의 수입 및 국내 공급 등에 적용됨
 - 경감세율 중 낮은 세율은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서비스, 알코올음료를 제외한 음식료, 유아용 의류, 생수, 의약품, 여객 운송, 호텔숙박용역, 문화·교육·스포츠 서비스, 공급 등에 적용됨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의 변동은 없음
 - 표준세율은 15%, 경감세율은 각각 12%, 6%, 3%임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2단계 누진세 체계로 세율의 변동은 없음
- 조사기간 중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surtax) 형태인 ‘고용촉진기금(employment fund)’ 부담금이 인상됨
 - ‘고용촉진기금(employment fund)’은 법인세액의 일정률로 계산되며, 2009~2010년에는 4%, 2011~2012년에는 5%, 2013년 이후는 7%로 인상됨

〈표 II-50〉 룩셈부르크의 법인세율

(단위: 유로, %)

세목		2009~2010	2011~2012	2013~2014
법인 세율	0~15,000		20	
	15,001~		21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율		4	5	7

21 멕시코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2014년 8단계에서 11단계의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8단계 누진구조였으나, 2014년에 392,842페소 이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 개의 구간이 신설됨
- 조사기간 중 상위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이 인상됨
 - 소득세율 최상위 구간의 세율이 2009년 28%에서 2010년 30%로 2%p 인상됨
 - 2014년에 과세표준구간신설과 더불어 최상위 구간에 35%의 세율이 적용됨

〈표 11-51〉 멕시코의 소득세율

(단위: MXN(페소), %)

과세표준구간	세율		
	2009	2010~2013	2014
0~5,953	1.92	1.92	1.92
5,954~50,525	6.40	6.40	6.40
50,526~88,793	10.88	10.88	10.88
88,794~108,210	16.00	16.00	16.00
108,211~128,580	17.92	17.92	17.92
128,581~249,243	19.94	21.36	21.36
249,244~392,842	21.95	23.52	23.52
392,842~750,000	28.00	30.00	30.00
750,001~1,000,000			32.00
1,000,001~3,000,000			34.00
3,000,001~			35.00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2단계 체계에서 단일체계로 변경됨
 - 2013년까지 지역에 따라 표준세율과 경감세율 2단계 체계였으나 2014년 경감세율이 폐지되고 단일의 표준세율이 적용됨
 - 과거 경감세율은 바이아 캘리포니아 주(the state of Baja California) 등 ‘변경지역(frontier zone)’ 내에서의 무형자산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의 과세공급에 적용되었음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이 한 차례 인상됨
 - 2010년 표준세율이 15%에서 16%, 경감세율이 10%에서 11%로 각각 1%p 인상됨

〈표 II-52〉 멕시코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	2010~2013	2014
표준세율	15	16	
경감세율	10	11	n/a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이 한 차례 인상됨
 - 2010년 28%에서 30%로 2%p 인상됨

〈표 II-53〉 멕시코의 법인세율

(단위: %)

세목	2009	2010~2014
법인세율	28	30

22 네덜란드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4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소득세 이외에 하위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국가보험료가 부과됨
 - 하위 첫 번째 구간 및 두 번째 구간에서는 국가보험료(사회보장기여금)를 2014년 현재 31.15%를 추가 부담함
 - 65세 이상인 노인은 국가보험료를 첫 번째 및 두 번째 계층구간까지 2014년 현재 13.25%를 부담함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변경됨

〈표 II-54〉 네덜란드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2009		2010		2011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17,878	2.35	0~18,218	2.30	0~18,628	1.85
17,879~32,127	10.85	18,219~32,738	10.80	18,629~33,436	10.80
32,128~54,776	42.00	32,739~54,367	42.00	33,437~55,694	42.00
54,777~	52.00	54,368~	52.00	55,695~	52.00
2012		2013		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18,945	1.95	0~19,645	5.85	0~19,645	5.10
18,946~34,055	10.80	19,646~33,363	10.85	19,646~33,363	10.85
34,056~56,491	42.00	33,364~55,991	42.00	33,364~56,531	42.00
56,492~	52.00	55,992~	52.00	56,532~	52.00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2단계 경감세율의 총 3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은 농산품, 의약품, 물, 도서, 가스, 유류, 목재 등 재화와 도서의 대여, 특정 품목의 수선, 숙박시설의 제공 등과 같은 용역의 공급에 적용됨
 - 경감세율 중 낮은 세율은 농업, 어업, 목재업, 원예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그 생산품에 적용됨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이 한 차례 인상됨
 - 표준세율이 2012년 19%에서 21%로 2%p 인상됨

〈표 II-55〉 네덜란드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부가가치세율 종류		2001~2012.9.30	2012.10.1~2014
표준세율		19.0	21.0
경감세율	높은 세율	6.0	
	낮은 세율	5.1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2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법인세의 높은 세율이 한 차례 인하됨
 - 2011년 높은 세율이 25.5%에서 25%로 0.5%p 인하됨

〈표 II-56〉 네덜란드의 법인세율

(단위: %)

법인세 과세표준구간	2009~2010	2011~2014
20만유로 이하	20.0	
20만유로 초과	25.5	25.0

23 뉴질랜드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7단계에서 2010년에 4단계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2009년까지 7단계 누진세 체계가 적용되었으나 2010년 중간구간이 조정되어 4단계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조사기간 중 소득세율이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됨
 - 최상위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의 경우 2010년 1%p, 2011년과 2012년 2.5%씩 인하되어 2009년 39%에서 2014년 현재 33%로 6%p 인하됨
 - 최하위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의 경우 2010년 1.25%p, 2011년과 2012년 1%p씩 인하되어 2009년 13.75%에서 2014년 현재 10.5%로 3.25%p 인하됨

〈표 II-57〉 뉴질랜드의 소득세율

(단위: 뉴질랜드달러, %)

2009		2010		2011	2012~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세율	세율
0~9,500	13.75	0~14,000	12.50	11.50	10.50
9,501~14,000	16.75	14,001~48,000	21.00	19.25	17.50
14,001~38,000	21.00	48,001~70,000	33.00	31.50	30.00
38,001~40,000	27.00	70,001~	38.00	35.50	33.00
40,001~60,000	33.00				
60,001~70,000	36.00				
70,001~	39.00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소비세율이 한 차례 인상됨
 - 소비세율이 2010년 12.5%에서 15%로 2.5%p 인상됨

〈표 II-58〉 뉴질랜드의 소비세율

(단위: %)

세목	~ 2010.9.30	2010.10.1.~
GST 세율	12.5	15.0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이 한 차례 인하됨
 - 2012년 법인세율이 30%에서 28%로 2%p 인하됨

〈표 II-59〉 뉴질랜드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1	2012~
거주자 법인, 집합투자펀드	30	28

24 노르웨이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 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소득세 본세율이 한 차례 인하됨
 - 2014년 28%에서 27%로 1%p 인하됨

〈표 II-60〉 노르웨이의 소득세율

(단위: %)

구분	2009~2013	2014
세율	28	27

- 일정수준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9% 또는 12%의 부가세 (surtax)가 부과됨

〈표 II-61〉 노르웨이의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

(단위: 크로네)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9%	441,000~	456,400~	471,200~	490,000~	509,600~	527,400~
12%	716,600~	741,700~	765,800~	796,400~	828,300~	857,300~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2단계 경감세율의 총 3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은 식자재의 공급에, 낮은 세율은 여객운송, 공영방송, 영화, 숙박서비스의 공급 등에 적용됨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의 변동은 없음
 - 표준세율은 25%, 경감세율은 각각 15%, 8%임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이 한 차례 인하됨
 - 2014년에 28%에서 27%로 1%p 인하됨

- 다만, 스발바르(Svalbard) 지역 내에 거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6%의 우대세율이 적용됨

〈표 II-62〉 노르웨이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3	2014
세율	28	27

25 폴란드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2단계의 누진세 체계로 세율의 변동은 없음

〈표 II-63〉 폴란드의 소득세율

(단위: PLN, %)

2009~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0~85,528	18
85,529~	32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2단계 경감세율의 총 3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은 특정 농산물, 살충제 및 비료, 특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호텔 서비스, 여객운송, 문화서비스 공급 등에 적용됨
 - 경감세율 중 낮은 세율은 특정 가공·미가공 식료품, 서적 및 정기간행물에 적용됨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이 한 차례 인상됨

- 2011년 표준세율이 22%에서 23%로 1%p,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이 7%에서 8%로 낮은 세율이 3%에서 5%로 각각 1%p, 2%p 인상됨

〈표 II-64〉 폴란드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부가가치세율 종류		2009~2010	2011~2014
표준세율		22	23
경감세율	높은 세율	7	8
	낮은 세율	3	5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법인세율은 19%임
 - 다만,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과세당국이 경정한 과세표준 간의 차액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과세됨

26 포르투갈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단계가 두 차례 변경됨

- 2010년 7단계 누진세 체계에서 8단계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2013년 8단계 누진세 체계에서 5단계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조사기간 중 소득세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됨

- 최상위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의 경우 2010년 3.88%p, 2011년 0.62%p, 2013년

1.5%p 인상되어 2009년 42%에서 2014년 현재 48%로 총 6%p 인상됨

- 최하위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의 경우 2010년 0.58%p, 2011년 0.42%p, 2013년 3%p 인상되어 2009년 10.5%에서 2014년 현재 14.5%로 총 4%p 인상됨

〈표 II-65〉 포르투갈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2009		2010		2011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4,755	10.50	0~4,793	11.08	0~4,898	11.50
4,756~7,192	13.00	4,794~7,250	13.58	4,899~7,410	14.00
7,193~17,836	23.50	7,251~17,979	24.08	7,411~18,375	24.50
17,837~41,021	34.00	17,918~41,349	34.88	18,376~42,259	35.50
41,022~59,450	36.50	41,350~59,926	37.38	42,260~61,244	38.00
59,451~64,110	40.00	59,927~64,623	40.88	61,245~66,045	41.50
64,111~	42.00	64,624~150,000	42.88	66,046~153,300	43.50
		150,001 ~	45.88	153,301~	46.50
2012		2013		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4,898	11.50	0~7,000	14.50	0~7,000	14.50
4,899~7,410	14.00	7,001~20,000	28.50	7,001~20,000	28.50
7,411~18,375	24.50	20,001~40,000	37.00	20,001~40,000	37.00
18,376~42,259	35.50	40,001~80,000	45.00	40,001~80,000	45.00
42,260~61,244	38.00	80,001~	48.00	80,001~	48.00
61,245~66,045	41.50				
66,046~153,300	43.50				
153,301~	46.50				

자료 :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2단계 경감세율의 총 3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은 캔으로 된 고기, 식용 내장, 커피, 잼, 젤리, 스낵, 레스토랑의 음식 및 음료, 기름 및 마가린 등에 적용됨

- 경감세율 중 낮은 세율은 낙농제품, 소프트드링크, 음료, 손질된 감자 등에 적용됨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이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두 차례 인상됨
 - 표준세율은 2010년 20%에서 21%로 1%p, 2011년 21%에서 23%로 2%p 인상됨
 -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은 2010년 12%에서 13%로, 낮은 세율은 5%에서 6%로 각각 1%p 인상됨
 - Madeira제도는 2014년 현재 표준세율 22%와 경감세율 12% 및 5%의 세율을 적용하며, Azores제도는 2014년 현재 표준세율 16%와 경감세율 9% 및 3%의 세율이 적용됨

〈표 II-66〉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2014
표준세율	20	21	23
경감세율	높은 세율	13	13
	낮은 세율	5	6

자료 :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은 한 차례 인하됨
 - 2014년에 25%에서 23%로 2%p 인하됨
 - 단 Azores제도는 17.5%의 경감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표 II-67〉 포르투갈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3	2014
법인세율	25	23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예정임

○ 2017년까지 법인세율을 17%로 인하할 예정임

〈표 II-68〉 2014년 이후 포르투갈의 법인세율(예정)

(단위: %)

구분	2015	2017
법인세율	21	17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27 슬로바키아공화국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단일세율체계에서 2단계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2012년까지 19%의 단일세율에서 2013년부터 25%의 세율구간을 신설하여 2단계의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변경됨

〈표 II-69〉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소득세율

(단위: %)

2009~2012		2013		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전구간	19	0~34,401	19	0~35,022	19
		34,402~	25	35,023~	25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경감세율의 2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경감세율은 제약, 도서 및 종이 인쇄물에 대해 적용됨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이 한 차례 인상됨

○ 2011년 표준세율이 19%에서 20%로 1%p 인상됨

- 이러한 인상은 최초에 1년간의 한시적인 인상이었으나 이후 항구적으로 적용됨

〈표 II-70〉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2010	2011~2014
표준세율	19	20
경감세율	10	10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다. 법인세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이 두 차례 인상 후 한 차례 인하됨

○ 2011년 19%에서 20%로 1%p, 2013년 20%에서 23%로 3%p 인상됨

○ 2014년 23%에서 22%로 1%p 인하됨

〈표 II-71〉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0	2011~2012	2013	2014
세율	19	20	23	22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28 슬로베니아

가. 개인소득세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누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단계가 변경됨

- 2013년에 최상위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면서 3단계에서 4단계의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 2014년까지 유지하고 2015년부터는 다시 최고세율을 41%로 인하할 예정임
- 조사기간 중 2014년을 제외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변경됨

〈표 II-72〉 슬로베니아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2009		2010		2011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7,410	16	0~7,529	16	0~7,634	16
7,411~14,821	27	7,530~15,058	27	7,635~15,269	27
14,822~	41	15,059~	41	15,270~	41
2012		2013		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7,841	16	0~8,021	16	0~8,021	16
7,842~15,681	27	8,022~18,960	27	8,022~18,960	27
15,682~	41	18,961~70,907	41	18,961~70,907	41
		70,908~	50	70,908~	50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경감세율의 2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경감세율은 음식, 수도공급, 제약, 책과 기타 종이인쇄물, 허가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주택, 기타 지정된 서비스 등에 대해 적용됨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이 한 차례 인상됨
 - 2013년 표준세율이 20%에서 22%로 2%p, 경감세율이 8.5%에서 9.5%로 1%p 인상됨

〈표 II-73〉 슬로베니아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2012	2013~2014
표준세율	20.0	22.0
경감세율	8.5	9.5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이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씩 인하되어 2009년 21%에서 2014년 현재 17%로 4%p 인하됨
 -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업종은 0%의 세율을 적용받음
 - 펀드투자법에 의한 투자펀드이며 이익의 90% 이상을 11월 30일까지 분배하는 펀드
 - 연금법에 의한 연금펀드
 - 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관리하는 보험회사

〈표 II-74〉 슬로베니아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2014
세율	21	20	19	18	17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29 스웨덴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국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성됨

- 국가소득세율은 2014년 현재 420,800스웨덴크로나까지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은 국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음
- 조사기간 중 국가소득세는 3단계의 누진세 체계로 세율의 변동은 없음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변경됨
- 지방소득세율은 지방마다 상이함
 - 수도 스톡홀름은 30.39%의 지방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2014년 스톡홀름 주민은 과세표준이 591,600스웨덴크로나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소득세율 25%에 지방소득세율 30.39%를 합하여 총 55.39%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됨

〈표 II-75〉 스웨덴의 소득세율

(단위: 스웨덴크로나, %)

2009		2010		2011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367,600	0	0~372,100	0	0~383,000	0
367,601~526,200	20	372,101~532,700	20	383,001~548,300	20
526,201~	25	532,701~	25	548,301~	25
2012		2013		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401,100	0	0~413,200	0	0~420,800	0
401,101~574,300	20	413,201~591,600	20	420,801~602,600	20
574,301~	25	591,601~	25	602,601~	25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2단계 경감세율의 총 3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은 호텔, 레스토랑, 대규모 음식공급서비스, 예술작품 등에 적용됨
 - 경감세율 중 낮은 세율은 대중교통, 도서, 신문, 인증 수수료, 일부 문화공연 등에 적용됨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의 변동은 없음

〈표 II-76〉 스웨덴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2014
표준세율		25
경감세율	높은 세율	12
	낮은 세율	6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이 한 차례 인하됨
 - 법인세율은 2013년 26.3%에서 22%로 3.3%p 인하됨
 - 다만, 뮤추얼 펀드(värdepappersfonder)에 대해서는 30%의 특별법인세율이 적용됨

〈표 II-77〉 스웨덴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2	2013~2014
세율	26.3	22.0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30 스페인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이나 단계가 세 차례 변경됨
 - 2011년 4단계에서 6단계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2012년 6단계에서 7단계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2014년 7단계에서 6단계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조사기간 중 소득세율은 매년 인상과 인하가 혼재되어 있음
 - 최상위 구간의 경우 2011년 1.63%p 인하, 2012년 5%p 인상, 2014년 7%p 인하되어 2009년 48.63%에서 2014년 45%로 3.63%p 인하됨
 - 최하위 구간의 경우 2011년 3.66%p 인하, 2012년 0.75%p 인상, 2014년 0.75% 인하되어 2009년 27.66%에서 2014년 24%로 3.66%p 인하됨

〈표 II-78〉 스페인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2009		2010		2011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17,707	27.66	0~17,707	27.66	0~17,707	24.00
17,708~33,007	32.27	17,708~33,007	32.27	17,708~33,007	28.00
33,008~53,407	42.64	33,008~53,407	42.64	33,008~53,407	37.00
53,408~	48.63	53,408~	48.63	53,408~120,000	43.00
				120,001~175,000	45.00
				175,001~	47.00
2012		2013		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17,707	24.75	0~17,707	24.75	0~17,707	24.00
17,708~33,007	30.00	17,708~33,007	30.00	17,708~33,007	28.00
33,008~53,407	40.00	33,008~53,407	40.00	33,008~53,407	37.00
53,408~120,000	47.00	53,408~120,000	47.00	53,408~120,000	43.00
120,001~175,000	49.00	120,001~175,000	49.00	120,001~175,000	44.00
175,001~300,000	51.00	175,001~300,000	51.00	175,001~	45.00
300,001~	52.00	300,001~	52.00		

주: 소득세는 국가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50:50의 비율로 구성되며 위 세율은 국가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세의 합산세율임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 소득세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부가세(surtax)가 부과됨

〈표 II-79〉 스페인의 소득세 부가세율

(단위: 유로, %)

2012~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0~17,707	0.75
17,708~33,007	2.00
33,008~53,407	3.00
53,408~120,000	4.00
120,001~175,000	5.00
175,001~300,000	6.00
300,001~	7.00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2단계 체계에서 3단계 체계로 변경됨
 - 2010년 경감세율 중 낮은 세율을 신설하여 총 3단계 체계로 변경됨
 -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은 호텔 및 숙박서비스, 여객운송, 문화서비스, 상업 전시회, 농업서비스, 음식, 화훼, 동물의약품, 의료용역, 예술 공연 등에 적용됨
 - 경감세율 중 낮은 세율은 기초 식료품(빵, 우유, 우유 가공식품, 달걀), 의약품(사람대상), 도서, 신문, 학교에서 사용하는 인쇄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적용됨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은 두 차례 인상됨
 - 2010년 표준세율이 16%에서 18%로 2%p,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이 7%에서 8%로 1%p 인상됨
 - 2012년 표준세율이 18%에서 21%로 3%p,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이 8%에서 10%로 2%p 인상됨

〈표 II-80〉 스페인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	2010~2011	2012~2014
표준세율		16	18	21
경감세율	높은 세율	7	8	10
	낮은 세율	n/a		4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법인세율은 30%임
 -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25%임
 - 뮤추얼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세무신고 요건이 미비한 비영리법인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음
 - 세무신고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은 10%의 세율을 적용받음
 - 모집에 의한 투자기구는 1%의 세율을 적용받음
 - 연금관련 기관이나 펀드는 0%의 세율을 적용받음

〈표 II-81〉 스페인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4
기본세율	30
중소기업세율	25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31 스위스

가. 개인소득세

- 소득세는 연방정부소득세와 주정부소득세(Cantonal Tax)로 구성되며 주정부소득세율은 주마다 다름
- 조사기간 중 연방정부소득세는 11단계의 누진세 체계로 세율의 변동은 없음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물가에 연동하여 2011년과 2012년에 변경됨

〈표 II-82〉 스위스의 연방정부소득세율

(단위: 스위스프랑, %)

과세표준구간	2009~2010	과세표준구간	2011	과세표준구간	2012~2014
0~13,600	0.00	0~14,400	0.00	0~14,500	0.00
13,601~29,800	0.77	14,401~31,500	0.77	14,501~31,600	0.77
29,801~39,000	0.88	31,501~41,200	0.88	31,601~41,400	0.88
39,001~52,000	2.64	41,201~55,000	2.64	41,401~55,200	2.64
52,001~68,300	2.97	55,001~72,200	2.97	55,201~72,500	2.97
68,301~73,600	5.94	72,201~77,700	5.94	72,501~78,100	5.94
73,601~97,700	6.60	77,701~103,000	6.60	78,101~103,600	6.60
97,701~127,100	8.80	103,001~133,900	8.80	103,601~134,600	8.80
127,101~166,200	11.00	133,901~175,000	11.00	134,601~176,000	11.00
166,201~712,400	13.20	175,001~751,200	13.20	176,001~755,200	13.20
712,401~	11.50	751,201~	11.50	755,201~	11.50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2단계 경감세율의 총 3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은 숙박업(조식 제공서비스 포함) 등에 적용됨
 - 경감세율 중 낮은 세율은 식료품 및 술(레스토랑 등에서 구매하는 것은 제외), 신문, 도서, 라디오서비스, TV서비스, 의약품 등에 적용됨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은 한 차례 인상됨
- 2011년 표준세율이 7.6%에서 8.0%로 0.4%p 인상됨

〈표 II-83〉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2010	2011~2014
표준세율		7.6	8.0
경감세율	높은 세율	3.8	
	낮은 세율	2.5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연방정부세와 칸톤(Canton)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방정부세율의 변동은 없음
- 각 칸톤들은 각자 세율을 정하여 다르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법인세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칸톤의 세법을 적용해야 함

〈표 II-84〉 스위스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4	비고
연방세율	8.5	
조정된 연방세율	6.7	가상의 칸톤을 기준으로 한 세율임
칸톤세 등	14.47	
총법인세율	21.71	조정된 연방세율과 칸톤세의 합

주: 조정된 연방세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방세율의 일정부분을 조정하여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임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32 터키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4단계의 누진세 체계로 세율의 변동은 없음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변경됨

〈표 II-85〉 터키의 소득세율

(단위: 터키리라, %)

2009		2010		2011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8,700	15	0~8,800	15	0~9,400	15
8,701~22,000	20	8,801~22,000	20	9,401~23,000	20
22,001~50,000	27	22,001~76,200	27	23,001~80,000	27
50,001~	35	76,201~	35	80,001~	35
2012		2013		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10,000	15	0~10,700	15	0~11,000	15
10,001~25,000	20	10,801~26,000	20	11,001~27,000	20
25,001~88,000	27	26,001~94,000	27	27,001~97,000	27
88,001~	35	94,001~	35	97,001~	35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2단계 경감세율의 총 3단계 체계로 세율의 변동은 없음
 - 경감세율 중 높은 세율은 도서 인쇄물, 교육용역 등에 적용됨
 - 경감세율 중 낮은 세율은 농산품, 식품 등에 적용됨

〈표 II-86〉 터키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2014
표준세율	18
경감세율	8
특별세율	1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표 II-87〉 터키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4
세율	20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33 영국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이나 한 차례 변경됨
- 2010년 최상위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여 2단계에서 3단계의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조사기간 중 소득세율은 인상과 인하가 모두 나타남
- 2010년에 15만파운드 초과에 대하여 50% 세율을 신설함
 - 2013년에 최상위 구간의 세율이 50%에서 45%로 5%p 인하됨

- 영국은 세율 인상보다는 세율 구간의 범위 인상을 통하여 소득세를 인상하지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범위가 결정됨
- 2011년 하위과세표준구간을 하향 조정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증가시킴

〈표 II-88〉 영국의 소득세율

(단위: 파운드, %)

2009		2010		2011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37,400	20	0~37,400	20	0~35,000	20
37,401~	40	37,401~150,000	40	35,001~150,000	40
		150,001~	50	150,001~	50
2012		2013		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34,370	20	0~32,010	20	0~31,865	20
34,371~150,000	40	32,011~150,000	40	31,866~150,000	40
150,001~	50	150,001~	45	150,001~	45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경감세율의 2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경감세율은 주택 개조 및 수리, 여성 위생용품, 국내 전기 공급,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에 적용됨
-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은 한 차례 인상됨
 - 2011년 표준세율이 17.5%에서 20%로 2.5%p 인상됨

〈표 II-89〉 영국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9~2010	2011~2014
표준세율	17.5	20
경감세율	5	5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일반법인과 중소기업별로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은 수차례 인하됨
 - 기본세율이 2011년과 2012년 각각 2%p, 2013년 1%p, 2014년 2%p 인하되어 2009년 28%에서 2014년 현재 21%로 7%p 인하됨
 - 중소기업세율이 2011년 21%에서 20%로 1%p 인하됨

〈표 II-90〉 영국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0	2011	2012	2013	2014
기본세율	28	26	24	23	21
중소기업세율	21	20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 2015년에는 20%로 기본세율 인하가 예정됨

34 미국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이나 단계가 한 차례 변경됨

- 2013년 6단계에서 7단계 누진세 체계로 변경됨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변경됨
- 조사기간 중 소득세율의 변동은 없음
 - 2013년 최상위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면서 39.6%의 세율이 적용됨
 - 소득세에서는 세율은 동일하지만 미혼과 기혼, 세대주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의 차이를 조금씩 두고 있음

〈표 II-91〉 미국의 소득세율

(단위: 달러, %)

2009		2010		2011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8,350	10	0~8,375	10	0~8,500	10
8,351~33,950	15	8,376~34,000	15	8,501~34,500	15
33,951~82,250	25	34,001~82,400	25	34,501~83,600	25
82,251~171,550	28	82,401~171,850	28	83,601~174,400	28
171,551~372,950	33	171,851~373,650	33	174,401~379,150	33
372,951~	35	373,651~	35	379,151~	35
2012		2013		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8,700	10	0~8,925	10	0~8,925	10
8,701~35,350	15	8,926~36,250	15	8,926~36,250	15
35,351~85,650	25	36,251~87,850	25	36,251~87,850	25
85,651~178,650	28	87,851~183,250	28	87,851~183,250	28
178,651~388,350	33	183,251~398,350	33	183,251~398,350	33
388,351~	35	398,351~400,000	35	398,351~400,000	35
		400,001~	39.6	400,001~	39.6

주: 미혼인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세구간을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고 각 주마다 다양한 세율의 판매세(sales tax)를 운용하고 있음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8단계 구조로 세율의 변동 없음

- 335천달러 초과 시 세율이 전단계 세율인 39%보다 낮은 35%가 적용되며, 18,333,333달러 초과 시에도 세율이 전단계 세율인 38%보다 낮은 35%가 적용되어 완전한 누진세 체계는 아님

〈표 11-92〉 미국의 법인세율

(단위: 달러, %)

2009		2010		2011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50,000	15	0~50,000	15	0~50,000	15
50,001~75,000	25	50,001~75,000	25	50,001~75,000	25
75,001~100,000	34	75,001~100,000	34	75,001~100,000	34
100,001~335,000	39	100,001~335,000	39	100,001~335,000	39
335,001~10,000,000	34	335,001~10,000,000	34	335,001~10,000,000	34
10,000,001~15,000,000	35	10,000,001~15,000,000	35	10,000,001~15,000,000	35
15,000,001~18,333,333	38	15,000,001~18,333,333	38	15,000,001~18,333,333	38
18,333,334~	35	18,333,334~	35	18,333,334~	35
2012		2013		2014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50,000	15	0~50,000	15	0~50,000	15
50,001~75,000	25	50,001~75,000	25	50,001~75,000	25
75,001~100,000	34	75,001~100,000	34	75,001~100,000	34
100,001~335,000	39	100,001~335,000	39	100,001~335,000	39
335,001~10,000,000	34	335,001~10,000,000	34	335,001~10,000,000	34
10,000,001~15,000,000	35	10,000,001~15,000,000	35	10,000,001~15,000,000	35
15,000,001~18,333,333	38	15,000,001~18,333,333	38	15,000,001~18,333,333	38
18,333,334~	35	18,333,334~	35	18,333,334~	35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캐나다

1 미국

[조세동향 14-10호]

가. 미국 - 해외자산자진신고제(OVDP) 등에 대한 지침 개정⁸⁾

- 미국 정부는 2014년 6월에 해외자산자진신고제(OVDP), ‘간소화된 해외자산자진 신고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10월 14일에 개정된 지침을 확정 공포함
 - 미국 정부는 해외자산자진신고제(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를 2009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이번 지침 개정은 2012년의 지침을 개정 한 것임
- OVDP는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에 따르는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신고와 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범죄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거나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있는 납세자를 위해서 고안된 것임
 -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미준수 시 민사적으로는 단순 실수와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하며 형사적으로는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음
 - 고의성 있는 미신고는 매년 잔액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미신고 시 예금잔액의 전부를 넘는 150%(=50%×3년)가 벌금으로 부과 받을 수도 있음

8)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4-10-16_us_1.html&WT.z_nav=Pagination&colid=4913

〈표 1-1〉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미준수 시 민사상 벌금

민사상 벌금 부과유형	벌금액
과실, 주의태만에 의한 미신고	최고 500달러
상습적인 주의태만의 의한 미신고	최고 50,000달러
2004.10.23. 이전의 고의성 있는 미신고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최고 \$100,000 까지만)과 \$25,000 중 큰 금액
2004.10.23. 이후의 고의성 있는 미신고	\$100,000과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의 50% 중 큰 금액

- OVDP는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을 고의적으로 미준수 했던 사람들에게 해외자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범죄자로서 형사상 소추를 면제 해주는 제도임
 - 벌금은 해외금융자산의 잔액이 가장 많은 과세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당시의 잔액은 벌금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님
- 그러나 OVDP는 납세자가 자신이 고의적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은 해외금융자산액의 27.5%로 납부해야 함
 - 해외금융자산액의 27.5%로 납부하는 벌금의 수준은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미준수 시 사후 적발로 인한 벌금보다는 경감된 것임
- 그리고 OVDP의 문제점일 수 있는 고의성이 없는 미신고 납세자들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간소화된 해외자산자진신고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마련해 운영해 왔음
 -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이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하였음
- 금번 개정은 해외자산자진신고제(OVDP)와 함께 행정절차인 ‘간소화된 해외자산자진신고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개정하여 해외자산 및 금융계좌에 대한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개정전보다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 해외자산자진신고제(OVDP)의 개정사항은 기존 제도보다 납세자에게 벌금 및 정보 제공에 있어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 형사상 소추 면제의 기능은 유지하되 정보 제공 수준 향상 및 벌금 인상을 통해 고의적인 해외자산 미신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높인 것임
 - ‘간소화된 해외자산자진신고절차’의 적용 범위 확대로 미신고에 고의성이 없는 선량한 납세자들은 ‘간소화된 해외자산자진신고절차’를 통해 벌금을 기존보다 감면 받고, 그렇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기타 절차가 강화하여 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것임

- 해외자산자진신고제(OVDP)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납세자가 해외자산자진신고제(OVDP)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으려면 종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하게 함
 - ‘간소화된 해외자산자진신고절차’의 적용대상에 고의성이 없는 납세자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필요 없게 된 고의성이 없는 납세자들을 위한 벌금 경감조항 삭제
 - 해당 조항은 OVDP 적용 대상 중 고의성이 없는 납세자 중 제도에서 정해 놓은 자격을 충족 시 벌금을 해외자산잔액의 5%로 경감시켜주는 제도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음
 - 납세자들에게 모든 해외계좌 현황과 벌과금 납부를 OVDP 적용 시에 요구
 - 납세자들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서면 대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가능
 - 다음의 경우, 역외은닉에 대한 벌금을 미신고 해외자산의 과세연도 중 최고 잔액의 27.5%에서 50%로 인상
 - 납세자의 OVDP 사전신고 요청이 제출되기 전에 납세자가 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 또는 납세자의 해외재산 분산배치를 주도하거나 도움을 준 기관이 IRS 또는 법원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한편 ‘간소화된 해외자산자진신고절차’는 신고자의 신고를 더욱 간편하게 하고

벌금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OVDP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각각의 제도가 실효성이 있게 개정됨

- 개정된 ‘간소화된 해외자산자진신고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는 벌과금을 대폭 완화시켜 주거나 면제하는 혜택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제도보다 자진신고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2년에 발표된 기존의 ‘간소화된 신고절차’는 해외계좌 등을 신고하지 않은 비거주자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이용할 수 있었음
 - 2009년 이후 해외에 거주해야 함
 -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야 함
 - 과거 3년간 매년 세액이 1,500달러 미만이어야 함
 - 위와 같은 조건 등을 충족해야만 ‘간소화된 해외자산자진신고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매우 적었음
 - 2014년에 확장 적용되는 ‘간소화된 신고절차’는 미국 밖에 살고 있는 더 많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납세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임
- ‘간소화된 해외자산자진신고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의 적용 자격 완화 및 제도 간소화에 관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⁹⁾
 - 납세자의 미납세금이 1,50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 삭제
 - 미신고에 관련한 ‘위험성’에 대한 질문지 요청 조항 삭제
- ‘간소화된 해외자산자진신고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의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 및 벌금 완화에 관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납세자에게 이미 지나간 신고 대상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못했던 것이 고의가

9) <http://www.irs.gov/uac/Newsroom/IRS-Makes-Changes-to-Offshore-Programs;-Revisions-Ease-Burden-and-Help-More-Taxpayers-Come-into-Compliance>

아닌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요구

-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최근 3년 중 해외 거주 일수가 330일 이상 된 해가 1년 이상이라면 벌금이 면제됨
 -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탈세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과거에 IRS에 세금보고를 했는지, 해외자산을 보고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됨
- 미국 내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탈세의 의도가 없다면 벌금이 미보고자산의 5%로 제한됨
 -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탈세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과거에 세금신고를 했던 기록이 있어야 함

나. 증세 방지법(Tax Increase Prevention Act)

[조세동향 14-12호]

- 2014년 1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H.R. 5771, ’증세 방지법(Tax Increase Prevention Act of 2014; TIPA)’에 최종 서명함
 - 본 법안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증세 방지법(TIPA)’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음
 - 2013년 말로 종료되었던 감면연장법(tax extenders)의 대부분의 규정을 소급하여 2014년 초부터 1년간(2014년 말까지) 추가 연장함
 - 감면연장법(tax extenders)이란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각종 한시적 조세감면 규정의 일몰을 1,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시켜 주는 법을 말함
 - ‘삶의 질 제고법(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ABLE) Act of 2014)’ 하에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관련 비과세 저축계좌 개설을 허용함
 - 또한 감면 규정들의 일몰 연장과 취약계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계좌 개설로

인한 세손수실을 보전하기 위해 세수확대를 위한 방안(revenue raisers)도 동시에 마련함

- 그 밖에 국제조세 관련 규정의 정비 및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의무 강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증세 방지법(TIPA)’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감면연장법(tax extenders) 관련 내용

□ 이번 ‘증세 방지법(TIPA)’에서는 201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대부분의 감면조항들을 1년간 추가로 연장하였으며, 그 주요 규정들은 다음과 같음

- 연구실험세액공제(Research and experimentation tax credit)
 - 적격 연구활동에 따른 비용 지출에 대하여 일정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임
- 신시장세액공제(New markets tax credit)
 - 저소득 지역사회(Low income communities)에 대한 민간부문의 비-부동산 투자를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임
- 능동금융소득에 대한 ‘subpart F 소득’¹⁰⁾ 제외(Exception under subpart F for active financing income)
 - 사업목적 금융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을 ‘subpart F 소득’ 과세에서 제외하는 규정임
- CFC 도관 규정(CFCs Look-through treatment)
 - 과세 가능한 수동소득(passive income)¹¹⁾을 과세이연되는 능동소득(tax-deferred active income)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 추가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10) 미국의 CFC 세제는 외국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해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미국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 따라 미국 주주의 과세소득으로 합산되는 유보소득을 일반적으로 ‘subpart F 소득’이라 말하며, 그 범위는 거래적 접근방식(Transactional Approach)에 의해 결정됨

11) 주로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연금소득, 사용료소득 등을 말함

- 신규로 취득하여 사용 중인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 첫 해에 소정의 추가적인 감가상각을 해주는 제도임
 -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Renewable energy production tax credit)
 - 적격 소규모기업 주식 양도차익 자본이득세 비과세(Exclusion of gain on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 소규모기업에 대한 안정된 장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임
 - 주(state) 또는 지방 일반판매세 공제(Deduction for state and local general sales taxes)
 - 세액공제 대신 비용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 식품 재고 기증에 대한 기부공제액 인상(Enhanced charitable deduction for contributions of food inventory)
 - 개인퇴직계좌의 자선단체로의 직접 인출에 대한 면세(Tax-free distributions from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IRAs) directly to charities)
- 반면 다음과 같은 규정들은 201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종료되었으며, 추가 연장되지 않음
- 건강보험 비용 관련 세액공제(Credit for health insurance costs)
 - 개인의 적격 건강보험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규정임
 - 2·3륜 전기차 세액공제(Credit for two- or three-wheeled plug-in electric vehicles)
 - 에너지효율 증진장치에 대한 세액공제(Credit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
 - 대체연료전지 자동차 세액공제(Alternative motor vehicle credit for qualified fuel cell motor vehicles)¹²⁾

12) 동 규정은 2014년 말로 영구 종료됨

〈표 1-2〉 감면연장법 관련 주요 내용 정리

구분	관련 규정
2014년 말까지 일몰 연장되는 감면 규정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험세액공제(Research and experimentation tax credit) · 신시장세액공제(New markets tax credit) · 능동금융소득에 대한 ‘subpart F 소득’ 제외(Exception under subpart F for active financing income) · CFC 도관 규정(CFCs Look-through treatment) · 추가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Renewable energy production tax credit) · 적격 소규모기업 주식 양도차익 자본이득세 비과세(Exclusion of gain on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 주(state) 또는 지방 일반판매세 공제(Deduction for state and local general sales taxes) · 식품 재고 기증에 대한 기부공제액 인상(Enhanced charitable deduction for contributions of food inventory) · 개인퇴직계좌의 자선단체로의 직접 인출에 대한 면세(Tax-free distributions from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IRAs) directly to charities) · 특정 자산 등에 대한 15년간의 균등 비용보상(15-year straight-line cost recovery for certain qualified property and improvements) · 내재이득에 대한 5년간에 걸친 수익인식(5-year, section 1374 built-in gains tax recognition period) · 특정 부동산 자본이득 기부에 대한 특별규정(Special rules for contributions of capital gain real property made for conservation purposes) · 기부 관련 S법인 주식의 기준가 조정(Basis adjustment to stock of S corporations making charitable contributions of property) 등
2013년 말로 영구 종료되는 감면규정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비용 관련 세액공제(Credit for health insurance costs) · 2·3륜 전기차 세액공제(Credit for two- or three-wheeled plug-in electric vehicles) · 에너지효율 증진장치에 대한 세액공제(Credit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 · 대체연료전지 자동차 세액공제(Alternative motor vehicle credit for qualified fuel cell motor vehicles)

2) ‘삶의 질 제고법(ABLE)’ 규정 개정사항

이번 ‘증세 방지법(TIPA)’에서는 26세 이전에 중증장애(severely disabled)를 입게 된 개인에게 IRC Sec.529¹³⁾에 준하는 비과세 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IRC Sec.529는 등록금 등 교육비 충당을 위한 비과세저축 지원 규정임
- 본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시행함
- 본 저축계좌는 매년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한도까지 비과세로 불입할 수 있음
 - 2014년 기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인당 매년 14,000달러임
 - 불입금은 주정부나 사립대학교에 의하여 운영되는 바, 개방형 투자신탁(뮤추얼 펀드)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투자됨
 - 불입금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은 없음
- 수증자(중증 장애인)를 위해 불입한 저축금과 그 이자 등 투자수익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수증자가 면세 상태에서 인출하여 '적격 교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적격 교육비용'에는 등록금과 이와 관련된 비용, 이외 숙식비용 등이 있음
 - 그러나 적격 교육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인출된 저축은 수증자의 총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또한 1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 다만, 개인의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

- 내륙수로 운송을 위한 상업용 연료 사용에 부과¹⁴⁾되는 '내륙수로운송 신탁기금 적립률(inland waterways trust fund financing rate)'을 1갤런당 20센트에서 29센트로 인상함
 - 2015년 3월 31일 이후 사용되는 연료에 적용함
- 정액으로 부과되던 각종 신고서 미제출이나 정보보고 불성실 등 행정의무 위반에

13) 등록금 등 저축기금(Qualified Tuition Programs, QTP)

14) IRC Sec. 4042(b)(2)(A)

따른 가산세(civil penalties)에 대해 물가 연동시키기로 함

○ 2014년 12월 31일 이후 세무신고분부터 적용함

□ ‘의료서비스 공급 사업자(Medicare providers or suppliers)’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액에 대한 수시부과(continuous levies)¹⁵⁾ 세율을 최대 15%에서 최대 30%까지로 인상시킴

○ 2014년 12월 19일 이후 수입액분부터 적용함

4) 기타

□ 개인지주회사(personal holding company)가 수령한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로부터의 실제 배당에 대해서는 ‘미분배 소득(undistributed income)’에 대해 부과되는 20%의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함

○ 개인지주회사란 주주 1인 및 그 친족에 의해 소유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소득의 상당부분(50% 이상)이 투자자산(investment assets)으로부터 나오는 회사를 의미함

○ 개인지주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유보한 미분배 소득에 대하여는 20%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CFC로부터 받은 배당은 해당 미분배 소득에서 제외함

○ 본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 국세청은 ‘조직을 갖춘 전문직 사업자’에게 고객 및 종업원 관련 세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전문직 사업자 조직(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s (PEOs))’이라는 인증(certification)을 받도록 함

○ ‘조직을 갖춘 전문직 사업자’란 종업원을 고용한 상태로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PEO는 자기책임 하에 종업원에

15) 국세청은 세무상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 수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IRC Sec. 6331(h))

대한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 및 판매세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인증 비용은 매년 1,000달러를 넘지 않도록 규제함
-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보석금 제출(posting a bond), 외부로부터인 재무상태 리뷰, 채무 공시’ 등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2 캐나다 재무부의 가계 세제지원안 발표

[조세동향 14-11호]

가. 개요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2014년 10월 30일에 가계(families)에 대한 새로운 소득세 세제지원(tax credits and benefits)을 발표함
- 이번 재무부 발표에서는 ‘가계의 세부담 절감(Family Tax Cut)’을 목표로 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세 가지 세제지원책을 제안함

나. 제안 내용

- 첫째,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couples)에게 배우자 간 소득분할(income-splitting)을 통해 최대 2,000캐나다달러까지 세액공제해 주는 신규 ‘비환급성 세액공제(non-refundable credit)’제도 도입을 제안함
 - 이 제도는 소득상위층 배우자(higher-income spouse)가 세무목적상으로 소득 하위층 배우자(spouse in a lower income tax bracket)에게 과세소득을 이전시키는 소득분할(income-splitting)을 통해 가능함
 - 소득분할(income-splitting)의 최대한도는 50,000캐나다달러이며, 이로써 발생하는 세액감소 혜택을 최대 2,000캐나다달러로 제한함
 - 이 규정은 2014년부터 시행하도록 함

- 둘째,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폐지하는 대신 ‘보편적 자녀양육 세액공제(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의 강화를 제안함
 - 보편적 자녀양육 세액공제제도에서는 현행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월 100캐나다달러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17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월 160캐나다달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세제혜택 강화를 제안함
 -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18세 이하 자녀 1인당 2014년 기준으로 338캐나다달러가 세액공제됨
 - 이 규정은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함

- 셋째, ‘자녀양육비용 소득공제(Child Care Expense Deduction)’의 최대한도를 1,000캐나다달러씩 증가시키는 것을 제안함
 - 7세 이하의 자녀는 1인당 7,000캐나다달러에서 8,000캐나다달러로 공제 한도를 인상함
 - 7세부터 16세까지의 자녀(16세 이상의 병약한 자녀(infirm dependent children) 포함)는 1인당 4,000캐나다달러에서 5,000캐나다달러로 공제 한도를 인상함
 - 장애인 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대상 자녀는 1인당 10,000캐나다달러에서 11,000캐나다달러로 공제 한도를 인상함
 - 이 규정은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함

- 한편, 지난 2014년 10월 9일 재무부가 발표했었던 ‘자녀 체육교육비용 세액공제(Children's Fitness Tax Credit)’ 확대정책도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책의 하나였음
 - 당시 자녀 체육교육비용 세액공제 최대한도를 자녀 1인당 현행 500캐나다달러에서 1,000캐나다달러로 상향시키는 것을 제안한 바 있음

II. 유럽

1 네덜란드 - 상속세에 대한 국제 분야 관련 시행령 발표¹⁶⁾

[조세동향 14-11호]

- 네덜란드는 상속세 및 증여세(“상증세”) 관련 국제조세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에 관한 시행령¹⁷⁾을 2014년 10월 24일에 발표함
 - 이는 2010년 5월 25일자로 시행된 기존 법령¹⁸⁾을 대체하는 것으로 상증세에 대한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등 국제조세 측면에서의 조치들을 담고 있음
 - 동 시행령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발효됨
- 동 시행령은 외국에서 부과된 상증세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정부 용역계약에 따른 해외 파견자 등 특정 납세자들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음
 - 외국 부과 세금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 네덜란드 납세자가 외국에서 자국의 상증세와 동등한 세금(comparable inheritance and gift tax)¹⁹⁾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 자국 내에서 상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정부 용역계약(Government services) 파견자에 대한 특칙
 - 네덜란드 국민으로서 외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 상증세 목적상으로는 외국으로 떠난 이후 10년이 되기까지는 자국 거주자로 인정하고 그 기간이 초과하면 비거주자로 보는 규정이 있는바(10-year rule), 동 시행령에서는 정부 용역계약에

16) www.ibfd.org 및 “2013-2014 worldwide personal tax guide-Netherlands”, E&Y 등 참조

17) Decree No. BLKB29013M/1870M

18) Decree No. DGB2010/878M

19) 자국 상증세와 동등한 세금의 의미 :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testator)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유산(estate)에 대한 과세이며,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의 시혜(generosity) 제공에 따라 이전되는 재산(property)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

따라 파견된 개인의 경우에는 계속 네덜란드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규정함

○ 기타 특칙

- 벨기에의 지방상속증여세(regional inheritance and gift tax)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방지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미국에서 부과된 상속세의 경우 연방세뿐만 아니라 각 주에서 부과하는 주세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방지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기타 외국 납부 상속세에 대한 환율 적용 시점 및 배우자 중 한쪽만 네덜란드 국민인 경우의 특칙 등에 대해 규정함

2 독일 -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방식 개정

[조세동향 14-12호]

- 독일 정부는 2014년 12월 19일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방식의 개정안을 상원에서 의결하여 통과시킴²⁰⁾
- 기존의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방식은 국내와 국외소득을 모두 합친 후 계산된 산출세액을 국내와 국외소득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이었음
 - 이때 산출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특별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 함
 - 법인세 납세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법인세의 총액에 국외소득 대비 총 수입 사이의 비율을 구해서 법인세 총액에 곱한 결과로 구해지며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됨
 - 법인은 개인과 달리 인적공제 등이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임

20)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252Fdata%252Ftns%252Fdocs%252Fhtml%252Ftns_2014-12-19_de_4.html&WT.z_nav=crosslinks&hash=tns_2014-09-03_de_2

〈표 II-1〉 독일의 개정전 개인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방식의 문제점

계산방식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 개인소득세 산출세액(a) × 국외 소득/총소득(b) *주 : 총소득은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의 합계액임
계산방식의 문제점	산출세액(a)를 구할 때에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특별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하여 (a)를 구함. 그러나 비율을 정하는 분모인 총소득(b)에서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특별비용 등을 공제하지 않고 있음

자료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62011CJ0168:EN:HTML>

-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기존 한도계산방식이 개인에 대한 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결함
 - 2013년 2월 28일에 유럽사법재판소는 독일의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규정들이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TFEU))’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함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특별 지출, 비일상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고 있음을 부당한 점으로 판시함
 - 유럽재판소가 언급한 지출과 비용은 생활 관련 비용 또는 개인과 가정 환경들에 관련된 지출과 비용들이며 편부모 공제, 노령자 공제, 특별비용, 예외적 비용 그리고 자녀 공제 등이 포함됨
-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판결 이후 법 개정 전까지 판결내용을 반영한 임시 지침을 발표하여 운영해 왔으며 금번에 임시 지침과 같이 법을 개정하였음²¹⁾
- 개정안은 개인 납세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평균 소득세율을 산출한 후 동 세율을 국외 수입에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가 기존한도 이상으로 인상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계산식에서 사용되는 평균세율은 국외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평균소득세율임

21)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62011CJ0168:EN:HTML>

3

러시아 - 비거주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이자비용 처리방법 확정²²⁾

[조세동향 14-08호]

- 러시아 재무부는 2014년 8월 5일에 러시아 내에서 관계회사 간의 채무관계에 대한 이전가격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해당 지침인 Guidance Letter 03-08-05/16607를 공표함
 - 러시아 회사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 때, 한 쪽 지분의 20% 이상을 비거주자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이자비용 처리에 관한 것임
- 러시아 재무부는 러시아 회사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해당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식하여 공표된 지침을 적용함
 - 러시아 회사가 비거주자 법적실체에 대하여 미지불 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 (단, 러시아 실체에 대한 지분이 직접 및 간접 소유를 포함하여 20%를 초과해야 함)
 - 비거주자 법적실체와 연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또 다른 러시아 회사에 대하여 러시아 회사가 미지불 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
 - 비거주자 법적실체와 관련된 러시아 회사 또는 비거주자 법적실체가 부채를 보증하거나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서 부채의 상환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단, 이때는 부채가 자본의 3배를 넘을 때이며 업종에 따라서는 12.5배까지 적용됨)
- 러시아는 새로운 지침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정상가격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지급이 있을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않고 배당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게 함
 - 비거주자가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관계기업은 비거주자인 채권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세무처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러시아의 개정안임

22)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50728.pdf/\\$file/TT750818.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50728.pdf/$file/TT750818.pdf)

- 러시아 세법 제269조 제3항에서는 러시아 채무자의 이자비용 한도를 제269조 제2항으로 위임하고 있음
- 러시아 세법 제269조 제4항에서는 러시아 채무자가 제26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으로 보지 않고 배당으로 처리하게 하고 있음
 - 지급 시 채무자는 해당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도 해야 함

4 벨기에 - 신정부의 향후 조세정책방향 발표²³⁾

[조세동향 14-11호]

- 벨기에 신연립정부는 2014년 10월 9일 연립정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신탁과 기금에 대한 Transparency Tax 시행, 부가가치세의 확대 적용, 법인세와 소득세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발표된 조세정책방향의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변경의 여지는 있음
- 발표된 조세정책에 따라 총 80억유로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연간 20억유로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하여 2018년에는 예산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신규 세수는 Transparency Tax의 도입, 부가가치세 적용범위 확대, 소비세 인상 등의 증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될 것임

가. Transparency Tax

- 동 조세정책에서 'Look-through tax' 또는 'Cayman tax' 라고도 하는 Transparency tax를 신탁이나 기금 같은 법적 실체에 부과하는 것을 제안함

23)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61020.pdf/\\$file/TT761020.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61020.pdf/$file/TT761020.pdf)

- Transparency tax는 저율과세를 적용받는 실체 또는 신탁의 수익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발생한 이윤의 배당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됨
 - 과세요건은 해당 실체 또는 신탁이 벨기에 거주자인 주주 혹은 수익적 소유자에게 배분할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면 충족되며, 그 이익을 각 개인에게 이윤을 배부하였는지는 과세할 때 고려하지 않음
 - 즉,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익에 대한 배당을 가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 동 세금은 발표된 내용 중 유일한 부(wealth)에 관한 세금임
- Transparency tax의 체계 내에서는 법적 장치들의 설립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법적 실체로부터 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법인에 상관없이 정확한 수익적 소유자를 고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서 세금이 수익적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것임
 - 설립자도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있음
 - 정부 당국에 수익이 신고된 수익적 소유자는 25%의 세율로 과세됨
- 자산, 권리,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는 자산, 권리, 펀드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임
 - 또한 벨기에 거주자인 설립자는 외국에 소재하는 본인이 설립하였거나 출자한 법적인 장치들에 속하는 자산, 권리, 펀드의 소유자로 잠정적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될 수 있음
- 법적 장치들의 설립자의 계승자 또는 상속자들은 설립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소유자로 간주될 것이며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계승자 또는 상속자들이 보유한 유산에 대한 지분비율 또는 법적장치에 대한 참여비율이 소유지분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이 됨

나. 법인세

- 신정부는 생산적인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하여, 소기업 또는 중기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음
- 신정부는 2013년에 도입되었던 한시적 정책인 청산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한 법률의 시한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25%의 세율은 일상적인 배당에 대한 세율과 동일함
 - 청산잉여는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여 청산 시에 주주들에게 배분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함
 - 동 제도는 일반적인 배당을 통하지 않고 청산을 통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청산잉여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반면 과세된 잉여금을 배당할 때 감면된 세율 10%(기존 세율은 25%)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동 제도는 2014년 9월 30일까지가 적용 시한이었으며 배당금 순액이 즉시 납입 자본금이 되어 다시 회사로 들어오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재투자된 배당금 순액은 청산 시 비과세 항목으로 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도 유리하게 됨
 - 그러나 과세 혜택을 받은 재투자된 배당금을 청산 전에 다시 배당할 때에는 15%의 세율(단 5년 이후 배당 시에는 5%의 세율을 적용)이 과세되어 해당 배당에 대한 총세율이 25%가 됨
 - 이전에 과세된 10%와 추가 세율 15%가 합해져서 총 25%의 세율로 과세되게 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함
 - 5년 이후에 배당 시에는 이전에 과세된 10%와 추가 세율 5%가 더해져서 총 15%의 세율로 과세됨

- 정부는 재투자된 배당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한시적인 제도(배당세율을 25%에서 10%로 인하하여 적용)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 다른 투자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급여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고용주 부담금을 현행 33%에서 27% 또는 25%까지 인하할 방안도 마련 중임

다. 소득세

- 연립정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부와 소비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음
 - 부와 소비에 대한 것은 간접세, 환경세, Transparency tax 등을 포함함
 - 부에 대한 것은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는 부유세가 아닌 재산세의 형태임
-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근로자는 2018년까지 250유로의 감세가 적용될 것이며, 정책 수단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비용인정(근로소득 공제)을 인상하는 것이 될 것임
- 한편 현행 급여-물가 자동연동제는 2015년에 한시적으로 중단될 것임
 - 신정부의 정책 시행 시 세후 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급여인상 압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1년간의 급여-물가 자동연동제의 중단을 통해 공공부문 인건비 지출 축소 및 고용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
 - 벨기에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2% 상승하면 모든 벨기에인의 급여도 2% 상승함
 - 벨기에에는 급여 협상 시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반영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임
 - 급여-물가 자동연동제는 2015년에만 한시적으로 중단되고 그 이후 연도에는 2%의 물가상승이 있을 때마다 적용될 예정임²⁴⁾

라.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있었던 용역 중 성형수술과 성형치료, 인터넷 판매 등이 과세로 전환될 예정임
 - 인터넷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은 EU의 방침인 방송, 전화, 전자적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지에서 과세를 하는 부가가치세 소비지 부담원칙에 따라서 시행 되는 것임
- 개인주택을 리노베이션 할 경우 경감된 부가가치세율인 6%가 적용되는 요건이 종전 5년 이상 된 주택에서 10년 이상 된 주택으로 강화되었음
- 커피, 와인, 증류주, 에너지에 대한 소비세는 매년 소비자물가에 연동되어서 변동하게 될 예정이며 담배와 디젤(비사업용)에 대한 소비세는 인상 될 예정임
 - 담배와 디젤(비사업용)에 대한 소비세는 인상폭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5 슬로바키아 - 부가가치세율 1%포인트 인상안의 의회 가결²⁵⁾

[조세동향 14-08호]

- 슬로바키아 의회는 2014년 7월 8일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가결하였으며, 2011년에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상시켰던 부가가치세율을 영구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개정안은 19%에서 20%로 인상하는 것이며,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됨
- 세율 인상 이외에도 그동안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일부 통신, 방송, 기타 전자적인 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자의 위치와 관련 없이 소비자가 위치한 곳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개정함

24) <http://www.eurofound.europa.eu/pubdocs/2010/22/en/1/EF1022EN.pdf>

25)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50728.pdf/\\$file/TT750728.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50728.pdf/$file/TT750728.pdf)

- EU Commision에서 합의된 One-stop-shop scheme을 실행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개정안임
- 부가가치세 분기신고기준 기준액도 개정하였으며 연간 총매출액이 5만유로 이하인 기업은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함
- 현재는 연간 총매출액 10만유로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의 매출액 기준이 강화된 것임

6 스페인 - 2015년 세법 개정 초안 발표²⁶⁾

[조세동향 14-07호]

- 스페인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세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법인세, 소득세 및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등이 주요 내용임

가. 법인세

- 법인세의 개정안은 현재 30%인 명목 법인세율을 2015년에 28%, 2016년에 25% 까지 인하하는 방향을 제시함
- 스페인 정부는 세율 인하로 인한 과세수입 감소에 대응하고, 과세저변을 확대 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유형자산의 손상, 부동산 투자의 손상, 무형자산(영업권 포함)의 손상으로 인한 손실은 손금산입을 금지
 - 이익공유형 대출 같은 혼성거래를 위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처리
 - 주식 취득(share acquisitions)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손금산입 일부 제한

26)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50721.pdf/\\$file/TT750721.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50721.pdf/$file/TT750721.pdf)

나. 개인소득세

- 국제적 활동 증진으로 인한 과세관점에서 개인소득세에 대한 개정안으로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규정 도입, 파견인에 대한 과세 개정, 스페인 거주자의 출국세 도입을 제시함
- 스페인의 개인소득세율은 EU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에 속하며, 일반적인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2015년에 47%, 2016년에 45%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 저축소득(배당과 자본소득이 포함됨)의 세율 또한 2015년에는 24%, 2016년에 23%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 단 지방정부 수준에서 각기 다른 조정이 있을 수 있음

1) 개인에게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규정의 적용 도입

- 현재 법인에게 적용되는 CFC 규정이 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에게도 확대 적용될 것임
 - 스페인 거주자인 납세자가 다른 EU 회원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을 때, 그곳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유효한 경제적 저변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CFC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이에 따라 개인도 해외에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능동성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수동적 소득에 대한 소득액수 및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신고해야 함
- CFC 규정의 적용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비거주자인 실체를 지배하면 그 실체에 대한 과세 총액이 스페인 법인세 총액의 75% 이하일 것
- 개인이 스페인의 CFC 규정에 정의된 수동적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비거주자인 실체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파악될 때임

- 비거주자인 실체가 사업 영위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가지지 못할 때 및 그러한 자원들이 같은 경제적 집단 내의 또 다른 비거주자인 실체에도 존재하지 않는 때
- 비거주자인 실체가 법인 설립과 운영이 유효한 경제적 바탕을 가지지 못한 경우

2) 스페인의 파견인에 대한 정책 개정

- 개정안은 근로자의 연봉과는 관계없이 스페인으로 파견된 자들에 대해서 해당 정책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것임
 - 스페인의 파견인에 대한 정책은 세계 혜택을 통해 해외의 우수한 기술 인력, 근로자들을 스페인으로 입국하게 하여 스페인의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임
 - 현재는 60만유로의 제한이 있어서 파견자는 60만유로까지는 25%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누진적 세금을 적용받고 있음
 - 개정안은 스페인에 있는 법인 관리자나 이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
 - 그러나 프로운동선수들은 제외되며 개정안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스페인 거주자인 근로자들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음
 - 2005년에 축구선수 베컴에 의해서 논란이 된 이후 프로운동선수들에 대한 과도한 세계 혜택이 이슈가 되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불평등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게 된 것임
- 새 규정은 처음 60만유로까지는 24%(2015년부터)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60만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45%(2015년은 47%)의 세율 적용을 도입함
- 새로운 정책은 2015년 1월 이전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임

3) 개인의 출국세에 관한 새로운 조항 신설

- 개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출국세의 개정안은 지난 10년 중 5년 이상을 스페인에서

거주하고, 집단투자기구 또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거나 지분을 가진 개인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제안함

-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400만유로를 초과하여야 하며,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가치를 가진 회사의 경우 회사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대상임
- 과세 대상이 된 경우 스페인의 거주기간 동안 인식되지 않았던 자본이득에 과세될 것임
- 다만 납세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스페인의 거주자가 되고 출국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을 국외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는 이연될 수 있으며 지정된 곳으로 이주 시에도 과세가 이연됨
- 거주지를 스페인에서 EU 또는 EEA 멤버국으로 옮기는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도 신설되어 과세를 이연함
- 그러나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이전행위를 할 때는 과세가 됨
 - 주식이나 지분을 생전 증여를 했을 때
 - EU나 EEA에 거주하는 것을 중단할 때
 - 기타 특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

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개정

- 현행법하에서는 2015년에 비거주자에 대한 일반소득의 소득세율이 24%로 예정되어 있으며, 배당, 이자,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20%임
- 그러나 개정안은, EU 또는 EEA 멤버국가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2015년에는 20%, 2016년에는 19%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 해당 국가는 스페인과 효과적인 과세정보 교류를 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인하를 제안함

7 스페인 -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뉴스 기사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료를 지급하도록 제정²⁷⁾

[조세동향 14-11호]

- 스페인에서는 2014년 11월 3일에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뉴스제공자에게 기사 등에 대해서 지적재산권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세(Google Tax)’가 하원을 통과함
 - 이 법의 시행은 2015년 1월로 예정되어 있음
 - 그러나 세부적인 시행계획 및 방법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음
- 본 제도는 구글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뉴스제공자 등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료를 지급하게 하는 동시에 발생한 저작권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임
 - 뉴스제공자 등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료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음악이나 영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여 보호하는 것과 같은 취지임
 - 만약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뉴스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유로(약 8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됨
 - 일반적으로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타이틀과 기사의 일부 혹은 링크가 검색되는데 이 3개의 항목에 수수료를 부과하여 기사의 원천인 인쇄 미디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형태의 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시도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있었으나 독일 이외에는 시행되고 있지 않음
 - 독일에서 스페인과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저작권료를 요구한 업체에 대해서 구글이 검색 결과를 차단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7)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4-11-03_es_1.html](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4-11-03_es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WT.z_nav=Navigation&colid=4913

8

아일랜드 - 과세소득 산입시기 불일치로 공제되지 못한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지침 발표²⁸⁾

[조세동향 14-07호]

- 아일랜드 국세청은 2014년 6월 23일 아일랜드 회사의 비거주자인 지점에 의해서 납부된 외국세액에 대한 이중과세의 해결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함
 - 이 지침서는 수익에 대한 인식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혜택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이 지침서는 해당 상황에서의 감면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업계와 관련됨
 - 보험업계는 투자수익의 인식과 비용인식에 있어서 시간 차이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음

가.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하의 문제점

- 일반적으로 아일랜드 거주자인 기업은 외국관할에 있는 지점을 포함한 전 세계의 수입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해외 지점들은 해당 관할에서 세금을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 아일랜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조세조약이 있는 관할뿐 아니라 조약이 없는 관할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감면 조치를 취함
- 현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아일랜드의 회사와 국외 지점의 회사와의 과세 목적상 수익 인식시기가 불일치 할 경우, 외국에서의 세금 발생시기와 아일랜드의 세금 신고시기의 불일치로 인해서 관련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감면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즉, 서로 다른 회계 인식시점의 차이로 과세소득이 관할마다 다른 시점에서 인식됨

28) http://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t_tax_worldtaxadvisor_140725.pdf

- 또한 수익이나 기타 수익이 외국 자회사 관할에서 최종적으로 인식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아일랜드에서 세액이 발생되지 않아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함
-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의 관할로서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일랜드 국세청에서 사용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환급의 형태로 경감해주는 방식을 도입하였음

나. 외국 자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공제제도 도입

- 새로 도입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에 대한 환급은 외국 지점에서의 세액납부가 과세목적상의 수입인식 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아일랜드 내에서 인정되지 않을 때만 가능함
 - 즉, 기타 다른 이유의 수입인식 차이로 인한 것은 환급이 금지됨
 - 예를 들어 두 관할의 세율 차이로 인한 미공제액과 한 관할에서는 손금산입이 되지만 다른 관할에서는 손금산입이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미공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음
- 수입시기 인식의 차이로 인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이 판별되면 미공제액의 87.5%를 이전 과세기간에 대응해서 환급해 줌(소급공제 형식)
 - 이 방식으로 인해서 전기에 외국 지점의 이익을 계상함으로써 과세된 법인세에 대한 공제가 적용됨
- 환급은 관련 환급대상일이 포함되는 회계기간으로부터 4년 이내에 IRC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음
 - 새로운 제도는 결과적으로 이전 기간에 납부하였던 법인세 환급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 남아 있는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이 가능하며 해외지점 이익에 대응하는

아일랜드 법인세에 대한 공제의 형태로 다음 회계기간으로 이월됨

9 영국 - 도박산업에 대한 일부 과세규정 개정안 공표²⁹⁾

[조세동향 14-10호]

- 영국 정부는 2014년 9월 29일에 General Betting Duty(GBD), Pool Betting Duty(PBD), Remote Gaming Duty(RGD)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표하였으며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
- 개정사항은 일반도박장이나 원격도박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과세 대상의 관할이 도박용역의 공급지에서 소비자의 소비지로 변경된 것임
 - 과세 대상은 영국 밖에서 영국인에게 도박을 제공하는 원격 도박업자와 영국 내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하는 도박업자들이 대상임
 - 단, 사업장을 가지고 도박업을 하는 카지노나 빙고장은 새로운 원격도박을 신설하지 않는 한 새로 바뀌는 규정의 적용 대상은 아님
- 금번 개정으로 인해 도박용역의 공급지 과세가 아니라 소비자 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해외 어느 곳에서 원격으로 도박용역을 공급할지라도, 영국 내의 소비자가 그 용역을 소비하면 그 이익에 대해서 도박세가 과세 가능함
 - 또한 영국 내에서 원격도박을 공급할지라도 그 소비자가 영국 밖에 있고 영국인이 아니면 도박세를 과세하지 않음
- 영국 국세청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3일에 원격도박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등록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설할 것임³⁰⁾
 - 단, 11월 3일 이전에도 등록에 필요한 절차는 시작할 수 있음

29) <https://www.gov.uk/gambling-tax-reform-new-rules-from-1-december-2014>

30)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58740/gtr-info-note2.pdf

- 미등록 시 SCHEDULE 41 to the Finance Act 2008(Penalties: failure to notify and certain VAT and excise wrongdoing)에 의해서 벌금이 부과됨

□ 각 도박에 대한 과세기준은 아래의 표들에 정리되어 있음³¹⁾

〈표 II-2〉 General Betting Duty(GBD) 과세 개요

General Betting Duty(GBD)	
과세 대상	마권업자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됨
과세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마 또는 경견에 대한 일반적인 베팅 또는 도박 베팅, 그 내기가 도박장 현장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고객의 주거지는 상관없음 - 스프레드 베팅(Spread betting), 어떤 지수의 움직임의 결과에 내기를 거는 방식으로 도박업자가 영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영국인이 하는 경마 또는 경견에 대한 GBD 또는 PBD(이 경우 도박장이 영국에 있지 않아도 되고 마권업자의 위치도 상관없음)
세율	도박의 형태에 따라 3~15%로 과세함

〈표 II-3〉 Pool Betting Duty(PBD) 과세 개요

Pool Betting Duty(PBD)	
과세 대상	고정 승률이 아니고 경마 또는 경견이 아닌 도박을 업으로 하는 도박업자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됨
과세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은 영국에 소재하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해야 하며, 고객의 주거지는 상관없음 - 고객이 영국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부과됨 - 도박은 고정 승률이 아니어야 하며 경마나 경견은 GBD에서 과세되므로 제외함
세율	순수 PBD의 금액에 15%의 세율로 과세함

〈표 II-4〉 Remote Gaming Duty(RGD) 과세 개요

Remote Gaming Duty(RGD)	
과세 대상	영국인이 이용하는 도박사업을 제공하는 자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됨
과세 조건	도박 제공자는 도박을 하는 사람과의 도박 이용에 대한 계약 등을 한 사람임
세율	이익에 대해서 15%의 세율로 과세함

31) <https://www.gov.uk/business-tax/gambling-duties>

10 이탈리아 -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조세 법령 개정 공포³²⁾

[조세동향 14-09호]

- 이탈리아는 자국 내 투자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된 법령(Law Decree No. 133/2014)을 2014년 9월 12일에 공포함
- 동 법령은 주로 인터넷 환경개선 투자 및 주택 취득, 임대차 계약 등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조치들을 담고 있음
 - 특정 지역에서 브로드밴드 접속 및 모바일 네트워크의 실현 및 개선 등을 위해 집행된 투자에 대해 동 투자액의 50%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함
 - 동 세액 공제는 법인세 및 생산활동 관련 지방세 모두에 적용됨
 - 기존에 체결되었던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료를 낮추는 거래에 대해서는 등록세 및 인지세를 면제함
 -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및 개축(renovated)된 주거용 부동산을 개인이 취득 또는 건축하는 경우, 그 취득가 또는 건축원가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함
 - 최대 한도는 30만유로이며 8년간 균등분할 공제함

11 체코 - 하원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동의함³³⁾

[조세동향 14-08호]

- 체코의 하원은 2014년 7월 23일에 제약, 출판, 유아의 영양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안을 통과시키고,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해당 인하안은 아직 상원 통과와 대통령 승인 과정이 남아있음

32) www.ibfd.org 참조33)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50728.pdf/\\$file/TT750804.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50728.pdf/$file/TT750804.pdf)

- EU VAT 지침은 회원국에게 2단계까지의 경감 VAT 세율을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체코는 EU의 VAT 지침을 따라서 경감세율을 신설한 것임
- 위 3가지 품목에 대한 10% 세율의 경감세율 도입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은 1억 4,500만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체코는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일부 통신, 방송, 기타 전자적인 서비스를 서비스 공급자의 위치와 관련 없이 소비자가 위치한 곳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개정함³⁴⁾
- 해당 개정안은 EU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한 One-stop-shop scheme의 발효의 일환으로 통과된 것임
 - EU 위원회는 EU 회원국 26개국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몇 개의 지정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 One-stop-shop scheme을 발효하기로 함
 - 추후 해당 체계의 정착과 제도 운영의 노하우가 생긴 후에는 점차적으로 대상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임
 - One-stop-shop scheme은 부가가치세의 Tax Gap을 줄이는 목적과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행정적인 편의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12 터키 - 미납세금 납부에 대한 분납법안을 도입³⁵⁾

[조세동향 14-10회]

- 터키 정부는 2014년 9월 11일 재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체납중인 개인과 법인 납세자를 위하여 6개월에서 3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법 Law 6552(the omnibus law)을 관보에 공포함
- 동 법은 내국세, 관세, 사회보장료를 대상으로 하며 2014년 4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것들을 대상으로 함

34) EU Commision, Taxation Developing the One Stop Shop for cross border VAT compliance, 2012. 1. 13.

35)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50929.pdf/\\$file/TT750929.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50929.pdf/$file/TT750929.pdf)

- 분납 대상인 내국세, 관세, 사회보장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납 가산세와 세무 신고 절차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50%의 감면혜택을 부가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 미납세액에 대한 분납 청구는 관할 관청에 11월 30까지 청구해야 하며 첫 번째 분할 납부는 사면 수단이 발효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분할 납부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 계수를 적용하는 데, 본세에 계수를 곱한 금액이 분납해서 납부해야 할 총세액이 됨
 - 6개월 분할: 1.05, 9개월 분할: 10.7, 12개월 분할: 1.118개월 분할: 1.15
- 조세소송을 하고 있는 납세자는 현재 소송하고 있는 사건을 모두 철회하고 쟁점 대상인 과세에 대하여 정부의 과세에 대해서 인정할 때까지는 당해 사면 대상자가 아님
 - 또한 납세자는 재조정된 세금 분납이 성립된 기간동안 새로 발생하는 모든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도 이행해야 함

13 프랑스 -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정안 발표³⁶⁾

[조세동향 14-09호]

- 프랑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housing recovery plan)의 일환으로 주택 관련 일부 세제 개정안을 2014년 8월 29일자로 발표하였음
- 동 개정안은 주택 투자 및 임대, 유지 등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개인소득세, 부가세 등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것이 주요 취지임
 - 양도소득세는 2014년 9월 1일부터 건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경감됨. 소득세는 22년 이상 점유(possession)한 경우에 경감 대상이 되며 사회

36) www.ibfd.org 및 http://taxinsights.ey.com 참조

보장세(social security tax)는 30년 이상 점유한 경우에 경감됨

- 상속증여세는 2015년 말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증여 및 2016년 말 이전에 신규 주택을 자녀 및 증손자녀에게 증여한 거래에 대해 10만유로에 해당하는 특별 공제를 적용함
- 개인소득세는 2014년 9월 1일 이후부터 에너지 보존 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가 30%까지 증가됨(기존에는 15% 또는 25% 적용)
- 부가세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신규 주택 취득의 경우 5.5%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됨

14 EU - 집행위원회의 조세제도 개혁 관련 보고서 발표³⁷⁾

[조세동향 14-10호]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4년 10월 13일자로 EU 회원국들의 조세개혁에 대한 보고서(Tax reforms in EU Member States 2014)³⁸⁾를 발표함
 - EU 회원국들이 조세제도의 유효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세 개혁은 재정 안정성, 경제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보고서는 회원 국가들이 최근에 추진한 조세개혁의 중요한 의제들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 사항들을 설명함
- 본 보고서는 주로 조세제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각 국가들의 조세정책적 문제 및 특정 조세정책에 대한 세부 논의 등을 다루고 있음
 - 최근에 EU 회원국들이 수행한 주요 조세 개혁 방안들에 대한 개관

37) www.ibfd.org 및 <http://ec.europa.eu> 참조

38) "Tax reforms in EU Member States 2014 - Tax policy challenges for economic growth and fiscal sustainability," EUROPEAN ECONOMY 6|2014, EUROPEAN COMMITTEE, October, 2014.

- 각 국가들이 직면한 주요 조세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
 - 공공재정 확충 및 통합과 관련하여 조세제도의 역할에 대한 검토
 - 조세 구조를 경제성장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근로자 등에 대한 조세 부담 경감 방안 논의
 - 근로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덜한 다른 세목(부가가치세, 부동산세, 환경세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 제시
- 주요 세원(tax base)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
 - 주택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및 세원확충, 부채 사용으로 인한 법인세 영향, 직접세의 공제·감면 범위, 부가가치세 세원 확대 가능성 등
- 환경세 등 특정 조세정책적 사안에 대한 논의
 - 화석연료 부담금에 대한 과세구조 조정, 운송수단에 대한 조세구조 개편 및 환경보호에 어긋나는 보조금 정책 감축 등
 - 기타 납세순응(tax compliance) 강화 및 소득불평등 등의 사안에 대한 검토

15 EU - 금융거래세 관련 진행상황 보고서 발표³⁹⁾

[조세동향 14-11호]

-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2014년 10월 31일자로 금융거래세 도입 관련 협의 증진을 위한 보고서⁴⁰⁾를 발행함
- 동 보고서에서는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논의사항 및 주요 쟁점들을 개괄하고 있음

39) www.ibfd.org 및 <http://ec.europa.eu> 참조

40)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implementing enhanced cooperation in the area of Financial Transaction Tax - State of play,"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Document No.14949/14 October 31, 2014

-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금융거래세 적용 대상, 파생상품 과세 및 과세수입 배분 등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쟁점 등을 언급하고 있음
 - 전반적인 금융거래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협의에 진전이 있었음
 - 금융거래세 적용 대상이 되는 주식 거래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견 조율이 진척됨
 - 이에 따르면, EU 멤버 국가들은 전체 주식시장 대비 시가총액(market cap)이 일정 수준 이하인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음
 - 또한 비상장주식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멤버 국가들이 재량권을 가질 것임
 - 파생상품 과세 및 과세수입 배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음
 -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항목별로 과세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음. 즉, 주식파생상품(equity derivatives)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세 의견이나,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은 일부 과세 찬성, 이자율파생상품(interest rate derivatives)에 대해서는 과세상 문제점이 제기됨
 - 멤버 국가들 간의 과세방식 및 과세수입 배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음 즉 거주지원칙(residence principle)⁴¹⁾ 및 발행지원칙(issuance principle)⁴²⁾이 대립된 가운데 이 둘을 절충하면서 GNI, 인구 등 경제요인을 가미하여 과세수입을 국가들 간에 재배분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됨

16 EU - 부유세 관련 검토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4-12호]

-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14년 11월 20일자로 각 국가들의 부유세(wealth tax) 관련 조세 제도에 대한 검토 보고서⁴³⁾를 발행함⁴⁴⁾

41) 거래당사자의 거주지가 어느 국가에 속한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42)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어느 국가에 속한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43) "Cross-country Review of Taxes on Wealth and Transfers of Wealth," European Commission, October 2014

44) www.ibfd.org 및 <http://ec.europa.eu> 참조

- 동 보고서에서는 상속세(inheritance and gift taxes), 부동산세(real estate and land taxes) 및 순부유세(net wealth taxes)와 관련하여 멤버 국가들의 조세제도를 검토하고 그 주요 특징 및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음
- 상속세는 조사대상 28개 멤버 국가들 중 약 20개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세원 범위는 넓고 세율은 높으나 가족에 대한 감면 혜택이 크고 전체 세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상속 또는 증여 대상물의 공정시장 가치를 바탕으로 과세되며, 납세자는 상속인 또는 수익자임
 - 상속세율은 대부분 누진세율(progressive taxes)이나 증여세율은 단일세율(flat taxes)인 경우가 더 많음
 - 가까운 친척이 납세자인 경우 제3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으며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상속세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 대부분의 멤버 국가들이 부동산 소유 및 양도에 대해 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각 세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세
 - 일반적으로 관할 당국이 지방정부인 경우가 많으며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함
 - 과세표준은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됨
 -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가 세율 범위를 정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일정부분 가감함
 - 세율은 1~3% 정도로 낮은 편이며, 다수의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함
 - 부동산 양도 거래세
 - 일반적으로 관할 당국은 중앙정부이며 부동산 양수인에 대해 과세함
 -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 등 공정시장가치를 기반으로 산정함
 - 세율은 대략 1~8% 범위 내에서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다수의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함

- 순부유세는 대부분의 멤버 국가들이 채택하지 않은 관계로 공통적 특징을 찾기가 어려우며, 동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사실상 소수 일부만 납세 의무를 지고 있음
 - 순부유세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surplus wealth)을 가진 납세자에 대해 과세되는 데, 해당 기준점(tax-free threshold)이 높음
 -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재산에서 제외함
 - 세율은 누진세율로 0~2.5% 사이에서 결정됨

- 동 보고서에서는 해당 조세 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 상속세는 대부분 국가들이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감면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부동산세가 거의 유일한 부유세 관련 세원이 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도 간명한 편이나, 신뢰성 있고 정확하게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음
 - 순부유세는 대부분의 멤버 국가들이 적용하지 아니하며, 과거 채택하였던 국가들도 높은 징세비용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대부분 폐지하였음

17 OECD - 자동적 정보 교환에 대한 글로벌 기준 완성본 발표⁴⁵⁾

[조세동향 14-08호]

- OECD는 2014년 7월 21일자로 과세 관련 금융계좌정보의 자동적 교환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이하 'SAE') 완성본⁴⁶⁾을 공표함
 - 납세자의 소득과 관련된 대량의 정보를 소득원천이 있는 국가로부터 납세자의 거주지 국가로 체계적·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

45) www.ibfd.org, www.pwc.com, www.ey.com 및 www.oecd.org 참조

46) OECD,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in Tax Matters," July 21, 2014.

- SAE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가 간 효과적인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실행될 예정임
 - 국제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국가 간 과세 정보 교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음
 - 이에 OECD는 G20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SAE의 제정에 착수하여 2014년 2월 13일자로 기준 초안을 공표한 이후 2014년 7월 21일자로 완성본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2016년부터 SAE를 이행하여야 하며 2017년부터는 관련 정보를 보고하기 시작하여야 함

- SAE는 각 국가의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상대방 체약국과 상호 교환하는 절차·기준 및 국가 간 합의 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음
 - SAE는 금융정보 보고 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s; CRS) 및 국가 간 합의 모델(Mode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CAA)로 구성되어 있음
 - 각 국가들 간에 정보 교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도모함

가. 금융정보 보고 기준(CRS)의 주요 내용

- 금융정보 보고 기준(CRS)은 금융계좌 정보의 자동적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 보고 및 조사 기준을 제시함
 - CRS는 금융정보 수집 주체 및 보고 대상, 관련 조사(due diligence) 절차 등에 대한 주요 기준을 담고 있음
 - CRS를 실제 적용하기 위하여 각 해당 국가들은 CRS에 부합하는 국내 법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보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에는 은행 및 수탁기관뿐만 아니라 특정 기타 금융 기관도 포함됨

- CRS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유형에는 은행, 수탁기관, 예치기관(depository institutions), 투자기관(investment entities), 특정 보험회사 등이 포함되며, 조세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기관은 제외될 수도 있음
- CRS는 보고 대상 계좌의 범위 및 해당 계좌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보고 대상 계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신탁이나 재단 등을 포함한 일부 법인·단체 등의 계좌가 포함될 수 있음
 - 형식적 실체(passive entities)의 경우 해당 계좌를 실제로 통제·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음
 - 보고 대상 정보에는 각종 투자소득(이자, 배당, 보험상품 이익 및 기타 유사한 형태의 이익 등)과 관련된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잔액 및 양도금액 정보도 포함됨
- 이외에도 CRS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 해당 금융기관이 보고 대상 계좌를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증 절차(duediligence procedures)에 대해 기술

나. 국가 간 합의 모델(CAA)의 주요 내용

- 국가 간 합의 모델(CAA)은 관련 당국 간 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합의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일종의 모델 협약임
 - 당사자국들이 CRS를 바탕으로 관련 금융정보를 식별·검증하여 이를 상대방 국가에 제공하는 것에 상호 합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CAA에서는 관련 정보의 기밀유지(confidentiality)를 강조하며, 정보 사용 범위 및 목적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 또한 효과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제반 조치들에 대해 해당 국가들이 합의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CAA 모델은 아래와 같이 7개 Section으로 구성됨
 - Section 1: 주요 용어들에 대한 정의 조항
 - Section 2: 교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 및 계좌 소유자의 과세목적상 거주 지국 등에 관한 사항
 - Section 3: 정보 교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Section 4: 해당 금융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보고할 경우 이를 상대방 국가에 통보하는 것에 관한 사항
 - Section 5: 각 당사자국이 준수해야 할 비밀유지의무 및 자료 보호에 관한 사항
 - Section 6 및 Section 7: 각 당사자국 간 협약 내용 수정 및 중대한 내용 미이행 시 협약 중단, 협약 종료 등에 관한 사항

18 OECD - BEPS Action Plan에 대한 2014년 보고서 Package 발표⁴⁷⁾

[조세동향 14-09호]

- OECD는 2014년 9월 16일자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14 BEPS Deliverables⁴⁸⁾을 발표함
 - 동 보고서는 2013년 7월 BEPS Action Plan 발표 이후 논의 작업을 거쳐 OECD에서 발간한 첫 번째 권고안(first recommendation)으로서, BEPS Action Plan 15개 항목들 중 7개 사안을 다루고 있음

47) www.ibfd.org, www.pwc.com, www.ey.com 및 www.oecd.org 참조

48) "First recommendations for a co-ordinated international approach to combat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4 BEPS Deliverables, September 16, 2014, the OECD.

- 전체 보고서 Package 중 설명문(Explanatory Statement)에서는 BEPS 프로젝트의 주요 관점 및 경과, 향후 계획, 7개 사안들에 대한 검토 개관 등을 담고 있으며, 7개 항목들에 대한 세부 논의사항은 개별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음
- 7개의 각 Action Plan 항목들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Action 1] 디지털 경제 조세문제(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물리적 사업장 없이 광범위한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요 조세 쟁점 및 해결방안 논의, 향후 제언 등
 - [Action 2] 혼성비대칭 거래(hybrid mismatch arrangements): 혼성비대칭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내국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반영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법인세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논의
 - [Action 5] 유해조세(harmful tax practices): 조세 투명성 및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검토 등 유해 조세관행에 대한 대응책 및 관련 진척 상황 논의
 - [Action 6] 조세조약 남용(tax treaty abuse): 이중비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취지 명확화, 다자간 기구 활용 등 조세조약 남용 방지 방안 제언
 - [Action 8] 이전가격 및 무형자산(transfer pricing and intangibles): 무형자산의 개념 명확화, 무형자산 거래 식별을 위한 기준 마련,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산출 기준의 보완 등 무형자산 거래 관련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수정 제안
 -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 보고(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country-by-country reporting): 이전가격 문서화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동작업을 위한 체계적 접근방법을 제안함
 - [Action 15] 다자간 기구의 적정성(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a multilateral instrument on BEPS): BEPS 작업을 통해 산출된 개선안들을 각 국가들이 집행함에 있어 다자간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 OECD는 향후 동 보고서의 실행 방안 및 제반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추가

검토와 더불어 나머지 Action Plan 항목들에 대한 검토 내용을 2015년 중에 발표할 예정임

- 당초 BEPS Action Plan 15개 항목 중 나머지 8개 사안에 대해서는 OECD를 중심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2015년도 중으로 검토 결과가 발표될 예정임
- 상기 2014 보고서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2015년 보고서 등 향후 검토, 추진될 사항들과 연계하여 수정, 보완될 수 있음

Ⅲ. 아시아/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 2014/15 세무상 중점사항 공개

[조세동향 14-12호]

- 뉴질랜드 과세관청(Inland Revenue)은 2014년 11월 26일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납세협력사항(our compliance focus)에 대해 공개함⁴⁹⁾
 - 납세협력사항은 과세관청이 주목하는 주요 사항(our key focus areas), 납세조력자의 협력(helping your clients get it right), 모든 납세자에 대한 기초사항(basics for everyone), 사업에 대한 기초사항(basics for business)으로 구분하고 있음
 - 납세조력자의 협력과 모든 납세자에 대한 기초사항은 일반적인 납세협력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문서는 과세관청이 주목하는 사항에 대해 매우 유용한 지침이지만 이전 연도와 마찬가지로 세부적 내용이 충분하지 않음⁵⁰⁾

가. 과세관청이 주목하는 주요 사항

- 과세관청이 주목하는 주요 사항은 공격적 조세회피, 사기 및 명의도용, 소득누락 등 총 10가지를 언급하고 있음
- 공격적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ATP)에 대해 과세관청이 주목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함
 - 잠재적 ATP 구조를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입수한 조세정보를 상호 비교 검증함

49) Inland Revenue of New Zealand(<http://www.ird.govt.nz/taxagents/compliance/compliance-index.html>).

50) KPMG, Inland Revenue's 2015 compliance focus, taxmail, 1 December 2014, p. 1.

- ATP가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면 이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조사를 수행함
 - 과세관청은 과거 몇 년간 조세회피에 대한 소송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해오고 있음
 - 과세관청은 과거 조세회피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수십 건의 사례를 공개함
 - BEPS에 대한 국제사회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문가 집단 등에 교육과 지원을 제공함
- 거짓 정보 또는 때로는 국가 간 거래 등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원을 차용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설명함
- 과세관청은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입수되는 정보를 매우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과세관청은 사회발전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고보상공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뉴질랜드 경찰 등과 함께 자산사기협력 프로그램(Welfare Fraud Collaborative Action Programme)의 회원으로 이러한 기관에 대한 사기 등의 행위가 시도되는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음
- 소득누락 및 현행 과세체계에서 식별되지 않는 소득에 대응하는 방식을 기술하고 있음
- 과실로 인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직업이나 사업을 최초로 수행하는 납세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강화함
 - 고의적인 조세포탈을 탐지하기 위한 과세체계와 기술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과의 정보교환을 수행함
- 기부, 고액자산가, 신탁에서 발생하는 세무상의 쟁점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을 언급하고 있음
- 등록된 자선행위에 대한 면세와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남용하는 사례에 대

응하여 이러한 행위의 적발을 위해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의 자선서비스팀(Charities Services team)과 공조하고 있으며 납세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 고액자산가 및 고소득자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세무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거액 또는 비정상적 거래, 해명되지 않는 손실, 비정상적인 수익과 비용의 분류, 세금납부금액과 자산금액과의 상관관계의 비합리성 등의 항목을 주목하고 있음
-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비정상적인 조세혜택을 향유하는 신탁의 구조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 공공기관, 적시납세, 생명보험, 거주용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무상의 쟁점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을 언급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인 구조 및 조직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의 납세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제공, 시스템 및 절차 검토 등을 수행하고 납세협력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밝혀내고 있음
 - 적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자에 대한 의사소통 절차나 제공하는 정보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새로운 세법규정에 따라 생명보험에 대한 5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생명보험사들에게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과세관청은 거주용 부동산과 신규 개발에 따른 일회성 투기부동산의 거래에 주목하고 있음

나. 다국적 기업의 납세협력 주요 사항 중 적신호 사례

- 과세관청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납세협력 주요 사항은 전년도에 공개한 내용과 동일한데 여기에서는 과세관청이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판단하는 적신호(red flags)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음

- 유효세율이 국내 법정세율인 28%보다 낮은 경우
- 세율이 낮거나 없는 지역에서 유의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재무보고와 세무보고 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 대규모 조세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 국가 간 거래 또는 실체에 대해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예, 혼성기업 또는 혼성금융상품)
- 다수의 구조화, 특수목적기업 또는 신금융상품 등을 이용한 복잡한 약정에 관여하는 경우
- 비과세수익이 존재하거나 대규모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하는 경우
-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 합병, 인수 등의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
- 기간별로 손익 등의 변동성이 큰 경우

2

베트남 - 외국계약자에 대한 과세 지침, 기업 지원에 대한 결의 및 세무행정의 개선과 단순화를 위한 지침 공개

[조세동향 14-09호]

- 베트남 재무부는 2014년 8월 6일 외국계약자에 대한 과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지침 103을 공개하고, 8월 25일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결의(resolution) 63과 세무행정의 개선과 단순화를 위한 지침 119를 공개함
 - 지침 103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과 개인에 대해 FCT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⁵¹⁾

51) 외국법인은 소득에 대해 22%의 기준세율을 적용받으나 조세회피가 다수 이루어져서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도입됨(Rachael Saw,

- FCT는 고정사업장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임
- 결의 63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와 완화와 더불어 개인에 대한 소득세 완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아직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지침 119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한 새로운 세무신고 양식 등 세무행정과 불필요한 과세에 대한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가. 외국공급자에 대한 과세 지침 공개⁵²⁾

-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외국계약자에 대한 과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지침 103은 FCT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FCT가 적용됨
 -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재화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며,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 및 관련된 유통·마케팅 등을 책임지며,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외국판매자가 베트남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유통에 있어 인도에 대한 위험을 보유하는 경우
 - 기존에는 Incoterms에 따른 DDP, DAT 및 DAP 조건일 경우에 적용됨
 -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베트남 거주자를 통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베트남에서 수입, 수출 및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만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제공한 판매보증만으로는 FCT가 과세되지 않음

Vietnam - Corporate Taxation sec. 6., Country Surveys IBFD).

52) Ernst & Young, "Vietnam releases Circular 103 providing guidance on foreign contractor tax," Global Tax Alert, 28 August 2014.

나. 기업 지원을 위한 결의 공개

-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결의(resolution) 63은 법인세 세제혜택의 연장·확대, 복리후생비 공제 등을 담고 있음⁵³⁾
 - 2009~2013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고 있던 기업에 대해 사업확장과 관련된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적용함
 - 기존 세제 혜택이 부여된 투자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 기존 세제 혜택이 부여됨
 -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월평균급여 한도의 비용으로 공제를 허용함
 - 세제 혜택이 부여된 산업지구의 범위를 확대함
- 동 결의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기별 환급자격요건의 완화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총 1천억동 가치의 수입을 통해 투자되는 사업의 고정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기존보다 60일 연장함
 - 부가가치세 환급을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 200억동 매출에서 500억동 매출로 상향조정함
- 동 결의에서는 개인소득세 중 주식·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부동산 양도 시 납세자는 거래 시마다 이익의 25% 또는 총매각금액의 2% 중 선택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음
 - 주식 양도 시 납세자는 연간 순소득의 20% 또는 매각금액의 0.1% 중 선택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음
-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의 일부 세제 혜택은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53) KPMG, Resolution 63 on Tax Support Measures for Business, Tax Alert, September 2014.

- 사업면허 취득 후 5년 내에 12조동(VND)이 투자되는 경우 15년간 10%의 법인세율 적용 또는 4년간 법인세 면제 및 이후 9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⁵⁴⁾
 - 30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이 이루어지는 농업기업에게 2014년 20%, 이후기간에 17%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 교육, 병원, 문화 등의 사회시설과 관련된 고정자산에 대해 전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 국제운송을 영위하는 상선회사 소속 베트남시민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베트남 정부는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시행령을 통해 공표할 것임

다. 세무행정의 개선과 단순화를 위한 지침 공개⁵⁵⁾

-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침 119는 세무행정의 개선과 단순화를 위해 기존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세무신고 서식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부동산양도에 대한 새로운 소득세신고 양식을 마련함
 - 조세조약 대상 국가의 개인이 베트남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되는 달부터 기산됨
 - 기존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함
 - 해외로 다시 반출되는 수입재화, 사업목적 내부소비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 기계설비 및 재화 등의 임차 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않음

54) PriceWaterhouseCoopers, "Resolution 63 proposing tax measures to address financial difficulties faced by enterprises," Vietnam NewsBrief, 29 August 2014, p.2.

55) KPMG, "Circular 119," Tax Alert, September 2014.

3 인도 - 2014/15 예산 공개⁵⁶⁾

[조세동향 14-07호]

- 인도 재무장관은 2014년 7월 10일 의회에서 2014-15 예산(union budget)을 공개함
 - 이 예산은 올해 5월 총선에서 집권한 국민민주연합(National Democratic Alliance) 정부의 첫 예산 편성임
 - 예산에서는 경제, 교육, 산업, 사회간접자본, 자본시장 및 금융부문, 사회안전망, 문화 및 관광 등과 더불어 세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재무장관은 연설에서 2014-15 예산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통해 3~4년 내에 7~8%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밝힘

가. 직접세

- 소득세의 면세소득 수준 및 공제한도 등을 조정함
 - 개인에 대한 면세소득 수준을 60세 미만의 경우 20만루피에서 25만루피로, 60세 이상의 경우 25만루피에서 30만루피로 상향조정
 -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법 80C』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하는 투자 한도를 10만루피에서 15만루피로 상향조정
 - 자가주택의 구입 또는 건설 후 3년 동안 소요된 차입금 이자에 대한 연간 공제액 한도액을 15만루피에서 20만루피로 상향조정
- 도관으로 간주하는 신탁의 지정, 각종 투자에 따른 공제 등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를 개정함
 - 경제를 활성화하고 젊은 세대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56) Minister of Finance, "Budget 2014-2015 Speech of Arun Jaitley," July 10, 2014. & The Finance (No. 2) Bill, 2014.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SEBI)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접자본투자신탁과 부동산신탁을 도관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지 않음

- 2017년 3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 2억 5천만루피 이상을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금액의 15%를 공제해 줌
- 철광석 운송을 위한 슬러리 관로와 반도체 웨이퍼제작의 두 산업의 투자금액을
공제함
 - 취득 시부터 8년 이상을 사용하는 자산에 공제를 적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하게 되면 소득에 가산함⁵⁷⁾
- 일몰기간이 다가오는 전력산업에 대한 감세기간(tax holiday)을 2017년 3월 31
일까지 3년 연장함

□ 기타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특례세율의 적용범위 등을 개정함

- SEBI의 규정에 따른 국외기관투자자(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FII)의 증권
거래에서의 소득은 자본소득으로 간주함
- 국내기업의 외화차입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채권에 대해서만 이자지급액의
5%인 원천징수 특례세율(concessional rate)을 모든 외화채권에 적용하며, 외
화차입금에 대해서도 2017년 7월 1일까지 적용
- 지분을 주로 투자하는 기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장기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적용 보유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함
 - 현재 은행의 직접투자나 기타 채무증권에 투자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조세
재정(tax arbitrage) 거래가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배당배분세(Dividend Distribution Tax: DDT)의 대상금액을 세금 차감액에서
총액으로 조정함
 - 현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시에는 총배당금액으로, 기업에 대한 DDT에

57) PriceWaterhouseCoopers, *Union Budget 2014 - Stepping on the Accelerator*, p.23.

대해서는 세금 차감액으로 적용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표 III-1〉 배당배분세(DDT) 과세 비교

상황	금액	DDT
DDT 과세 전 배당지급액	100	
DDT 차감 후 배당지급액(개정 전)	85.47	14.526 ¹⁾
DDT 차감 후 배당지급액(개정 후)	83.00	16.995 ²⁾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금액의 변동	2.47 ³⁾⁴⁾	

주: 1) $85.47 \times 16.995\%$ (세율)=14.526

2) $100 \times 16.995\%$ (세율)=16.995

3) $85.47 - 83.00 = 2.47$

4) 결과적으로 주주는 배당수취액이 이전보다 2.47% 줄어들게 됨

자료: Price Waterhouse Coopers, Union Budget 2014 - Stepping on the Accelerator, p.23.

- 이전가격의 문제에 대응하며 납세자와의 소송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전합의절차 (Advance Pricing Agreement), 정상가격 등과 관련된 개정을 제시함
 - APA 시 미래 5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과거 4년간도 소급적용
 - 공정가격의 범위에 대한 개념을 도입
 - 공정가격을 결정하는 정보 이용 시 현재 단년도에서 다년도 정보 사용
- 재무장관은 연설에서 직접세의 개정으로 인해 약 2,220억루피의 세수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나. 간접세

- 간접세는 관세, 물품세, 서비스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국내 제조업, 화학 및 석유화학의 활성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따른 전력자립도의 유지, 역관세(inverted duty) 문제의 해결 등을 이루기 위해 관세율 등을 개정함

〈표 III-2〉 주요 품목의 관세율

(단위: %)

품목	개정 전 관세율	개정 후 관세율
프로판, 에탄, 에틸렌 등	5.0	2.5
원유나프탈렌	10.0	5.0
지방산, 팜원유스테아린 등	7.5	5.0
점결탄	-	2.5
스테인리스철강플랫제품	5.0	7.5
콜타르피치	10.0	5.0
폐전지 및 전지고철	10.0	5.0
반가공 다이아몬드	-	2.5
브라운관	10.0	-

자료: Ernst & Young, *Budget 2014: Highlights and Impact Analysis*, 10 July 2014, pp. 48~49, 일부 발췌

- 품목에 따라 물품세의 세율을 조정함
 - 식량보안을 위해 식량을 생산능력을 유지하여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식량과 관련된 설비에 대한 물품세를 10%에서 6%로 인하함
 -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등과 관련된 설비에 대해 물품세를 면제함
 - 담배의 종류에 따라 기존세율에서 11~72% 인상함
- 궁극적으로 서비스세를 소비세로 전환할 것이므로 소비세 자체에 큰 변경을 가져 오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과세범위 확대와 납세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서비스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면제 항목을 조정함
 - 온라인이나 모바일 광고매출, 냉방시설을 갖춘 운송이나 신약의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 교육기관에 대한 부동산 임대료 과세범위에 포함함
- 재무장관은 직접세의 개정으로 인해 약 753억루피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4 인도 - 세무조사 표본선정에 대한 지침 공개⁵⁸⁾

[조세동향 14-10호]

- 인도 과세관청(Central Board of Direct Taxes)은 2014년 9월 2일 세무조사 표본 선정(manual selection)에 대한 수정된 지침을 공개함
 - 이 지침은 2014-15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이전 지침(No. 10/2013)을 대체함
 - 필요할 경우 후속적으로 보충지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침에서는 이전가격 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보다 완화하였음
 - 이전과세기간에 법의 해석문제나 사실관계로 인한 이전가격경정금액이 1억 INR 이상인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이전 지침에서는 국제거래가 15천만INR 이상인 경우 또는 이전과세연도에 이전 가격경정금액이 1억INR 이상이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전자의 기준을 삭제하고 후자의 기준을 수정함
- 일반적인 내국세 등의 세무조사 표본선정에 대해서는 이전과세연도에 법의 해석문제나 사실관계로 인한 경정금액이 1백만INR인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지침과 유의적인 변경이 없음

5 인도 - 소비세 헌법개정안 제출⁵⁹⁾

[조세동향 14-12호]

- 인도 연방내각(Union Cabinet)은 2014년 12월 17일 소비세(Goods and Services

58)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Instruction No. 6/2014 - Compulsory Manual selection of cases for scrutiny during the financial Year 2014 · 15-regd, 2nd day of September, 2014.

59) Ministry of Finance(Government of India), The Union Finance Minister, Shri Arun Jaitley said that GST will benefit most of the States from day one especially the consumer States, Press Release, 19th December, 2014.

- Tax: GST) 도입을 위하여 의회에 제출될 헌법개정안을 승인함
- 과세체계의 단순화, 세원의 확대, 보다 충실한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다수의 간접세를 하나의 GST로 통합하는 것임
- 법안은 GST 과세권한의 배분, GST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신설된 246A조는 GST의 과세권한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동시에 부여하고 있음
 - 신설된 279A조는 GST와 관련된 세율, 면제범위, 과세최저점, 불복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수행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의 GST위원회(Goods & Services Tax Council)를 설립하도록 규정함
 - 중앙정부는 GST과세에 따라 향후 5년간 지방정부의 세수손실을 보전함
- 이 법안을 통해 현행 다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간접세가 GST로 통합되나 일부 재화에 대해서는 현행 간접세가 유지됨
 - GST로 통합되는 간접세는 중앙정부의 국가소비세(Central Excise Duty), 추가 소비세(Additional Excise Duties) 등과 지방정부의 부가가치세(VAT/Sales Tax) 등임

〈표 III-3〉 GST로 통합되는 간접세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소비세(Central Excise Duty), 가산소비세(Additional Excise Duties), 용역세(Service Tax), 가산관세(Additional Customs Duty), 특수가산관세(Special Additional Duty of Customs) 등	부가가치세(VAT/Sales Tax), 중앙판매세(Central Sales Tax), 오락세(Entertainment Tax), 지방통과세(Octroi and Entry Tax), 구매세(Purchase Tax), 사치세(Luxury Tax) 등

- 원유, 고속디젤연료, 천연가스, 항공유 등의 석유제품과 주류 등에 대해서는 향후 GST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까지 현행 간접세의 과세가 유지됨

- GST 부과와 관련하여 세율, 과세최저한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⁶⁰⁾
 - 해당위원회(Empowered Committee)의 하위 GST 위원회에서는 GST 세율을 주정부 12.8%, 지방정부 13.9%로 총 26.7%로 제안하였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음
 - GST 과세최저한에 대해 중앙정부는 연간 수입금액 2.5백만루피를 기존에 제시하였으나 지방정부는 1백만루피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GST 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임

6

일본 - 법인세 개혁 및 국경(역외)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소비세 제도 개선방안 공개

[조세동향 14-08호]

- 일본 세제조사회(税制調査会, the Tax Commission)는 2014년 6월 27일 법인세 개혁을 위한 제안 및 국경(역외)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소비세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함⁶¹⁾
 - 세제조사회는 조세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총리에 의견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각부에 설치된 합의제 기관임

가. 법인세 개혁을 위한 제안⁶²⁾

- 이 제안은 세계 경제에서 일본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법인세의 구조변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세부적인 목적으로 세율 인하와 과세기반의 확대를 통해 법인세 부담구조를 개혁하는 것임

60) Ernst & Young, "India plans to introduce Constitution Amendment Bill for Goods and Services Tax," Global Tax Alert, 12 December 2014, pp. 1~2.

61) 日本 内閣部(<http://www.cao.go.jp/zei-cho/index.html>).

62) 税制調査会, 『法人税の改革について』, 平成 26年 6月.

- 조세특별조치, 결손금공제, 배당익금불산입, 감각상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조세특별조치 중 정책세제에 대해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성과 효과를 검증하여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정책세제의 기준을 제안함
 - 조세특별조치는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세제, 조세회피 방지와 절차특례에 대한 조치로 나뉨
 - 2012년 전체 신고 납세자 276만건 중 약 96만건의 법인이 정책세제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일몰기간이 종료된 정책세제는 원칙적으로 종료시켜야 함
 - 일몰기간이 없는 정책세제는 일몰기간을 규정해야 하며 혜택을 얻는 납세자들을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검토를 수행
 - 특정 소수의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세제는 폐지를 위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
 - 상위 10개사에 대한 혜택이 전체의 80% 이상이거나 적용이 10건 미만인 경우를 예로 제안함
- 결손금의 이월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공제기간의 연장을 제안함
 - 현재 결손금공제는 향후 9년간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시 당기소득의 80%까지 적용됨
 -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은 당기 소득의 전액 공제 가능
 - 세금부담의 평준화와 세수의 안정화를 위해 결손금이월공제에 대해 공제한도인 소득의 비율은 낮추고 이월기간은 확대
 -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 지분투자에 따른 배당에 대해 지배관계 또는 자산운용의 보유목적에 따라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조정할 것을 제안함

- 현재 25% 이상의 지분보유 시에는 배당의 전액, 25% 미만의 경우에는 배당의 50%를 익금불산입하고 있음
- 정액상각과 200%의 가속상각을 선택할 수 있는 현재의 상각방법에서 가속상각을 폐지할 것을 권고함
 - 가속상각법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면서도 이익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일본의 IFRS 도입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이 정액법으로의 변경을 검토 중이며, 국제적으로 과세기반의 확대 일환으로 감가상각제도의 재검토를 고려함
 - 또한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비용을 임의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고 기간손익을 해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법인사업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국세에서 비용으로 공제하고 있어 국세와 상충되는 효과를 나타내어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 예를 들어 지방세를 감면하면 비용이 줄어들어 국세수입이 증가하며, 지방세 부담이 커지면 비용이 증가하여 국세수입이 감소함
- 여러 세제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범위, 경감세율, 기타 특례에 대해 재검토를 제안함
 - 자본금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중소기업 해당하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기준을 검토
 - 소득금액 8백만엔 이하에 적용되는 세율 19%는 검토되어야 하며, 동일소득구간에 적용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조세특별조치법상 15%의 경감세율에 대해 더 이상 적용 필요성이 없어 폐지 고려
 - 세율 이외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별조치의 검토가 필요
 -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세제차이로 인해 법인형태를 선택하는 법인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소득과세를 포함한 검토가 필요

- 특히 개인과 법인의 세율차이가 현저한 경우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법인에 유보하므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내부 유보과세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
- 공익법인과 협동조합에 대한 비과세, 경감세율의 적용에 대해 재검토를 제안함
 - 현재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며 일반 수익사업은 중소기업과 동일한 경감세율이 적용되며, 협동조합은 모든 사업이 과세 대상이지만 마찬가지로 경감세율이 적용됨
 - 공공재의 제공에 민간 등의 참여로 제공 주체가 다양해져, 형태만으로는 공익 사업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과세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
 - 세율뿐만 아니라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에 대해 비과세되는 경우 검토
 - 현행 공익법인에 대한 수익사업의 열거주의 및 비수익사업에 대한 간주기부 금제도 재검토
- 세제조사회는 2014년 6월 24일 내각에서 결정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14’에 따라 제안된 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나. 국경(역외)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소비세 제도 개선방안⁶³⁾

- 국외사업자의 용역 제공이 이루어진 장소가 분명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사업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임
 - 전자적 형태의 서적·음악·광고 등의 용역을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면 과세되는데 반해, 국외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고 있음
- 소비세 과세 시 국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장소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

63) 国際課税DG(Discussion Group), 『税制調査会資料 [国境を越えた役務の提供に対する消費税について] : 制度案について』, 平成 26年 6月 27日.

공급장소를 목적지주의로의 변경을 제안함

- 현재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을 ‘용역 제공자의 주소·거소 또는 본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주소·거소 또는 본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
 - 국외사업자가 제공한 용역 중 공급장소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며 시행령에 공급장소가 규정된 용역(예: 국제운송, 통신, 우편, 보험, 플랜트건설 등)은 제외됨
- 이러한 거래에 대해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와 소비자인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방식을 제안함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역부과방식을 적용하여 공급받는 국내사업자가 납세자가 됨
 - 국외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역부과방식이 적용된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 공급받는 국내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내사업자의 과세 매출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예: 95%)인 경우 납세금액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국외사업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함
 -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공급금액에 포함된 소비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만, 국외사업자에 대한 과세집행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외사업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7 일본 - 소비세 추가인상 연기

[조세동향 14-12호]

- 일본 총리는 2014년 11월 17일 담화를 통해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계획을 연기하기로 공표함⁶⁴⁾

- 2012년 8월 22일 입법된 개정 소비세법에서는 소비세율을 2015년 10월 1일부터 10%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2017년 4월로 연기함
 - 개정 소비세법은 두 단계의 소비세율 인상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4월 1일부터 8%로의 인상이 이루어짐
- 이러한 소비세율 인상 연기는 11월 16일 공개된 3분기 GDP 추정치를 고려할 때 경기회복세로 접어들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8 중국 - 조세지원 대상 서부지역 산업 공개⁶⁵⁾

[조세동향 14-09호]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2014년 8월 20일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인 영(令) 제15호 서부지역 성장촉진산업 목록을 공개하였으며 이 영(令)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됨⁶⁶⁾
 - 이 영(令)은 2011년 7월 11일 중국 재무부와 과세관청이 공개한 서부지역의 해당산업에 대해 경감법인세율 15%⁶⁷⁾를 적용하는 지침 58의 후속조치임⁶⁸⁾
- 이 영(令)의 첫 번째 부분은 기존에 공개된 국가 전체 수준에서의 성장촉진산업으로 기존에 공개된 세 가지 목록을 언급하고 있음
 - 2011년 (개정)산업구조조정 목록(국가발전개혁위원회 영(令) 2013년 제21호)에 따른 성장촉진산업

64) 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 Press Conference by Prime Minister Abe, November 18, 2014(http://japan.kantei.go.jp/96_abe/statement/201411/1118kaiken.html).

65)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令 第15号 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 2014年8月20日.

66)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http://www.ndrc.gov.cn/gzdt/201408/t20140822_623300.html).

67) 중국의 통상적인 법인세율은 25%이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저소득기업(low-profit enterprise)은 20%가 적용되고 있음(Shi Qi Ma, China (People's Rep.)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Surveys IBFD)

68) PriceWaterhouseCoopers, "A new round of Corporate Income Tax incentive for China's western region was formally unveiled," *New Flash: China Tax and Business Advisory*, September 2014., p.1.

- 2011년 (개정)외국인투자산업지도 목록(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 영(令) 2013년 제12호)에 따른 성장촉진산업
 - 2013년 (개정)중국 서부지역 외국인투자에 대한 중서부지역 목록(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 영(令) 제1호)에 따른 산업
- 이 영(令)의 두 번째 부분은 각 서부지역별로 성장촉진산업을 규정하고 있음(〈표 III-4〉 참조)
- 충칭(重庆市) 등 총 12곳의 시·성·자치구별로 최대 40개의 성장촉진산업을 규정함
 -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산업을 열거하고 있으나 지역개발에 필수적인 도로여객 운송, 의료, 수자원, 에너지 등의 산업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됨

〈표 III-4〉 각 지역별 성장촉진산업

시, 성, 자치구	산업 수	주요 산업
충칭	32	금속정밀가공, 플라스틱·화학·신소재 생산 가공, 에너지절약설비 개발·생산, 원자력발전 설비, 수자원관련 개발, 대형레저시설 등
쓰촨성	36	농산물 품질개량 연구개발, 농산물 저장·보존·건조 시설, 태양열전지모듈, 원자력발전 설비, 대형레저시설, 도로여객운송, 의료기관 등
구이저우성	31	고출력 유압시설, 카본스틸·알루미늄 생산 등
윈난성	33	화훼, 태양열전지모듈, 향만물류, 납·아연 등의 합금 개발 등
티베트자치구	13	농·축산업, 태양광발전, 티베트전문식품가공, 민족수공예 등
산시성	37	열병합발전, 광석자원산업, 마그네슘합금제조, 티타늄가공, 유전공학, 바이오 등
간쑤성	35	포도재배·와인제조, 탄소·마그네슘·티타늄·니켈 등의 재료 개발과 생산, 이차전지 개발·생산, 특수목적차량 제조, 광대역네트워크, 하수처리 등
칭하이성	25	태양광·풍력, 칼륨·나트륨·수산화칼륨 등의 개발·생산, 농촌급수, 민간공항운영, 조종사훈련 등
닝샤회족자치구	31	포도재배·와인제조, 석탄광산관련장비 연구·응용, 유제품가공, 대형데이터센터구축 등
신장위구르자치구	40	사막식물재배, 우라늄광산관련장비 연구·제조, 면화·밀·콩 등의 작물 재배 등
내몽골자치구	31	미생물사료첨가제 개발·생산, 유기·무기 복합비료 생산, 태양광 등
광시좡족자치구	32	흑서기 작물재배기술 개발·응용, 농산물 품질·안전, 알루미늄·인듐 등 합금 개발·생산, 석유화학제품 개발·생산, 압축천연가스 장비·장치, 사탕수수농장기계 연구·제조 등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令 第15号 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 2014年 8月 20日, 표로 재구성.

9

중국 - 역외 지급수수료에 대한 조사지시 및 조세지원 대상 서부지역 산업 공개

- 중국 과세관청(国家税务总局: 국가세무총국,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SAT)은 2014년 7월 29일 각 하부과세관청에게 역외로 지급되는 비용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税总办发: 세총판발) 146호를 공개함
 - 이 지침은 각 하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중국 내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국외로 지급하는 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함
 - 특히 저세율국가 또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법인 등에 지급되는 비용이 합리적인 상업목적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지 타당성을 조사
 - 각 하위 과세관청은 2014년 9월 15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SAT에 보고해야 함
- 주요 대상 항목으로 서비스수수료와 로열티의 세부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 주주에게 지급되는 서비스수수료
 - 전세계그룹에서 발생한 공통비용을 중국 내로 부담시키는 관리수수료
 - 지급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거나 제3자에 의해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다시 활동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중복 서비스수수료
 - 지급자의 사업 등과 관련없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 다른 거래에 서비스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중복하여 지급하는 서비스수수료
 - 조세피난처로 지급되는 로열티
 - 실제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손상되었으나 계속되어 지급되는 로열티

10 중국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채권매매에 대한 과세지침

[조세동향 14-10호]

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무조사 지침 전달⁶⁹⁾

- 중국 과세관청(국가세무총국)은 2014년 8월 25일 각 지방과세관청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비공개지침 207을 송부함
 - 지침에서는 각 지방과세관청에게 매월마다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2014년 1월 9일 이전에 연간조사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음
 - 이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무조사를 선언한 2014년 7월 8일의 비공개 지침 317에 따른 후속조치임
 - 지침 317에서는 선언되었으나 지급되지 않는 배당, 원천징수 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배당, 이자형태로 지급된 배당, 과세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된 잉여금 등을 주요 세무조사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음

나. 채권매매에 대한 과세지침 공개⁷⁰⁾

- 중국 과세관청은 2014년 9월 5일⁷¹⁾ 금융기관의 채권매매에 대한 영업세 과세방법을 명확히 하는 공고 제50호를 공개함
 - 지침에서는 금융기관은 채권매매 시 매각가액에서 매입금액과 보유기간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 이전에는 채권매각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음⁷²⁾
 - 이 지침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전이라도 확정되지 않은 세무상 문제가 존재할 경우에도 적용됨

69) "China (People's Rep.) - Tax examination of dividends paid to non-residents (15 Sep. 2014)," News IBFD.

70) 国家税务总局, 『关于债券买卖业务营业税问题的公告』, 2014年8月28日.

71) 실제 공고일자는 9월 5일이나 공고 내용상의 일자는 8월 28일

72) Tax Notes Int'l, Sep 15, 2014, p. 910.

11

중국 - 중소기업에 대한 가속상각지침 및 주식교차거래를 위한 조세혜택지침 공개

[조세동향 14-11호]

가. 중소기업에 대한 가속상각지침 공개⁷³⁾

- 중국 재정부(财政部, Ministry of Finan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와 과세관청(国家税务总局,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은 2014년 10월 20일 중소기업에 대한 고정자산 일시공제 및 가속상각에 대한 내용인 지침 재세(财税) 75호를 공개함
 - 이는 2014년 9월 24일 국무원에서 결정된 사안을 확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임
 - 기업규모 및 산업에 따라 고정자산의 가속상각,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일정 규모 이하 고정자산의 취득 시 일시공제, 소액고정자산에 대한 일시공제가 허용됨
 - 제약·특수기기제조·운송제조·전자기기제조·기계장치제조·정보기술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 60% 또는 이중상각법에 의한 상각을 허용함
 - 위 6개 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⁷⁴⁾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취득한 1백만RMB 이하의 고정자산은 취득 시 공제를 허용함
 - 모든 산업에 대해 5천RMB 이하의 고정자산은 취득 시 공제를 허용함
 -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73) 财政部·国家税务总局, 关于完善固定资产加速折旧企业所得税政策的通知, 财税 [2014] 75号, 2014年 10月 20日

74)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의 경우 연간과세소득이 3십만RMB 이하, 종업원 수 100명 이하, 총자산이 3천만 RMB 이하, 여타 기업의 경우 각각 3십만RMB 이하, 80명 이하, 1천만RMB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업임(Ernst & Young, China issues circular to accelerate fixed assets depreciation, *Global Tax Alert*, 12 November 2014)

나. 상해·홍콩 상장주식의 교차거래를 위한 조세혜택지침 공개

- 중국 재정부, 과세관청 및 증권감독위원회(证监会,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는 2014년 10월 31일 적격외국기관투자자와 위안화적격외국기관투자자⁷⁵⁾의 자본소득비과세와 관련한 지침인 재세(财税) 79호⁷⁶⁾와 상해와 홍콩을 통한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는 지침인 재세(财税) 81호를 공개함⁷⁷⁾
 - 두 지침 모두 2014년 11월 17일부터 적용됨
- 지침 79호는 적격외국기관투자자(Qualified Foreign Intuitional Investors: QFII)와 위안화적격외국기관투자자(RMB Qualified Foreign Intuitional Investors: RQFII)의 중국 내에서 주식 또는 기타 지분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비과세 한다는 내용임
 - 이러한 비과세는 중국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중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와 관련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함
 - 이 지침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적용됨
- 지침 81호에서 중국투자자가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 매매차익 등에 대해 일시적인 비과세 등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원천징수절차에 대해 규정함
 - 중국 개인투자자의 주식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2014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16일까지 비과세함

75) QFII, RQFII는 업종별로 업무경력, 최소자본금, 운용자산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국증권감독위원회에서 자격을 부여하며, RQFII는 위안화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임

76) 财政部·国家税务总局·证监会, 关于QFII和RQFII取得中国境内的股票等权益性投资资产转让所得暂免征收企业所得税问题的通知, 财税 [2014] 79号, 2014年 10月 31日

77) 财政部·国家税务总局·证监会, 关于沪港股票市场交易互联互通机制试点有关税收政策的通知, 财税 [2014] 81号, 2014年 10月 31日

- 중국 법인의 주식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임
- 중국투자자에 대한 홍콩거래소 H주식의 배당은 지급하는 기업이 20%의 원천징수를 수행하고 이외의 주식은 중국예탁결제청산소가 원천징수를 수행함
 -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면서 홍콩거래소의 H주식을 12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의 배당은 비과세되며, 이외의 과세되는 배당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지급받는 법인이 직접 신고와 납부를 수행함
- 홍콩투자자(법인과 개인 모두)가 상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일시적인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원천징수절차에 대해 규정함
 - 상해 A주식을 투자하는 홍콩투자자에 대해 주식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 일시적으로 비과세함
 - 홍콩투자자에 대한 상해 A주식의 배당은 상해 증권거래소가 10%의 원천징수를 수행함
 - 중국과 조세조약에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10%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환급이 이루어짐
- 홍콩투자자에 대해 영업세에 대한 일시적인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중국투자자에 대한 영업세와 양국 투자자의 인지세 과세는 현행규정을 유지함
 - 상해 A주식에 투자하는 홍콩투자자에 대해 영업세를 일시적으로 비과세함
 - 홍콩주식에 투자하는 중국투자자에 대해 현행 영업세의 규정을 계속적으로 적용됨
 - 현재 영업세는 개인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비과세, 법인은 비과세임
 - 인지세는 현행 규정에 따라 적용됨
 - 현행 규정은 홍콩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거래금액의 0.1%, 중국은 상장주식의 매도자에게 0.1%가 부과되고 있음⁷⁸⁾

78) KPMG, "Clarification of tax position of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programme and QFIIs/RQFIIs," *China Tax Alert*, November 2014, p. 2

〈표 III-5〉 과세규정 요약

투자자	구분	세목	과세내용
중국투자자	개인	소득세	· 매매차익에 대해 2014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17일 까지 비과세 · 배당소득에 대해 20% 원천징수
		영업세	· 현행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과세
	법인	소득세	·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원천징수대상은 아님) ¹⁾
		영업세	· 현행규정에 따라 비과세
홍콩투자자	모두	소득세	· 매매차익에 대해 일시적으로 비과세 · 배당소득에 대해 10% 원천징수
		영업세	· 일시적으로 비과세

주: 1) 12개월 이상 보유하는 H주식에서의 배당은 비과세

12

중국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운영지침 등의 지침과 2015년 관세계획 공개

[조세동향 14-12호]

가.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에 대한 운영지침 공개

- 중국 과세관청은 2014년 12월 2일 조세혜택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에 대한 대응방법을 규정하는 영(令) 제32호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에 대한 운영지침(一般反避税管理办法)을 공개함⁷⁹⁾
 - 제1장 총칙(总则), 제2장 입안(立案), 제3장 조사(调查), 제4장 결안(结案), 제5장 분쟁처리(争议处理), 제6장 부칙(附则)의 6개의 장과 하위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영(令)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됨
-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에 대한 특성과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79) 国家税务总局, 一般反避税管理办法 (试行), 国家税务总局令 第32号, 2014年12月2日.

- 조세회피(避稅) 특성에 대해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형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술
-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먼저 적용되거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를 제시함
 - 국제거래와 관련이 없거나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이전가격, 원가공유약정, 피지배외국법인 및 과소자본세제 등과 관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특정규정이 먼저 적용됨
- 과세관청이 조세회피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을 예시함
 -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구성
 - 조세목적상 거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을 부인하고 하나의 당사자로 간주
 - 관련 소득공제, 세제혜택 등의 조정 또는 관련 당사자간 재분배
 -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
- 세무조사와 관련된 절차와 세무조사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각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음⁸⁰⁾
 - 세무조사대상 선별은 관할과세관청의 권한이지만 일반적 조세회피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지역과세관청 또는 중앙과세관청의 승인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음
 - 과세관청은 약정의 배경, 경제적 목적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세무조사 예정 통보 후 60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납세자가 신청한 자료제출 연장요청을 과세관청이 수용하면 30일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80) Deloitte, "SAT issues regulat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GAAR," China Tax Alert, 19 December 2014, pp. 2~3.

- 과세관청은 역외정보교환 또는 특정 약정에 자문을 수행한 자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과세관청은 중앙과세관청의 조사 승인일 이후 9개월 내에 일반적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중앙과세관청 등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함
-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일반적 조세회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불복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세조약과 관련되는 경우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중대세무사건 심리방법 지침 공개

- 중국 과세관청은 2014년 12월 2일 중대 세무사건의 심리를 규정하는 영(令) 제34호 중대세무안전심리방법(重大税务案件审理办法)을 공개함⁸¹⁾
 - 제1장 총칙(总则), 제2장 심리조직과 책무(审理机构和职责), 제3장 심리범위(审理范围), 제4장 신청과 접수(提请和受理), 제5장 심리절차(审理程序), 제6장 집행과 감독(执行和监督)의, 제7장 부칙(附则)의 7개의 장과 하위 45개의 조문 및 부록의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영(令)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됨
- 이 영(令)은 중대세무안전심리위원회(重大税务案件审理委员会: “위원회”)의 구성, 심리의 방법 등 중대세무사건의 심리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담고 있음
 - 유의적인 행정재제에 해당하는 조세사건, 여타 수사기관에 이첩될 사건,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등을 중대세무사건으로 정의함
 - 공고에서는 지방단위에서 증언자와 세무전문가의 의견 청취, 증거조사, 사건에

81) 国家税务总局, 重大税务案件审理办法, 国家税务总局令 第34号, 2014年12月2日.

- 대한 의견 제출을 포함한 사건조사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서면심리가 이루어지며 심리결정 기간은 30일이며 연장되는 경우 최대 45일 까지 가능함
 - 또한 납세자는 자신을 방어할 기회가 주어지며 사건에 관계된 세무공무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
 - 단독이 아닌 위원회의 심리, 서면 및 대면 심리의 규정, 각 절차의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기존보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음⁸²⁾

다. 2015년도 관세계획 공개

- 중국 국무원(the State of Council)의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는 2014년 12월 12일에 2015년도 관세계획인 지침 32를 공개함⁸³⁾
 - 첨단제조산업에 사용되는 장비부품, 열효율화 및 탄소저감장치 등의 환경친화 장비 등에 대해 최혜국대우관세율(most-favoured nation duty rates)보다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
 - 할당관세율이 적용되던 냉장압축기, 차량라디오 등에 대한 적용을 배제
 - 천연고무 등에 대해 조정관세율을 적용
 - 자유무역협정과 우호관세협정의 실행
 - 방글라데시, 칠레, 코스타리카 등과의 협정 및 홍콩, 마카오와의 원산지특혜 기준에 따른 관세 면제 등
 - 석탄, 원유 등의 부과되는 수출관세는 유지되며 시장 공급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82) Ernst & Young, "China Tax & Investment Express (Issue No. 2014051)," China Tax Center, 24 Dec 2014, p. 3.

83) China (People's Rep.) - Customs duties for 2015 (17 Dec. 2014), News IBFD.

라. 소비세 적용에 관한 지침 공개

- 중국 재무부와 과세관청은 2014년 11월 25일 제품별 소비세율을 조정하는 지침 93⁸⁴⁾을, 11월 28일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지침 94⁸⁵⁾를 공개함
 - 지침 93에서는 250ML 미만의 저탄소이륜차, 차량의 타이어, 차량용 가연가솔린, 주정에 대한 소비세를 폐지, 250ML 및 이를 초과하는 이륜차에 대한 소비세율을 각각 3%와 10% 적용함
 - 지침 94에서는 환경보호와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솔린, 나프타, 미네랄 용매, 윤활유에 대해 리터당 0.12위안, 디젤유, 항공유, 연료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0.14위안의 소비세를 추가로 과세하나 항공유는 현행과 같이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 지침 93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지침 94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됨

13

호주 - 과소자본세제 및 국외배당소득면제세제 변경 법안 의회 제출⁸⁶⁾

[조세동향 14-07호]

- 호주 재무장관은 2014년 7월 17일 과소자본세제 및 국외배당소득면제세제 변경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 법안은 2013년 5월 14일 연방예산안에서 최초 공개되었으며, 2014년 5월 공개 초안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짐
 - 과소자본세제와 관련된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국외배당소득면제는

84)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关于调整消费税政策的通知, 财税〔2014〕93号, 2014年11月25日.

85)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关于提高成品油消费税的通知, 财税〔2014〕94号, 2014年11月28日.

86) *Tax and Superannuation Laws Amendment (2014 Measures No. 4) Bill 2014: A Bill for an Act to amend the law relating to taxation, superannuation and excise, and for other purposes,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 House of Representatives & Explanatory Memorandum(circulated by the authority of the Treasurer, the Hon J. B. Hockey MP).*

국왕의 재가(Royal Assent)가 이루어진 날부터 적용할 예정

- 과소자본세제는 개별기업 적용 부채비율 및 전 세계 부채비율의 가중비율 하향 조정,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비용한도 상향조정, 국내투자에도 전 세계 부채비율의 적용, 공정 부채비율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강화함
 - 일반기업의 경우 기존 부채비율을 3:1에서 1.5:1로,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기관(non-bank financial entities)의 경우 부채비율을 20:1에서 15:1로 변경
 - 수신기능이 있는 금융기관(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은 위험가중자본비율을 4%에서 6%로 변경
 - 일반기업의 국외투자 시 개별기업 과소자본세제 대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전 세계 자산 대비 부채비율에 120%를 적용하던 것을 100%로 조정
 - 과소자본세제 적용 제외 범위를 이자비용 등이 기존 25만호주달러 이하에서 200만호주달러로 상향조정함
 - 기존에 국내투자에 대해서 전 세계 부채비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국외투자과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
 - 공정부채평가(arm's length debt test)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조세위원회(Board of Taxation)는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까지 정부에 결과 보고가 이루어질 것임⁸⁷⁾
- 지분을 10%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국외배당소득면제 규정을 보다 실질에 부합 시키기 위해 「1997 소득세과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을 개정함
 - 호주 부채/자본 구분규정에서 부채로 분류되는 지분투자의 배당에 대해 소득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 세무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비지분금융상품에 대해 소득면제 적용

87) Ernst & Young, "Australian Tax Bills affect international financing and structuring," Global Tax Alert, 18 July 2014, p.2.

- “의결권(voting interest)에 따라 수령하는 국외배당을 면제”에서 “지분이익(equity interest)에 따라 수령하는 국외지분 배분액(equity distribution)”으로 조문을 개정
- 적용범위를 회사(company)에서 상장신탁, 집합투자증권, 유한회사 등에 적용하고 중간(interposed) 신탁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수취한 간접 배당에도 적용함

14 호주 - 암호화 화폐에 대한 과세지침 공개⁸⁸⁾

[조세동향 14-09호]

- 호주 과세관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2014년 8월 20일 암호화 화폐(crypto-currencies)에 대한 과세지침을 공개하였으며 이 지침은 2013-14 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됨
 - 이 지침은 특히 비트코인과 관련 된 거래에 대한 과세상 취급에 관한 것이나 비트코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여타 암호화 화폐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ATO는 비트코인 거래를 교환거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교환거래와 동일한 과세 취급을 함
 - 이는 비트코인을 통화나 화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임
 - 또한 비트코인은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됨
-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법인이 아닌 개인의 비트코인 거래의 경우 소득세 등이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 비트코인 원가가 10만호주달러 이하이면서 비트코인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비트코인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자본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88)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 treatment of crypto-currencies in Australia - specifically bitcoin (https://www.ato.gov.au/General/Gen/Tax-treatment-of-crypto-currencies-in-Australia---specifically-bitcoin/?page=1#Taxpayers_conducting_a_bitcoin_exchange__including_bitcoin_ATMs_)

- 즉, 이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비트코인 지급 시, 비트코인의 공정시장가치와 매입가격의 차이로 발생하는 자본손익은 자본이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투자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리목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분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됨
-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세무상 교환거래와 동일하게 소득세 등이 과세됨
- 재화나 서비스 공급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수취하는 경우 비트코인의 가치를 호주달러로 평가하고 경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인식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며,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가 소비세 과세대상이면 GST(Goods and Service Tax)가 과세됨
 - 즉, 수취한 비트코인의 공정가치와 제공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원가와와의 차이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제공한 재화 또는 서비스가 GST 과세대상인 경우 GST가 과세됨
 - 재화나 서비스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경상소득 계산 시 취득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비용을 공제받으며, 대가로 비트코인이 제공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GST가 과세됨
 - 비트코인의 양도가 사업목적으로서 이루어지면 자본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비트코인 채굴(mining)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 제3자에게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관련 비용은 공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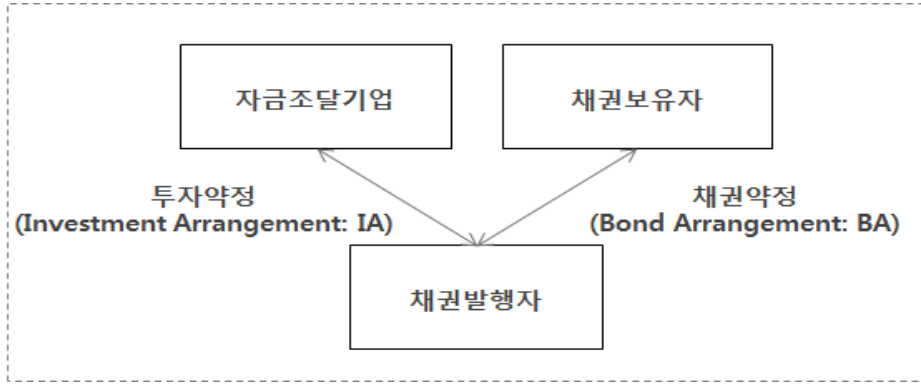
15 홍콩 - 대체채권체계에 대한 지침 제50호 공개⁸⁹⁾

[조세동향 14-08호]

- 홍콩 과세당국은 2014년 7월 11일 특정 대체채권체계(alternative bond schemes)에 대한 지침인 「세무조례역의급집행지인(稅務條例釋義及執行指引,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DIPN)」 제50호를 공개함
 - 지침은 2013년 7월 입법된 내국세 및 인지세(대체채권체계) 법령에 대한 과세당국의 견해와 사례를 기술하고 있음
 - 대체채권체계와 관련된 인지세 면제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 지침 제6호에서 다를 예정임
 - 대체채권체계는 사실상 대출의 성격인 이슬람 금융에 대한 것으로 이로 인한 투자약정과 채권약정을 세무상 부채로 간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투자약정과 채권약정을 부채로 볼 수 있다면 자금조달기업과 채권발행자는 관련 지급액을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음
-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이자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은 직접적인 대출을 실행할 수 없어 구조화된 형태로 이루어짐
 - 채권발행자(Bond Issuer)가 채권보유자(Bond Arrangement)와 수쿠크(sukuk) 채권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의 자금으로 자금조달기업(Originator)과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형식을 이용함
 - 채권발행자는 거래를 위한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SPV)임

89) Inland Revenue Department,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 50 - Taxation of Specified Alternative Bond Schemes," July 2014.

[그림 III-1] 이슬람 금융의 구조화



○ 이 때 투자약정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이슬람 금융의 분류가 이루어짐

<표 III-6> 이슬람 금융의 분류

투자약정의 형태	이슬람 금융
리스약정	이자라(Ijara)
이익공여약정 ¹⁾	무샤라카(Musharaka) 또는 무다라바(Midaraba)
구매 후 양도약정 ¹⁾	무라바하(Murabaha)
위임약정	와카라(Wakala)

주: 1) 이익공여약정 등의 경우에는 자산 등을 보유하는 다른 특수목적기구가 설립됨
 자료: Inland Revenue Department,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 50 - Taxation of Specified Alternative Bond Schemes," July 2014, p. 3.

- 채권약정을 부채로 간주하기 위한 적격조건은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
 - 채권이 경제적으로 금융부채로서의 수익과 동등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상거래상의 수익조건을 충족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유사한 조건과 위험을 부담하는 가상의 대출과 비교하여 검토가 이루어짐
 - 채권의 수익에 제한이 없는 경우, 채권의 수익이 투자수익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채권의 수익이 유사채권에 비해 과도한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 채권약정이 홍콩회계기준(Hong Ko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또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서 금융부채로 분류되어야 함
 - 채권약정상 발행되는 채권이 홍콩과 연계되어야 함
 - 채권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선의를 가지고 홍콩사업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경우, 홍콩에서 홍보·인수제안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화청의 중앙결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청산되는 경우는 해당 조건을 충족함
 - 채권의 최대만기가 15년 이내이어야 함
 - 관련된 실제 활동이 약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함
 - 관련 자산의 처분 지연 등을 통해 영구적으로 부채를 이용하는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임
- 투자약정을 부채로 간주하기 위한 적격조건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
- 채권발행자가 도관조건을 충족해야 함
 - 이를 위해서 투자약정상 최대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채권약정상 최대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투자약정이 홍콩회계기준(Hong Ko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또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서 금융부채로 분류되어야 함
- 채권약정과 투자약정이 적격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채로 간주되지 않음
- 채권약정과 투자약정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의 세무상 효과는 소급되어 최초 약정시점부터 경정함
 - 채권약정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채권약정과 투자약정 모두 부채로 간주되지 않으나 투자약정 조건의 미충족은 채권약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러한 대체채권금융을 수행하는 자는 사전심사를 과세관청에 요청할 수 있음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4년 제2호

2014년 12월 23일 인쇄

2014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옥 동 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339-0007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1924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